

월간

재정포럼

2015. December_Vol.234

1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장기재정전망으로 보는 사회보장의 미래/ 김용하

현안분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안종석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대한 소고/ 강희우

정책토론티포트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2016년부터 유언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에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 외

CONTENTS

권두칼럼

장기재정전망으로 보는 사회보장의 미래 · 김용하 02

현안분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안종석 06

종합심사납찰제의 도입에 대한 소고 · 강희우 25

정책토론포트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 4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2016년부터 유연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에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 외 85

정책흐름

‘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구성 및 운영 142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 주요 내용 144

이슈&포커스

“공기업에 자율·책임 쥐 경쟁력 높여야” 외 150

장기재정전망으로 보는 사회보장의 미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지난 12월 4일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2060년까지의 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GDP 대비 25.3%에 이르는 정부 총지출이 2060년에는 32.2%로 증가하고, 총수입은 동 기간에 25.6%에서 25.7%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62.4%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발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발표되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2년에 이미 국가재정의 미래를 걱정하여 재정추계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졌다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 향후 45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대로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미래에 투영하여 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국가재정 모습을 미래로 연장하였을 때 예상되는 국가재정을 그려봄으로써 현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의 필요성

이번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추가적인 복지지출 확대만 없다면 국가재정에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메시지는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2060년의 총지출을 GDP 대비 32.2%로 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지출은 GDP 대비 11.5% 내외로 증가하지만 총지출에는 GDP 대비 2.3%만 반영되어 있고 9.2%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공공기금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총지출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몫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지출을 합하면 실제 정부 총지출은

41.4%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한 국민 부담률은 2016년 GDP 대비 25.6%에서 2060년에는 39.8%로 높아지게 된다. 즉, GDP 대비 14.2%p가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2060년 국민부담률 39.8%는 지금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덴마크(50.9%) 프랑스(45.2%) 벨기에(44.7%) 등 복지선진국의 국민부담률은 이미 4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45년 후인 2060년에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2060년 당시의 경제상황을 본다면 그리 낙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2060년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1.1%에 불과하다. 현재 3% 성장률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판국에 1.1% 성장시대의 국민 모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민부담률이 14.2%p 늘어난다면 과연 수용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2060년 공공부문 증가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늘어난 국민부담 대부분은 복지급여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11% 수준인데 2060년에는 26% 내외로 늘어나게 된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의 복지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60년에 사회보장지출이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가지만 복지수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인인구비율은 현재의 13% 수준보다 3배 정도 높아진 40%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복지선진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 수준인데 사회보장지출은 30% 수준에 이른다. 2060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0%로 지금 선진국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사회보장지출이 현재의 선진국 수준이 된다는 것은, 사회보장지출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복지수요를 감안했을 때 OECD 국가 평균에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암울한 우리 복지의 미래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부담은 크게 늘어나지만 여전히 복지수요는 충족하지 못하는 2060년 우리의 복지 미래는 암울하다. 이번 전망은 중위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측면이 강하다. 전망의 전제가 되는 인구전망이 최근의 출산율 추이를 볼 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잠재 경제성장률도 낮추어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채무비율의 최근 증가추세를 볼 때 2060년에

.....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2060년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1.1%에 불과하다.

.....

**저성장과 재정불안이
예상되는 미래를
마냥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

GDP 대비 62.4% 수준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복지공약이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구조가 사회보험제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PAYGO 원칙을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급여지출 증가만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장치가 작동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과 정부재정을 연계하는 정부재정지원 고리만 잘 잡고 있으면, 상당부분 자동적으로 통제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부담 증가를 용인하는 선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는 우려할 것이 못 된다. 걱정되는 것은 추가적인 조세부담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기초연금과 같은 지출 증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PAYGO 원칙이 전제되지 않는 기초연금의 증액은 국가 채무의 증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대책 마련 긴급

한편,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PAYGO 원칙보다 더 우월한 재정원칙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립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연금 시스템의 구조상으로 시행 초기 수십년은 적립기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적립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잠재적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이 취약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지만 국민연금도 그 전철을 밟고 있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비생산인구로의 이동과 노인인구비율의 급속한 상승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전망이지만 2040년대까지 늘어나는 적립기금에 가려서 대책을 늦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성장과 재정불안이 예상되는 미래를 마냥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번 장기재정전망 결과 발표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심사납탈제의 도입에 대한 소고
강희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I. 서론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를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정세율이 낮지 않은 편인데, 소득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2012년의 경우 OECD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평균치는 42.4%로 우리나라의 41.8%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2014년에는 OECD 국가의 최고세율 평균치가 43.6%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41.8%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세율격차가 1.8%p 수준으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보면, 2012년에 우리나라는 3.7%, OECD 회원국 평균치는 8.6%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 즉, GDP 대비 소득세가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세수여건이 악화되어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세수입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앞으로는 복지지출 증대로 인하여 세수입 증대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단으로 소득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의 3대 기간 세목으로서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세수 증대 시 우선적으로 세수입을 확충해야 하는 세목으로 꼽힌다.¹⁾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본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소득세 부담률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살펴보고,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san@kipf.re.kr)

1) 안종석·박형수·현진권(2012) 참조

어떤 요인들이 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주는지를 단순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제Ⅲ장), 그 다음에 다변량 회귀분석을 하여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영향력을 분석한다(제Ⅳ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정책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제Ⅴ장). 정책시사점은 소득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본 연구에서의 국제비교가 시사하는 바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II.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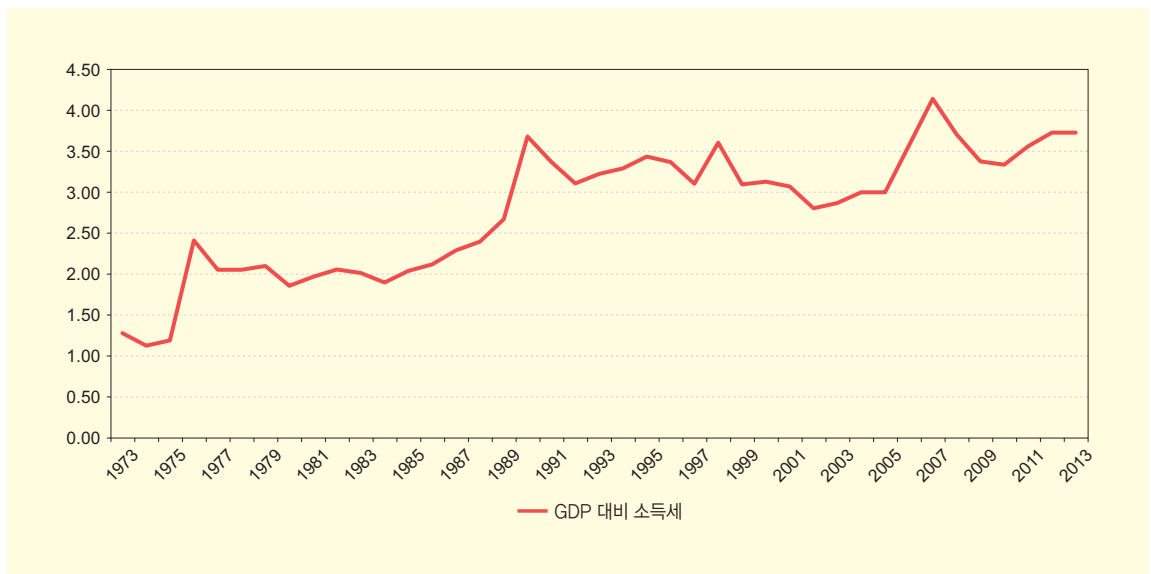
[그림 1]에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1972년 1.41%에서 1980년대에 2%대로 진입하고, 1990년

대에는 3%대로 진입하여, 2013년에는 3.7%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0년대 후반에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2%대로 크게 상승한 이후 10여년 동안 큰 변화 없이 2% 내외를 유지하였다. 즉, 1970년대 후반에 한 단계 도약을 하였는데, 이는 1977년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970년대 후반의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80년대 중엽까지 2% 내외를 유지하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1980년대 말에 다시 한 번 도약을 하여 1990년에는 3.69%로 전년 대비 1%p 상승하였으며, 이후 등락이 있긴 하지만 최근까지 3% 이상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 초의 소득세 부담 증대는 높은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과 1991년의 명목GDP 증가율은 각각 20.91%, 20.82%였다.

[그림 1]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의 변화

(단위: %)



출처: OECD, Tax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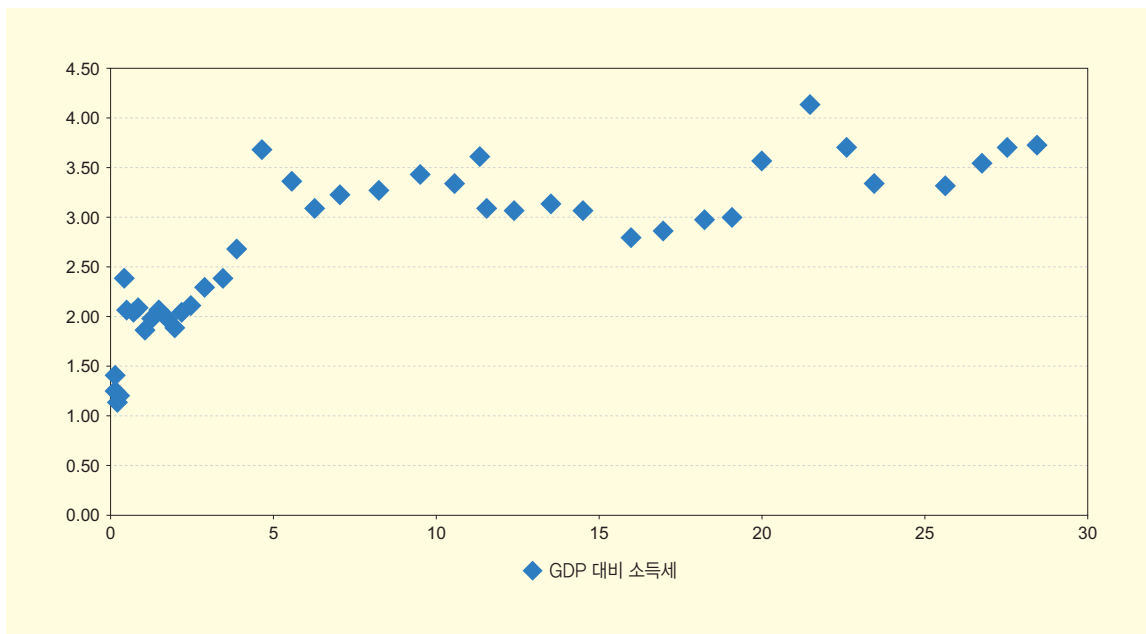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득세 부담률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2005년까지 소득세 부담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6년에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3.58%로 전년 대비 0.58%p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도 0.57%p 상승하여 4.1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3.7%로 하락하였고, 2009년 이후에도 하락세를 계속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12년에는 3.72%, 2013년에는 3.73%가 되었다. 2000년대 중엽의 소득세 부담 증대는 신용카드 활성화 등 과표양성화 노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08년 이후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의 하락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1인당 GDP

의 관계를 보여준다. 수평축은 1인당 GDP를 1백만 원 단위로 나타낸 것이며, 수직축은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면 1인당 GDP가 5백만원 수준이 될 때까지는 1인당 GDP가 증가하면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점을 보면, 1990년에 1인당 GDP가 460만원,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3.69%였고, 1991년에는 1인당 GDP가 550만원,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3.37%였다. 1990년 무렵까지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득세 부담률도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1인당 GDP가 증가하여도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3~4%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다.

[그림 2] GDP 대비 소득세와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

(단위: %, 백만원)



출처: OECD, Tax Database
 _____, National Account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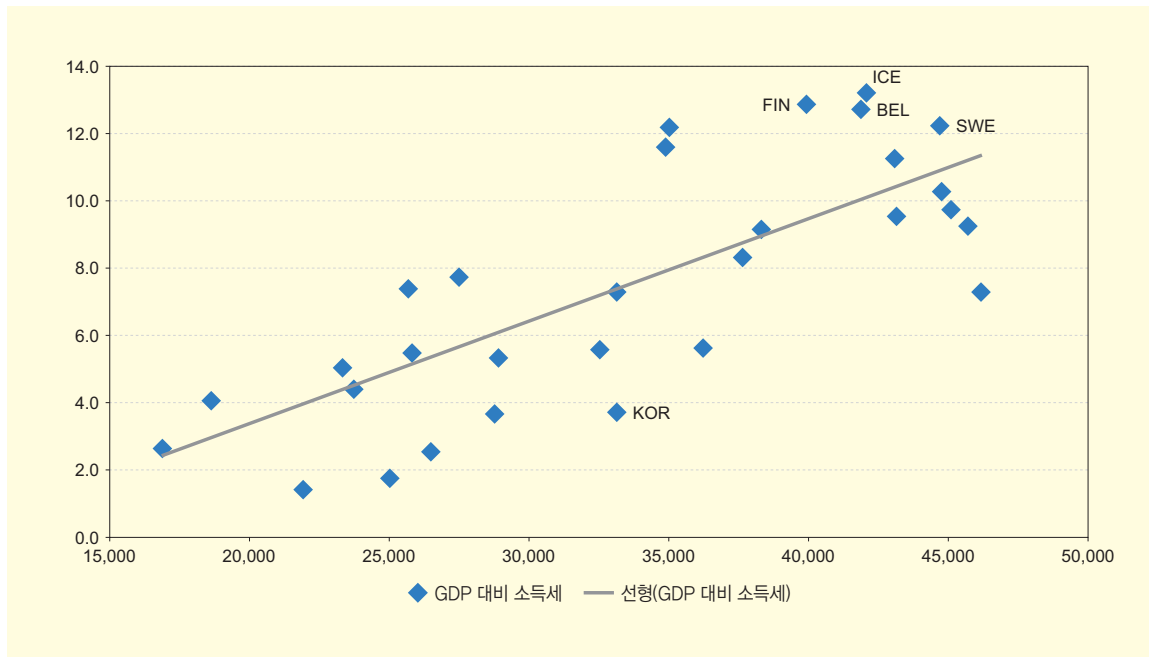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OECD 회원국의 2013년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1인당 GDP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OECD 회원국 중 덴마크는 사회보험이 없고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모두 소득세로 징수한다. 그래서 덴마크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26.4%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덴마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소득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국가들 즉, 1인당 GDP가 5만달러를 넘는 국가들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미국을 제외한 3개 국가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다.

그림에 나타난 국가 중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우리나라(3.7%)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4%)와 슬로바키아(2.5%), 멕시코(2.6%)뿐이다. 그 외 체코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며, 그 다음은 터키(4.1%)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달러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스페인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7.3%이다. 그림에서 스페인은 추세선상에 있는데, 이는 스페인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소득수준이 3만 3천달러 수준인 국가들의 평균치에 근접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추세선에서 아래쪽으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소득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들 평균치에 근

[그림 3] GDP 대비 소득세와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OECD

(단위: %, USD)



출처: OECD, Tax database

접한 스페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절반 수준이다. [그림 3]에 나타난 국가들 중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13.2%), 핀란드(12.9%), 벨기에(12.7%) 스웨덴(12.3%)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Ⅲ. 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단순 상관관계

1.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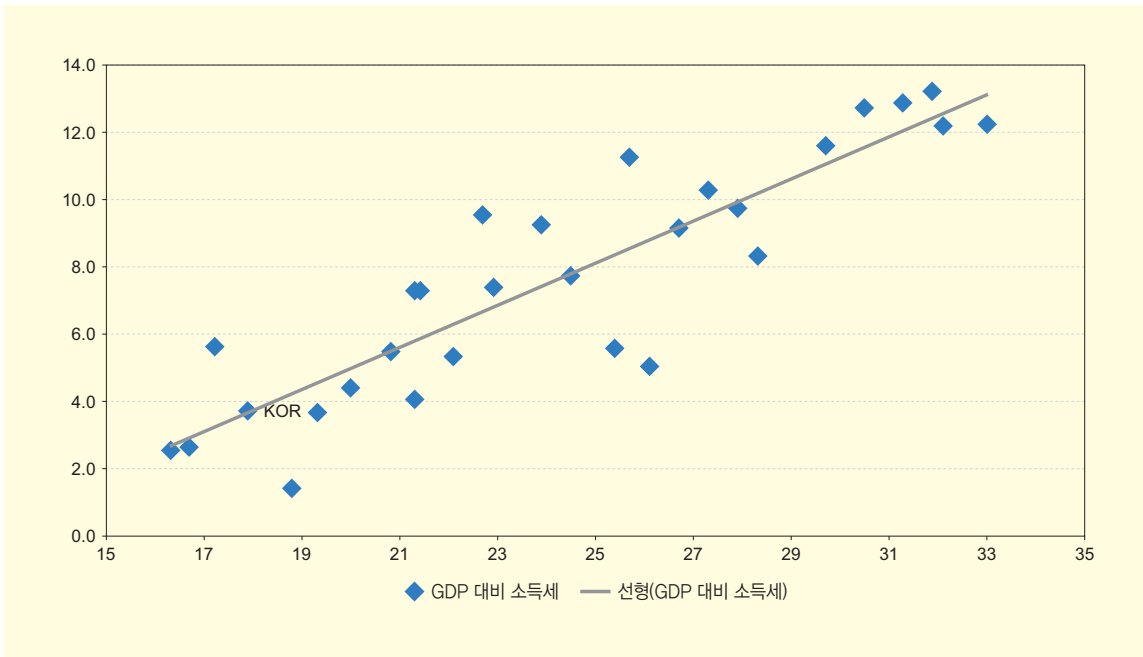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소득수준(1인당 GDP)이 유사한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세 부담률 즉,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상당히 낮는데,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경우에 굳이 소득세만 많이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거나 과세표준을 좁게 설정하여 낮은 조세부담률에 적절한 규모로 소득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그림 4]에서는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조세부담률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앞의 [그림 3]에서와 같이 덴마크와 1인당 GDP가 5만달러 이상인 국가는 제외하였다.

[그림 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조세부담률이 모두 낮은 편이다. 그림에 나타난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17.9%)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6.3%)와 멕시코(16.7%), 일본(17.2%)뿐인데, 이 중 일본은 GDP 대비 소득세 비

[그림 4] GDP 대비 소득세와 조세부담률의 관계-OECD

(단위: %, USD)



출처: OECD, Tax database

율이 5.6%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고, 칠레와 멕시코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

추세선을 보면,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상승하는 선형 관계가 뚜렷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세선상에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평균적인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조세수입에서 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의 평균치 수준임을 시사한다.

2. 과세표준-비용자보수

세율과 과세표준을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설정하더라도 소득세 과세표준의 기반이 되는 개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GDP의 상당부분이 법인 잉여로 법인에 귀속되고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경우에 GDP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GDP에서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이 되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의 관계를 검토한다.

소득세는 개인단위에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모든 세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자보수이다.

〈표 1〉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소득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소득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다. OECD에서 매년 회

“
**조세부담률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상승하는
 선형 관계가 뚜렷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세선상에 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에 있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평균적인 수준임을 의미한다.**
 ”

원국의 세수입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Revenue Statistics*에 의하면, 34개 회원국 중 소득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8개 국가이다. 이 중 6개 국가에서 근로소득세가 소득세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9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8%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낮은 국가는 독일인데, 근로소득세 비중이 64.6%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다. 〈표 1〉에 나타난 국가들의 소득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단순평균은 76.6%인데, 이는 비용자보수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의 4분의 3 이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국가별 소득세, 근로소득세 수입 비교(2012년)

(단위: 각국 통화, %)

국가명	단위	소득세	근로소득세	근소세 비중
Austria	백만EUR	30,239	24,759	81.7
Belgium	백만EUR	47,455	44,055	92.8
Czech Rep.	백만CZK	144,831	124,055	85.6
Germany	백만EUR	256,821	165,875	64.6
Israel	백만ILS	54,233	43,395	80.0
Korea ¹⁾	십억KRW	51,185	22,401	43.8
Luxembourg	백만EUR	3,699	2,504	67.7
Netherland	백만EUR	47,015	45,207	96.2
평균 ²⁾				76.6

주: 1) 농특세 등 목적세와 지방세는 국세 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 구분

2) 표에 나타난 국가의 근로소득세 비중 단순평균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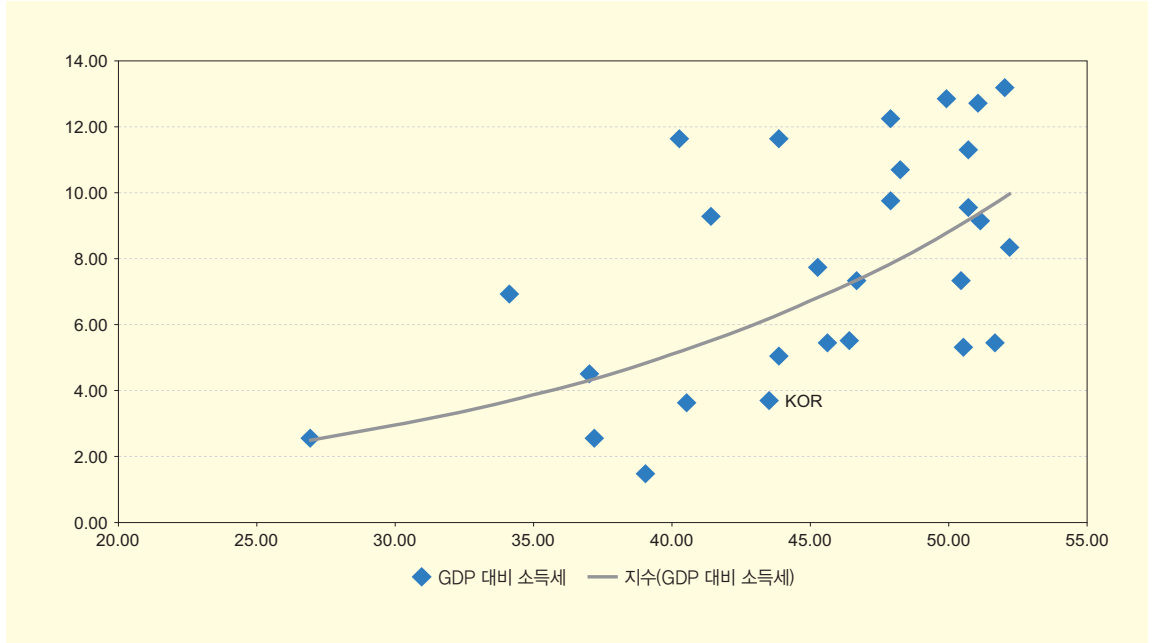
[그림 5]에서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각 국가에서 생산한 총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앞서 언급한 극단치 외에도 터키의 경우 피용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림에 자료가 포함된 국가 중 2013년의 피용자보수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국가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GDP 대비 소득세 비율도 같은 연도의 자료로 맞췄다.

그림에 나타난 국가들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 평균치가 7.8%이고 한국은 3.7%로 한국이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해, '피용자보수/총부가가치' 비율은 그림에 나타난 국가들 평균치가 45.2%, 우리나라가 43.5%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의 추세선에 따르면, 총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상승하며, '피용자보수/총부가가치' 비율이 클수록 '피용자보수/총부가가치' 비율 상승에 따른 GDP 대비 소득세 비율 상승폭이 크다.

그림에서 우리나라는 추세선에서 오른쪽으로 추세선보다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데, 피용자보수 규모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징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은 이유가 GDP 중에서 개인에게 배분되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실효세부담이 낮아지도록 세율과 공제체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앞의 〈표 1〉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 과세가 특히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가가치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표 1〉에 나타난 소득세 수입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표에 나타난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낮다.

[그림 5] GDP 대비 소득세와 (비용자보수/총부가가치)-OECD

(단위: %)



출처: OECD, Tax Database
 _____, National Account Database

3. 소득분포

총과세표준 규모가 같더라도 소득분포에 따라 세수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대부분의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보다 세수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소득불균등도가 가장 낮아서, 세전소득이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에는 회원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세전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세금 및

공적이전 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자료가 발표되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두 가지 지니계수 중 세수입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전시장소득의 지니계수이며,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38, OECD 회원국 평균치는 0.5로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다. OECD DB에 자료가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고, 그 외에 스위스(0.368), 아이슬란드(0.398)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다.

[그림 6]에서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하였는데,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높은 국가들과 낮은 국가들로 구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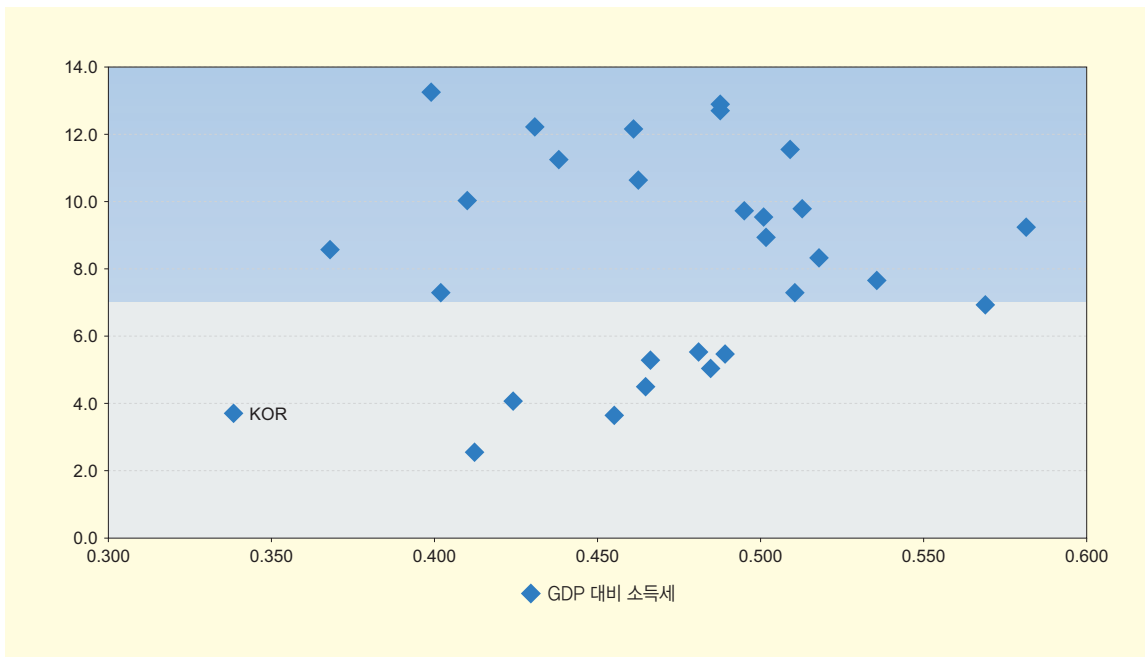
보면 두 개의 국가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림 7]에서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8% 이상인 국가들([그림 6]에서 진하게 표시한 부분)과 8% 미만인 국가들([그림 6]에서 연하게 표시한 부분)로 구분하여 각각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림 7]의 왼쪽 패널에 나타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지니계수가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은 국가군에서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지니계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 GDP 대비 소득세 비율과 지니계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것은 앞서 설명한 사전적 추론과 같

은 결과이다. 즉, 과세표준과 세율체계가 같다면,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될수록 소득세 수입이 많아질 수 있다. 한편,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8% 이상인 국가들은 그 이하인 국가들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 국가가 많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은 국가들과 다른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균세율이 높고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한 국가들이 대체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6] GDP 대비 소득세와 지니계수-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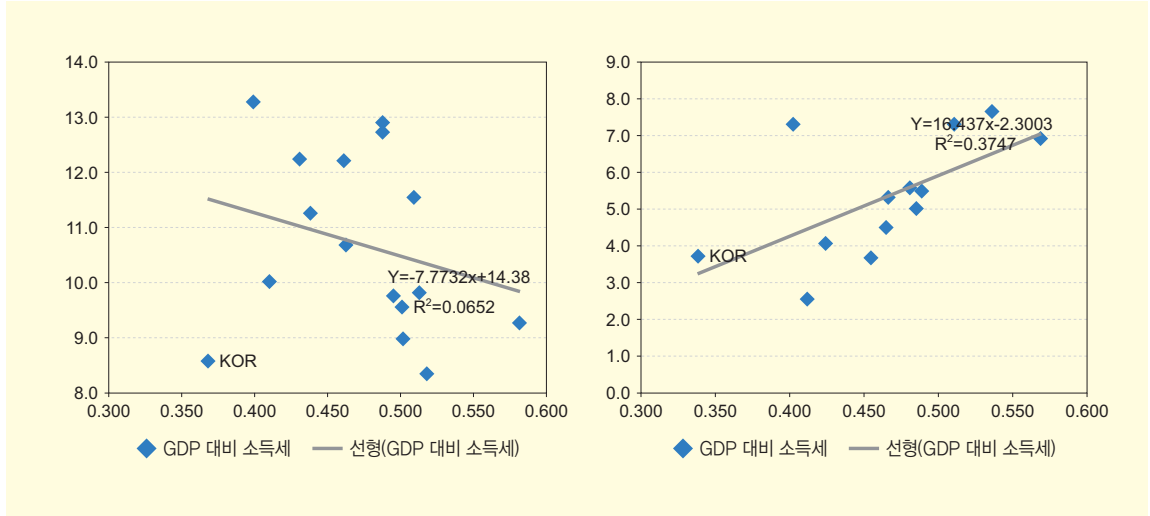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그림 7] GDP 대비 소득세와 지니계수-OECD 그룹별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낮은 국가 중에서 지니계수 수준에 비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있는 편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세율과 세율체계 누진도가 우리나라와 지니계수 수준이 유사한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비교적 형평하게 분포되어 높은 세율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소득세 부담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계수 외에 OECD DB는 P90/P10, P90/P50, S90/S10, S80/S20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90/P10은 총인구 중 소득수준이 상위 10%가 되는 경제선상의 소득이, 하위 10%가 되는 경제선상의 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P90/P50은 같은 방법으로 상위 10%의 소득과 50%의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S90/S10은 총소득 중 소득수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이 하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S90/S50은 같은 방법으로 상위 10%의 소득과 50%의 소득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그런데,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P90/P10, P90/P50, S90/S10, S80/S20 지표는 세금과 공적이전 이후의 가치분소득의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세금 납부 이전의 소득분포가 필요한 본 연구의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90/P10, P90/P50, S90/S10, S80/S20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4. 세율체계

가. 소득수준별 실효세율

소득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한 두 가지 지표로 세율체계를 규정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4~5개의 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 멕시코

코, 룩셈부르크는 2014년 기준으로 과세구간이 10개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다양하여 명목세율체계만으로 실효세부담을 파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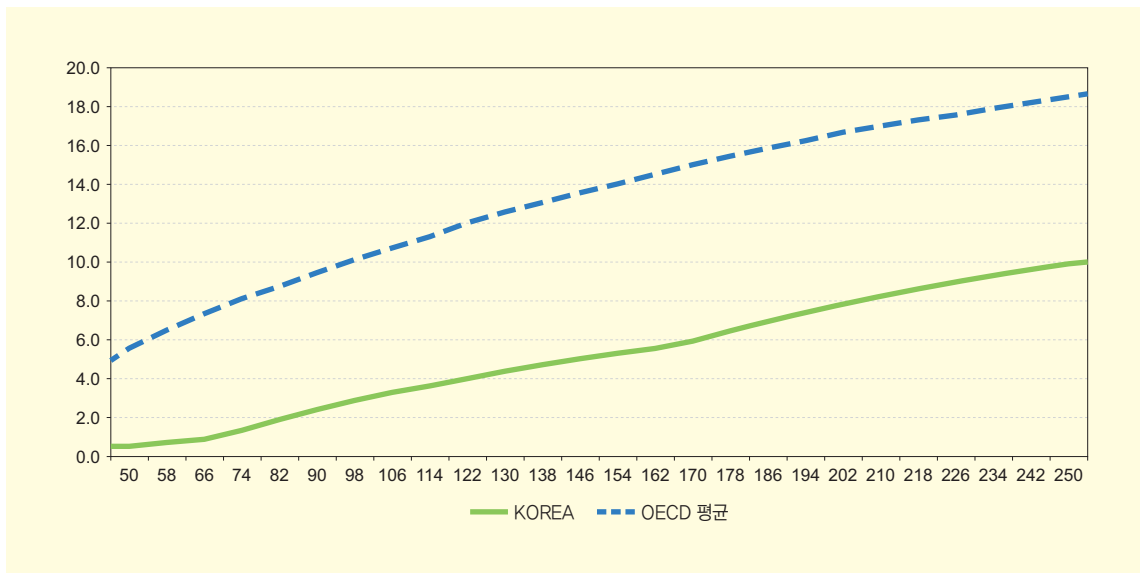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OECD에서는 매년 근로소득에 대해 개별 국가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율체계를 종합하여 소득수준별 소득세 부담을 산출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림 8]과 <표 2>는 OECD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수취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담의 비율 즉, 소득수준별 실효세율을 정리한 것이다. OECD는 매년 *Taxing Wages* 보고서에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험을 합한 총노동비용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발표한다. 아래 그림과 표는 *Taxing Wages*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율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세부담이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실효세율

을 산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실효세율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세)가 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평균세율이며,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족 구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경우를 가정하였다. 세부담을 계산할 때는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소득수준만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공제,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만을 고려하였으며, 특정 항목의 지출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특별공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의 수평축과 표의 소득수준은 각국 근로자 평균임금(100)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2013년 근로자 평균임금은 3,983만원이다. 그림의 수직축과 표의 세율은 2013년 과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나타낸다.

[그림 8] 소득수준별 실효세율(2013년)

(단위: %)



출처: OECD, *Taxing Wages 2014*, 2014.

〈표 2〉 소득수준별 실효세율(2013년)-
한국, OECD 평균

(단위: %, 배, %p)

소득수준	한국	OECD 평균	OECD 평균/한국	OECD 평균-한국
50	0.5	5.1	10.5	4.6
100	2.9	10.1	3.5	7.3
150	5.2	13.8	2.7	8.7
200	7.8	16.6	2.1	8.8
250	10.0	18.6	1.9	8.6

자료: OECD, *Taxing Wages 2014*, 2014.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일 때 0.5%이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하여, 평균임금 수준에서는 2.9%가 되고,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10%가 된다. OECD 국가의 평균치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5.1%, 100%에서 10.1%이고 250%에서는 18.6%이다. OECD 국가 소득세율 평균치와 우리나라 소득세율의 차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4.6(평균임금의 50%일 때)~8.8(평균임금의 200%일 때)%p이다.

나. 평균실효세율 설명함수의 추정

세수입과 과세표준, 평균세율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보인다.

$$\begin{aligned} \text{세수입} &= \text{과세표준} \times \text{평균세율} \\ \text{평균세율} &= \text{세수입} \div \text{과세표준} \end{aligned}$$

이 관계식에 따르면, 세수입을 과세표준으로 나눈다면 가장 정확한 평균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세수입 자료를 직접 사용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세수입 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균실효세율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지표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지표는 다단계 누진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일 때 0.5%이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하여,
평균임금 수준에서는 2.9%가 되고,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10%가 된다.
”

율 체계와 공제체계를 적절히 대변하여 납세자 전체의 평균세부담률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

앞서 [그림 8]은 세율과 공제체계의 국제비교에서 최저소득 수준에서의 세율 또는 면세구간과 과세구간에서의 누진도 또는 최고소득세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외에 지니계수도 소득세 평균실효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지니계수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많아서 평균실효세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평균실효세율(t_a)을 최저소득구간에서의 세율(t_l), 최고소득구간에서의 세율(t_h), 지니계수($gini$)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t_a = f(t_l, t_h, gini) \tag{1}$$

이 식에서 t_l 와 t_h 의 차이가 세율체계의 누진도를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위의 식 (1)과 같이 표현되는 평균실효세율 설명함수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하여 평균실효세율 추정치를 도출한다.

첫째, 종속변수인 t_a 의 자료로는 총소득세 수입을 과세표준을 대변하는 변수인 피용자 보수로 나

뉘셔 산출한다. 과세표준으로 피용자보수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t_a 는 실제 소득에 대한 평균실효세율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 수입에서 피용자보수에 대한 과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를 OECD의 *Revenue Statistics*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는 34개 회원국 중 8개 국가에 불과한데, 이들 국가의 소득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6%이다.

둘째, 설명변수 중 최저소득구간에서의 세율(t_l)로는 OECD 자료에 나타난 평균임금 50%에서의 세율(tax_rate_50)을 사용한다. 국가마다 면세점이 달라서 공통적으로 최저소득구간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한 저소득 수준(평균임금의 50%)을 설정하고 그 수준에서의 세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연소득 2천만원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실효(평균)세율은 0.5%이다.

셋째, 같은 논리로 평균임금의 250%인 경우의 실효세율(tax_rate_250)을 최고소득구간에서의 세율(t_h)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평균임금의 250%가 되는 소득수준은 대략 1억원 정도가 되며, 총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1.63%에 해당된다.²⁾ 평균임금 250%에서의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10%이다.

넷째, 지니계수($gini$)로는 OECD DB에 수록된 세전시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다섯째, 2013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2013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2년 또는 2011년의 자료로 보충한다. 지니계수는 2013년 자료가 보고된 국가의 수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2012년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2012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또는 2010년의 자료로 보충한다.

지니계수는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전년도 자료를 사용하여도 추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한다. 자료 부족으로 제외된 국가를 제외하고 표본에 포함된 국가는 29개국이다.

위 함수의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평균임금 50%에서의 세율(tax_rate_50)과 평균임금 250%의 세율(tax_rate_250), 그리고 지니계수($gini$)는 모두 평균세율과 정(+)의 유의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이 높으면 평균세율이 높고, 평균임금 250%에서의 실효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효세율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지니계수가 크면 평균세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사전적인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평균임금 50%의 실효세율을 1%p 상승시킬 경우에 납세자 전체의 평균세율이 0.681%p 상승하는 데 비해,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평균임금 250%에서의 실효세율을 1%p 상승시키면 평균세율이 0.37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설명변수 중 하나씩을 제거하고 추정한 결과로 나타난 $R^2(Adj-R^2)$ 를 보면, 지니계수를 제거했을 때 0.7798(0.7629), 평균임금 250%에서의 실효세율을 제거했을 때 0.7273(0.7063),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을 제거했을 때 0.6833(0.6589)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이 평균세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며, 그다음이 평균임금 250%에서의 세율, 지니계수의 순임을 의미한다.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4.

〈표 3〉 평균실효세율 함수 추정 결과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9.58342*	5.46831	-1.75254	0.091939
tax_rate_50	0.681063***	0.140371	4.851892	5.47E-05
tax_rate_250	0.370397***	0.090371	4.098639	0.000384
gini	33.48507***	11.31899	2.958309	0.006673
R ² (조정 R ²)	0.836895 (0.8172323)			
표본수	29			

주: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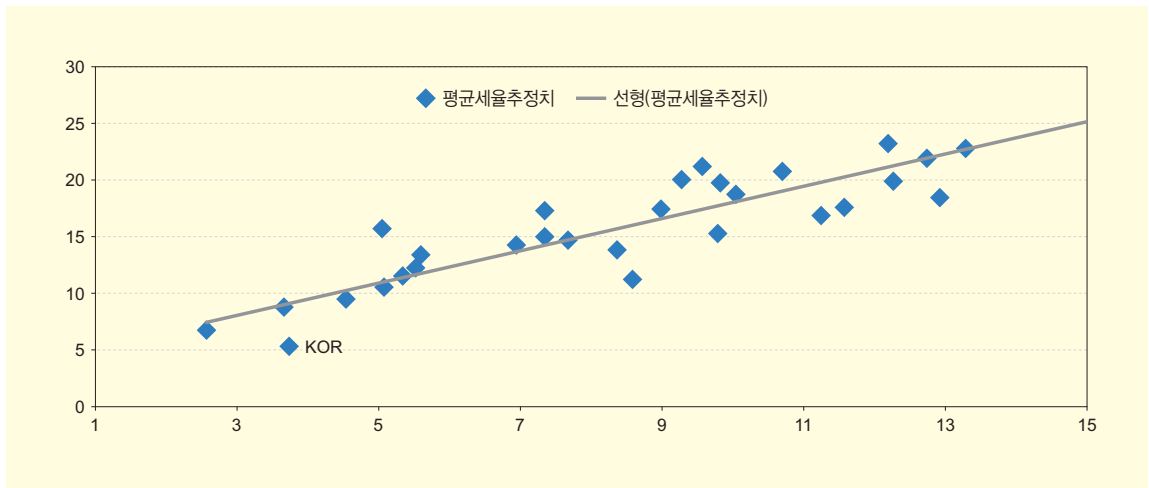
다. 평균실효세율 추정치와 소득세 부담률의 관계 [그림 9]에서는 추정된 평균세율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가로축은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추정된 평균세율을 나타낸다. 편의상 극단치인 덴마크는 그림에 포함하지 않았다.

추정된 평균세율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추정된 평균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우리나라는 추세선의 아래쪽(오른쪽)에 있다. 이는 추정된 평균세율에 비해 세수입이 많은 편임을 의미한다. 또한 세수입 규모가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추정된 평균세율이 낮은 편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추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소(예, 중간단계에서의 세율, 세무행정의 효율성 등)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평균세율 추정치와 GDP 대비 소득세의 관계

(단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추정된 평균세율이 1% 상승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0.9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소득세 부담률 결정요인 분석-다변량분석

1. 분석방법

다음에서는 제Ⅲ장에서 검토한 소득세 부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세 부담률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소득세 수입 R 은 과세표준 B 에 평균실효세율 t_a 를 곱한 것과 같다.

$$R = B \times t_a \quad \text{식 (2)}$$

여기서 R 이 실제 세수입을 나타내고, B 가 실제 과세표준, 그리고 t_a 가 실적치에서 도출한 평균실효세율을 나타낸다면 위 식 (2)는 항등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서는 실제치 대신 B 와 t_a 를 잘 설명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세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제Ⅲ장에서 검토한 요인 중에서 과세표준을 대변하는 요인으로는 피용자보수가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므로 피용자보수가 소득세 과세표준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과세표준으로서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피용자보수뿐이어서 부득이 피용자보수

를 과세표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자료 입수가 가능한 국가들의 소득세 수입에서 피용자보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소득세 부담의 4분의 3 이상을 근로소득세가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용자보수 외에 과세표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소득수준(예, 1인당 GDP)이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세무행정이 발달하여 소득의 누락이 적고, 과세표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세율의 경우, 세수입을 피용자보수로 나누어 산출한 실적치는 내생성 문제가 있으므로 그대로 설명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사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따라 평균세율 추정치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를 활용하여 소득세 수입을 설명하는 함수를 추정하였다. 평균세율 추정은 앞의 식 (1)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즉, 설명변수에 식 (1)에 나타난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 평균임금 250%에서의 실효세율, 그리고 지니계수를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 소득세 설명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과세표준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평균세율을 라고 하면, 세부담 수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R) = \alpha + \beta_1 \ln(emp_comp) + \beta_2 \ln(gdp_head) + \beta_3 \ln(\hat{t}_a) + \epsilon \quad \text{식 (3)}$$

세수입을 나타내는 R 로는 각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피용자보수를 의미하는 emp_comp 는 각국의 피용자보수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gdp_head 는 1인당 GDP를 의미한다. \hat{t}_a 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 세율과 지니계수 자료는 앞의 제Ⅲ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OECD DB에 나타난 회원국의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2년 또는 2011년 자료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011년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결과

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담률 설명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추정 결과를 보면, 피용자보수와 평균세율 추정치가 소득세 부담률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용자보수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상승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1.0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된 평균세율이 1% 상승하면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0.9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GDP는 GDP 대비 소득세 비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추정된 평균세율(\hat{t}_a)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의 실효세율과

“
추정된 평균세율(\hat{t}_a)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의
실효세율과 250% 수준에서의 실효세율,
지니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서 평균임금 50% 수준에서의
실효세율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지니계수의 영향력이 가장 약하다.
”

250% 수준에서의 실효세율, 지니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서 평균임금 50% 수준에서의 실효세율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지니계수의 영향력이 가장 약하다.

<표 5>에서는 위 식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우리나라 자료와 OECD 회원국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림 10]에서는 소득세 부담률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사용된 변수들의 ‘한국/OECD’ 평균 비율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3.7%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 평균치인 9.1%의 41% 수준이다. 추정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 추정계수의 크기, 그리고 OECD 평균치와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

<표 4> 소득세 부담률 설명함수 추정 결과

	계수	표준 오차	t 통계량	P-값
Y 절편	-5.66783***	1.401101	-4.04527115	0.000441
emp_comp	1.072587***	0.332385	3.226945303	0.003478
gdp_head	0.079334	0.145811	0.544087312	0.591201
	0.972487***	0.105794	9.192288273	1.71E-09
R ² (조정 R ²)	0.85925 (0.84236)			
표본수	29			

주. *** 유의수준 1%

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임금 50%에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0.5%인 데 비해 분석에 포함된 OECD 회원국 평균치는 5.4%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의 8.9%에 불과하다. 평균임금 250%인 고소득층에서의 실효세율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의 50.6%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니계수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의 72%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용자보수 비중과 1인당 GDP는 각각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의 92.8%와 82.5%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에서 1인당 GDP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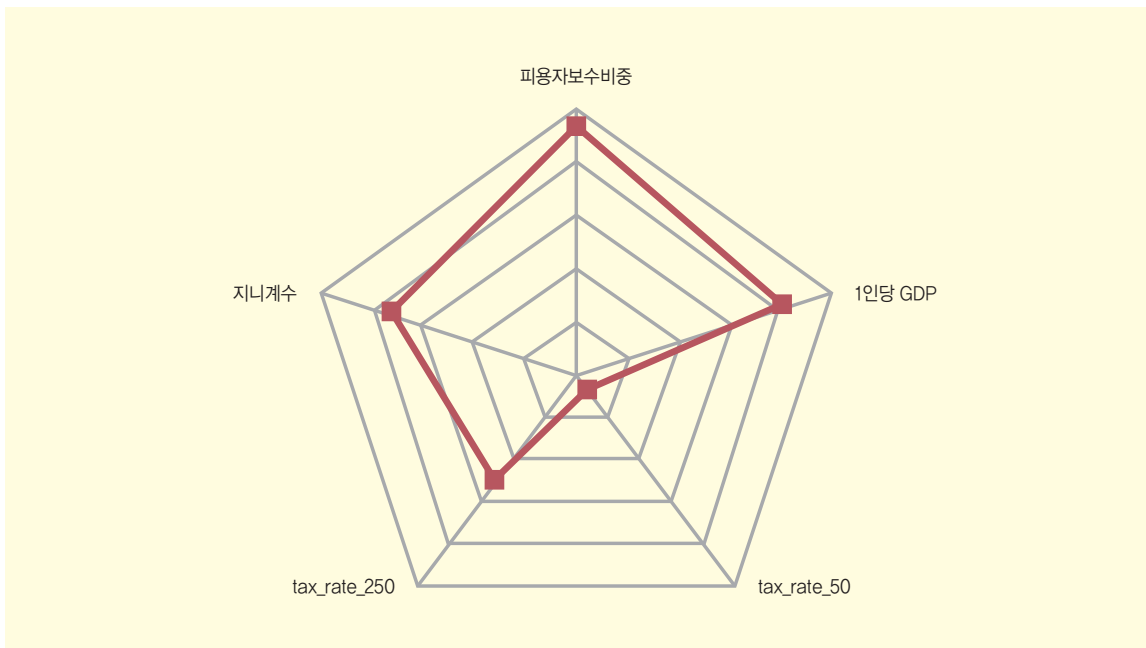
소득세 부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득세 부담률 결정요인의 비교-
한국과 OECD 평균

(단위: %, 만달러, 배)

	한국	OECD 평균	한국/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3.7	9.1	0.412
피용자보수 비율	48.3	52.1	0.928
1인당 GDP	33.1	40.1	0.825
tax_rate_50	0.5	5.4	0.089
tax_rate_250	10.0	19.8	0.506
지니계수	0.338	0.469	0.720

[그림 10] GDP 대비 소득세 결정 요인의 한국/OECD 평균 비율



V.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명목세율이 그다지 낮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활용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과세표준의 규모와 소득수준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하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낮은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도 소득세 부담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특히 저소득구간에서의 낮은 실효세율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소득세는 저소득구간에서의 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적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저소득구간에서의 낮은 실효세율은 저소득구간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고소득 납세자의 세부담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이 고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저소득구간에서의 세율이 낮더라도 누진도를 강화하여 고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저소득구간에서의 낮은 실효세율로 인하여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250% 수준인 고소득층에서의 실효세율도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는데, 이는 저소득구간에서의 세율격차를 상쇄할 정도로 누진


“
**소득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입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재원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한다면 소득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안종석·김학수·박명호(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소득구간 실효세율이 특별히 낮은 이유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낮은 최저세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고세율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OECD 회원국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들은, 많은 경우에 일정한 소득수준까지는 세부담을 면제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세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수단이 활용되는데, 하나는 최저세율을 비교적 높게 설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이 면세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기본적인 공제혜택을 빠른 속도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저세율이 6%로 OECD 회원국 평균치 15%보다 상당히

낮으며, 면세점을 넘어선 소득에 세부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축소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점감되는 속도가 느린 것은 저소득계층에서의 실효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최저세율의 적정성과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수준, 점감속도를 다시 점검해보고 개편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소득세 부담률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계한 자료를 사용한 반면, 설명변수로 사용한 과세표준과 세율의 자료는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과세표준과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소득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세를 대변하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으며, 소득세 부담률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세 부담률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문에서 설명하였지만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총소득세 부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중석·김학수·박명호,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안중석·박형수·현진권,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_____, National Account Database
_____, Tax Database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안중석,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대한 소고

I. 서론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kang@kipf.re.kr)

기획재정부는 2015년 11월 13일에 주최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공사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해 오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용역부문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위주의 낙찰방식으로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찰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나친 저가입찰과 이에 따른 공사 품질의 저하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이러한 가격 위주 낙찰방식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공공공사부문의 정부계약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낙찰제도는 가격 위주의 낙찰방식에 비해 효율적으로 계약목적물을 조달하는 방법이지만, 그 구체적인 설계 방식이 실제 효율성 제고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공사계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낙찰제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경제학적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공공공사부문의 낙찰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계약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제학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II. 우리나라 정부계약과 낙찰제도

1. 정부계약의 일반적 특징

정부계약이란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이나 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계약을 의미한다.¹⁾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등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혹은 사무용품 구입이나 특정 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과 같이 기관 고유의 활동을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지출에서 이러한 정부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OECD(2015)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정부지출에서 정부계약의 비중은 40%를 넘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정부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계약의 효율적 집행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맺는 계약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정부계약을 포함한 일반적인 조달계약의 특징을 살펴보자. 조달계약의 주요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된다.²⁾ 민간 또는 정부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효율성은 주어진 자산을 얼마나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지를 뜻하며, 따라서 그 대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각 대가는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이 효율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계약

에서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뿐만 아니라 구입하게 될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품질은 가격과는 달리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최근 전문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품질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조달계약에서 낙찰제도를 중심으로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고려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는 조달계약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조달 계약의 특징은 미래에 구입할 재화 및 서비스를 현재 계약한다는 점이다.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경우 미래에 완공될 고속도로를 위해 현재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한 공기(工期) 지연, 석유 가격 변동 등 계약체결과 완공 시점 사이에 고속도로의 품질과 정부가 지불할 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조달계약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 계약을 체결할 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미래의 모든 사건을 현재 고려하지 못하는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s)은 그 설계방식에 따라 민간 계약자의 행동유인, 더 나아가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과 대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정부계약은 조달계약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민간조달과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계약은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과 그 구입절차 등을 국민을 상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구입 과정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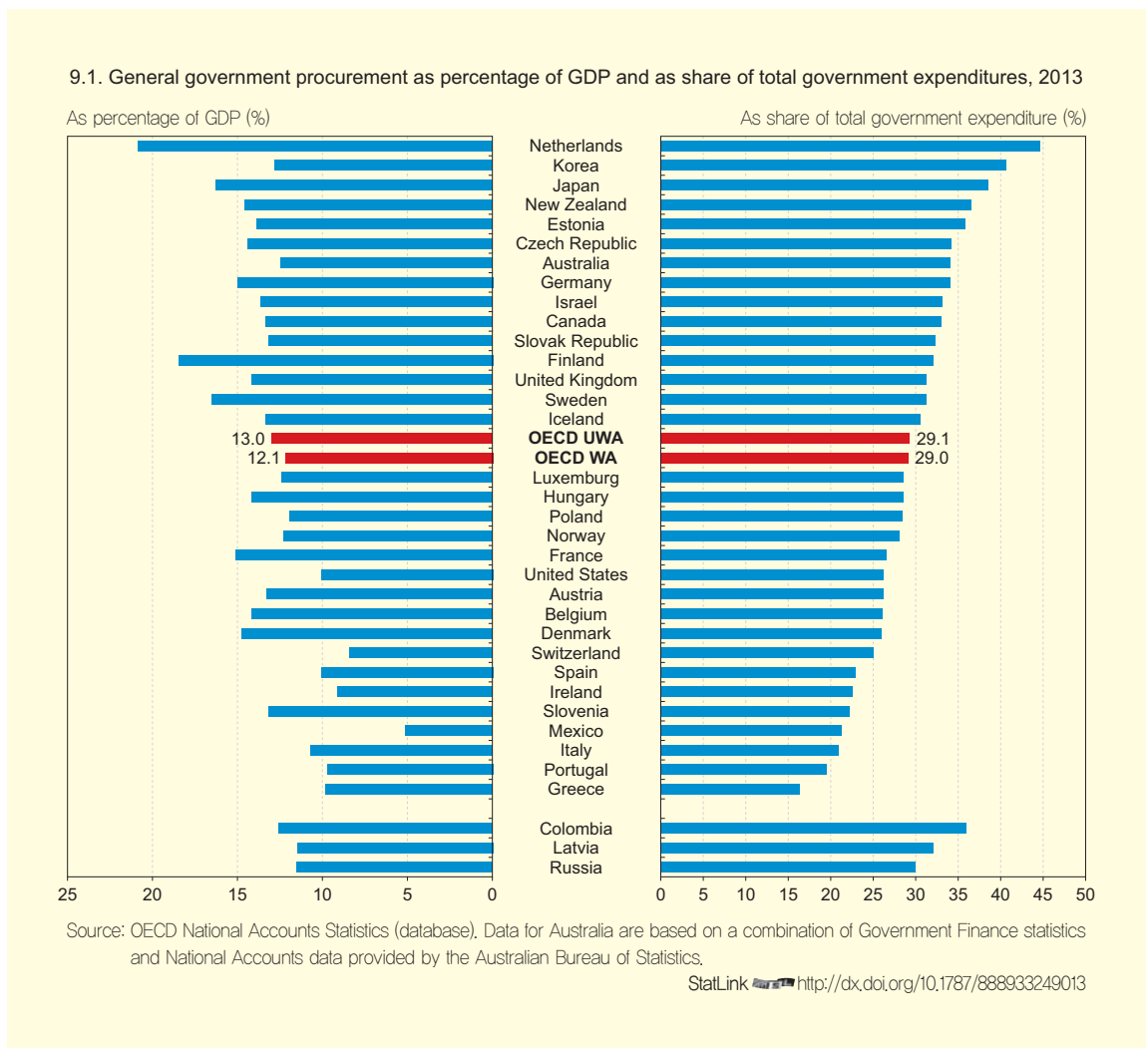
1) 정부계약의 다른 이름으로 정부조달, 정부조달계약, 공공조달, 국가계약 등이 있다.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계약에 초점을 맞춘다.

2) 이와 관련해 OECD는 2015년에 발간한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에서 정부계약의 주목적(primary procurement objective)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적인 조달의 특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는 품질과 구입절차의 적절성을 제3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계약에서 정부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품질과 구입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정부계약은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중소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조달정책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특정 가치의 추구를 장려하기도 한다.

[그림 1]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정부계약 비중



출처: OECD(2015)

2. 우리나라 공사부문의 정부계약³⁾

우리나라에서 정부계약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예정인 공공부문 공사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계약 규정을 「국가계약법」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계약에서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에 따라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에 부칠 수도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제외한 경쟁의 방법은 입찰이나 입찰방법에 준하는 경매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⁴⁾

따라서 입찰은 그 경쟁방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한경쟁입찰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만을 선택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은 특정 업체만을 지목해 경쟁입찰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공공공사에서 정부계약은 입찰방식뿐만 아니라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먼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이전부터 원칙적으로 단순한 최저가입찰자가 아닌, 가격과 계약목적물의 품질(또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공사계약 낙찰제도는 공사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크게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계시공 분리입찰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 2015년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 그리고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인 종합심사낙찰제로 구성되어 있다.⁵⁾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신규복합공사, 300억원 미만의 특정공사에 적용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제도가 있다. 낙찰제도별 계약금액과 건수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3) 우리나라 정부계약 제도에 관한 내용은 저자가 장흥기(2015)를 선택적으로 참고해 인용·작성하였다.

4)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은 한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의 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쟁방법이고, 경매는 그 제시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쟁방법이다. 따라서 입찰은 경제학 용어로 sealed-bid auction을 의미하고, 경매는 open auction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정의에 따라 '입찰'과 '경매' 용어를 사용한다.

5) 추정가격이란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이다.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

〈표 1〉 공사계약 낙찰제도별 총금액과 계약 건수

(단위: 억원, 건)

연도	구분	계	턴키·대안	최저가	종합심사	적격심사	수의계약
2012	금액	339,693	78,829	106,321		145,781	8,762
	비중		(23.2%)	(31.3%)		(42.9%)	(2.6%)
	건수	19,913	74	166		10,334	9,339
2013	금액	318,471	39,088	104,749		160,691	13,942
	비중		(12.3%)	(32.9%)		(50.5%)	(4.4%)
	건수	19,532	45	177		10,678	8,632
2014	금액	298,304	42,900	92,454	10,873	144,647	7,429
	비중		(14.4%)	(31.0%)	(3.6%)	(48.5%)	(2.5%)
	건수	16,472	32	145	18	9,090	7,187

출처: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인용한 장훈기(2015) p.718 [표 2-18]을 재인용
금액은 계약금액 기준, 비중은 금액비중.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경쟁 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는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각 발주기관이 이에 따라 실제 적용할 심사기준을 작성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시하는 심사기준은 크게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이행능력부문에 나뉘어져 있으며, 경영상태부문 평가를 통과해야 기술이행능력부문의 평가대상이 된다.

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기술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배점에 따라 평가해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얻게 된다.

아래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의 평가를 위해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에서의 낙찰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3.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에서의 낙찰제도

가. 적격심사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점수의 합을 계산해 그 총합이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⁶⁾ 2006년 5월 25일 이후부터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 건수로는 공공공사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으로 측정한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점수의 배점 한도, 계약이행능력부문의 심사항목,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점수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추

6)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나 가격협상장소에 두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와 제7조의 2).

“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지적해왔듯이,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운찰제 성격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

정가격이 작을수록 가격점수의 배점이 높아지며, 심사항목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총평점이 92점 이상일 때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공사에서는 총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격점수는 입찰액이 예정가격의 88%일 때 최고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가격점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⁷⁾

$$\text{입찰가격점수}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그리고 계약이행능력점수는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계약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의 수도 감소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지적해왔듯이, 적격심사

낙찰제의 문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이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운찰제 성격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많은 업체들이 변별력 약화로 인해 계약이행능력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격점수가 낙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각 업체는 낮은 가격을 써낼 유인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예정가격의 88%와 차이가 큰 금액은 입찰가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낙찰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예정가격의 88%에 가까우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내야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92점이 낙찰받을 수 있는 최소평점이며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점수의 배점이 30 : 70이기 때문에, 각 업체는 계약이행능력부문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가격점수에서 22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예정가격의 80%를 써내는 것이 모든 업체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예정가격을 알고 있을 때 실행가능하다. 법령상 예정가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알기 위한 로비와 비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는 무작위추첨 방식을 이용한 복수예비가격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복수예비가격제도는 기초금액의 ±2% 내외에서 15개의 무작위 숫자를 선정하 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 중 2개의 숫자를 골라 그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4개 숫자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예정가격을 정확히 예측하는 업체

7)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일 때 입찰가격점수를 만점을 주는 이유는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예정가격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훈기(2015)).

가 그 예정가격의 80%를 써내 낙찰받을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현재 적격심사의 적용을 받는 많은 공사에서 각 업체는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낙찰자는 효율성이 아닌 운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나. 최저가낙찰제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2001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돼 2006년 5월 25일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덤핑입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로 인해 2003년 12월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입찰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했으나,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어 2006년 5월부터 주관식 평가를 포함한 2단계 평가로 개선했고, 현재는 공사유형별로 세 가지 심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심사방법은 세부심사절차나 방안이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부적정 공중에 대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꾸준히 지적받음에 따라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기본적으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다.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해 2016년부터 시행될 종합심사낙찰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본적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2013년 12월 26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료(「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본적으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평가체계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종합심사평가제 평가항목과 배점 개요

평가 부문	평가항목		가중치 범위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평점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소계		100%	
입찰가격 (50~60점)	가격		100%
	가격 산출 적정성		감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20~40%
	공정거래		30~40%
	건설 안전		20~40%
	소계		100%

출처: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2013.12.26.

각 평가부문별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사수행능력부문은 정해진 평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동일공사 시공실적의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술이나 규모별 충족도를 대한건설협회 신고자료나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매출액 비중 항목도 발주기관이 평가기준을 입찰공고하고, 매출실적은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배치기술자의 경력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자의 경력 요구 대비 충족도를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시공평가 평점의 경우, 일정기간 동일 공사그룹의 평균 시공평가점수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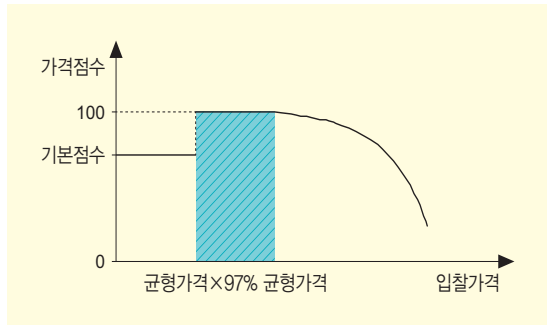
가격부문 평가는 적격심사와 비슷하게 적정가격대에서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에 시행한 안과 나중에 수정한 안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초기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정가격보다 큰 입찰액은 제외한다. 그리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상·하위 일정 비율의 입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계산한 뒤, 균형가격의 97~100% 사이의 입찰액에 만점을 부여했다. 균형가격보다 큰 입찰액의 경우는 아래의 식을 이용해 점수를 계산했다.⁸⁾

$$\text{가격점수} = \sqrt{1 - \left(\frac{\text{투찰가격} - \text{균형가격}}{\text{예정가격} - \text{균형가격}} \right)^2} \times 100$$

그리고 균형가격의 97%보다 작은 입찰액의 경우 기본점수 80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가격부문 평가방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초기 가격부문 평가 개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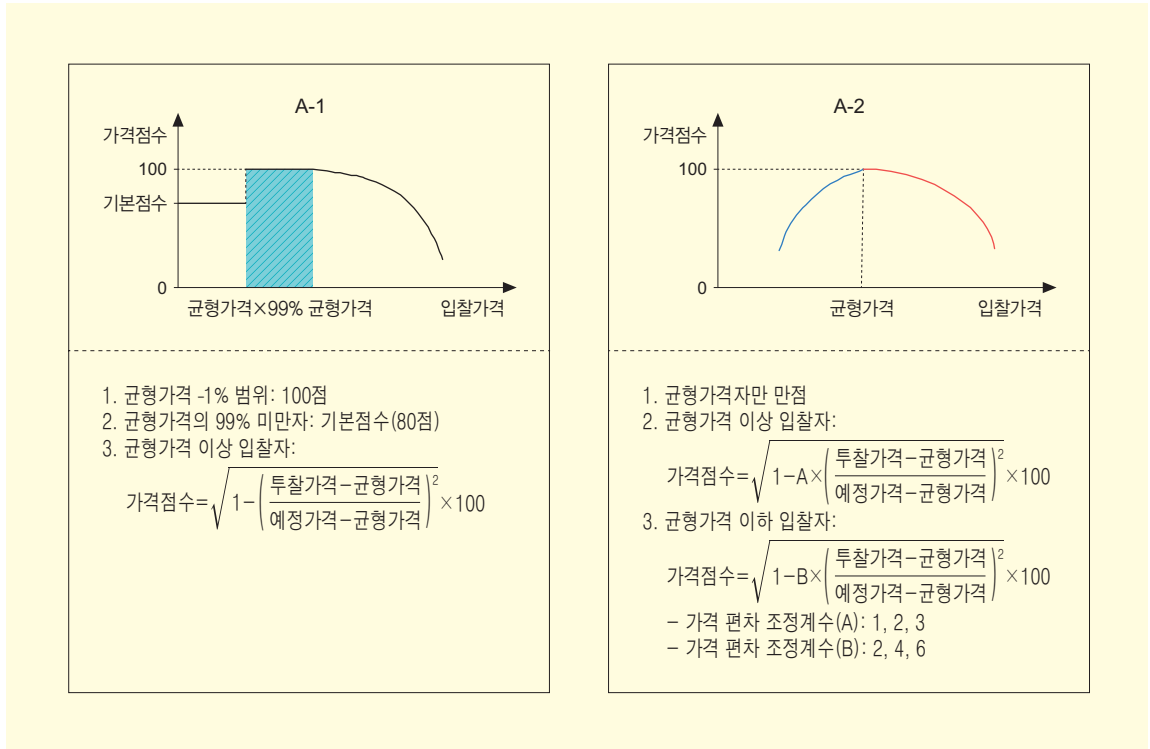


출처: 최민수·최은정(2015)

하지만 가격점수 만점자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자, 새로운 안에서는 두 가지 가격점수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8) 예정가격보다 큰 투찰가격은 낙찰자 후보에서 제외된다.

[그림 3]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가격점수 평가 개정안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한 최민수·최은정(2015) p.7 [그림 2]를 재인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부문 평가도 공사수행능력부문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인력 고용 항목의 경우, 건설인력 고용 기여도는 입찰자의 매출액 증감 정도와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공정거래 항목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며, 건설안전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을 평가한다.

이와 같은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방안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부문을 평가점수에 포함시키면서 공사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계약

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러한 평가항목이 실제 공사품질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는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은 품질과 그 특징이 계약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각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동일 공사시공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해당 공사계약에서 어느 정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보장할 수 있다면 책정된 점수는 그러한 품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다른 계약에서도 같은 시공실적 점수를 받는다면 이

“
**정부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어
 이러한 평가항목이 실제 공사품질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는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는 그 계약에서 같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의 특성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업체가 가격 이외의 부문에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경우에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적격심사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균형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합의 유인이 커질 수 있다.

4. 낙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소개

본 절에서는 낙찰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달계약(procurement contracts)에서 구매자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약방식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때 의미하는 계약방식이란 경쟁입찰방식뿐만 아니라 일대일 협상, 메뉴입찰(menu auctions), 가격공시방법(posted

price)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포괄한다. 둘째, 이러한 계약방식을 실제 경쟁입찰방식을 이용해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한 최적계약설계(optimal contract design)와 점수입찰방식(scoring auctions)⁹⁾

먼저 구매인이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때 최적계약설계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매인은 N 개의 업체 중 한 업체로부터 특정 물품을 구입하고자 한다. 구매인의 효용함수는 가격 t 를 지불하고 품질 q 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V(t, q) = v(q) - t = \sqrt{q} - t$$

라고 가정한다(여기서 t, q 는 양의 실수). 한편, 업체 i 의 이윤함수는 품질 q 의 물품을 납품하고 가격 t 를 지급받은 경우

$$\pi_i(t, q) = t - c(q, \theta_i) = t - \theta_i q$$

라고 가정한다. $c(q, \theta_i)$ 는 품질 q 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함수이고, θ_i 는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의미하는 랜덤변수로 구간 $[\theta, \bar{\theta}] = [1, 2]$ 에서 누적분포함수 $F(\theta_i) = \theta_i - 1$ 와 확률분포함수 $f(\theta_i) = 1$ 를 갖는다(균등분포). 비용함수의 정의상 품질 q 값이 클수록, 생산효율성 변수 θ_i 가 클수록 주어진 물품을 생산하는 비용은 커진다. 그리고 업체의 생산효율성 θ_i 는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로 해당 업체만이 자신의 생산효율성 값을 알고 있고, 구매

9) 본문의 내용은 Che(1993)를 중심으로 Laffont and Tirole(1987), McAfee and McMillan(1987)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다. 경제학 모델의 세부적인 가정은 생략하고 중요한 결론만을 선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위 논문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인이나 다른 업체는 생산효율성의 분포만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최적계약설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구매인이 업체들의 생산효율성 값을 모두 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해보자. 만약 구매인이 업체들의 생산효율성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선택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불하고 품질에 대한 구매인의 한계효용과 업체의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물품을 생산하게 계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즉, 구매인이 업체들의 생산효율성 값을 모두 알 수 있는 경우 생산되는 물품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frac{dv(q)}{dq} = \frac{\partial c(q, \theta_i)}{\partial q} \Rightarrow q^{FB}(\theta_i) = \frac{1}{4\theta_i^2}$$

그리고 이 경우 구매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t^{FB}(\theta_i) = \theta_i q^{FB}(\theta_i) = \frac{1}{4\theta_i}$$

이다. 정리하자면,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생산효율성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 $(t^{FB}(\theta_i), q^{FB}(\theta_i))$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구매인의 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키는(효율적인) 선택이며 이 경우 업체는 0의 이윤을 얻게 된다.

반면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 $(t^{FB}(\theta_i), q^{FB}(\theta_i))$ 에 따라 계약을 설계하면 업체는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

“
만약 구매인이 업체들의 생산효율성 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선택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불하고 품질에 대한 구매인의 한계효용과 업체의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에서 물품을 생산하게 계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

문에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 모든 계약방식을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의 ‘자진보고원칙(revelation principle)’에 의해 모든 계약방식은 업체에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보고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계약대상업체, 지불금액, 품질을 결정하는 직접계약방식(direct truthful mechanism)으로 대체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계약방식을 고려할 필요없이 직접계약방식만을 고려해도 충분하다.

이 원칙에 따라 업체에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보고하게 하면, 구매인이 생산효율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체는 자신의 생산효율성 값 θ_i 보다 크게(자신의 생산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생산효율성 값 θ_i 가 2보다 작은 업체가 구매인에게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tilde{\theta}_i=2$ 라고 보고해 $(t^{FB}(\tilde{\theta}_i), q^{FB}(\tilde{\theta}_i))$ 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업체의 이윤은

$$\pi_i(t^{FB}(\tilde{\theta}_i), q^{FB}(\tilde{\theta}_i)) = \frac{2-\theta_i}{16} > 0$$

이다. 따라서, 이 경우 생산효율성 θ_i 가 2보다 작은

10) 직접계약방식에서 모든 참가 업체는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균형전략이다.

“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의 경우
 구매인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계약설계가 필요하다.**
 ”

업체는 자신의 생산효율성 값 θ_i 보다 크게 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구매인이 $(t^{FB}(\theta_i), q^{FB}(\theta_i))$ 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경우 그 효용은

$$V(t^{FB}(\theta_i), q^{FB}(\theta_i)) = \sqrt{q^{FB}(\theta_i)} - t^{FB}(\theta_i) \\ = \sqrt{\frac{1}{4\theta_i^2} - \frac{1}{4\theta_i}} = \frac{1}{4\theta_i}$$

이기 때문에, 업체가 자신의 생산효율성 값보다 크게 보고한 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구매인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의 경우 구매인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계약설계가 필요하다. Che(1993)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계약(직접계약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먼저 N 개의 업체로부터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보고하게 하고

이 중 $J(\theta_i) = \theta_i + \frac{F(\theta_i)}{f(\theta_i)} = 2\theta_i - 1$ 의 값이 가장 작은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이 업체와 계약에서 품질은 $v(q) - J(\theta_i)q = \sqrt{q} - (2\theta_i - 1)q$ 를 극대화하는 $q^*(\theta_i) = \frac{1}{4(2\theta_i - 1)^2}$ 으로 하고, 지불금액은

$t^*(\theta_i) = \theta_i q^*(\theta_i) + \int_{\theta_i}^2 q^*(\tilde{\theta}) d\tilde{\theta}$ 으로 정하는 것이 구

매인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계약방식이다. 이

계약방식에서 모든 업체는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수식이 복잡하지만 이 차선계약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매인의 효용함수 $V(t, q) = v(q) - t = \sqrt{q} - t$ 가 아닌, $v(q) - J(\theta_i)q = \sqrt{q} - (2\theta_i - 1)q$ 를 극대화하는 품질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대업체에 정보대가(information rents)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대가란 업체가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불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대가를 추가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업체가 스스로 자신의 생산효율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하며,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사실 그대로 알 수 있어야 효율적인 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구매인은 자신의 효용함수와는 다른 $v(q) - J(\theta_i)q = \sqrt{q} - (2\theta_i - 1)q$ 를 극대화하는 품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두 번째 특징은 그 결과 업체의 생산효율성 값 θ_i 만이 아닌, 생산효율

성과 정보대가의 합 $J(\theta_i) = \theta_i + \frac{F(\theta_i)}{f(\theta_i)} = 2\theta_i - 1$ 이 최소인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정보의 비대칭하에서 최적계약방식의 품질

$q^*(\theta_i) = \frac{1}{4(2\theta_i - 1)^2}$ 은 구매인이 업체의 생산효율성

을 알고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품질 $q^{FB}(\theta_i) = \frac{1}{4\theta_i^2}$

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것이다.

위의 최적계약방식은 직접계약방식의 형태로 업체의 생산효율성을 보고하게 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을 맺는 방법이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최적계약방식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Che(1993)는 점수입찰방식(scoring auctions)을 이용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제

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업체에 가격과 품질에 대한 입찰서 (t, q) 를 제출하게 하고, 일정한 물 $S(t, q)=v(q)-\Delta(q)-t$ 에 따라 각 입찰서에 대한 점수를 책정한 뒤 최고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입찰서대로 계약을 맺는다면 그 결과는 최적계약방식의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여기서 $\Delta(q)$ 는 양의 증가함수로 최적계약방식에서 품질하락을 반영하는 항이다.¹¹⁾ 즉, 업체에 입찰서 (t, q) 를 제시하게 하고 이를 점수화할 때 구매인의 효용함수 $V(t, q)=v(q)-t$ 보다 품질 항목에 대한 점수를 낮춰야만 정보의 비대칭하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최적계약방식에서 구매인이 자신의 효용함수가 아닌 $v(q)-J(\theta_i)q=\sqrt{q}-(2\theta_i-1)q$ 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나. 경쟁입찰방식에 대한 추가 연구 소개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는 조달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결과로 그 외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Asker and Cantillon(2008, 2010)은 업체의 비용함수가 두 개 이상의 모수로 표현될 때 최적계약방식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앞서 언급한 예에서 업체의 비용함수는 $c(q, \theta_i)=\theta_i q$ 로 한 업체의 생산효율성 값 θ_i 가 가장 작다면 모든 품질에 대해 그 업체의 생산비용이 가장 작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용역에서 각 업체가 보유한 연구 인력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따라 효율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달라질 수 있다. Asker and Cantillon은 이러한 경우에 최적계약방식은 무엇인지 밝혀내고, 점수입찰방식이 품질을 고정한 채 가격만을 이용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
Burguet and Che(2004)에 의하면,
품질점수의 중요도를 낮추게 되면
계약서상의 품질이 저하되지만,
반대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하락 효과를 상쇄시키게 된다.
 ”

한편 정부계약뿐만 아니라 민간조달계약에서도 전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났다. 만약 이 경우 구매대리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특정 업체의 품질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는 구매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urguet and Che(2004)는 구매대리인의 비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점수입찰방식을 제안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가격에 비해 품질점수의 중요도를 낮추는 것이 구매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품질점수의 중요도를 낮추게 되면 계약서상의 품질이 저하되지만, 반대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 하락 효과를 상쇄시키게 된다.

한편 Decarolis(2014)는 이탈리아의 두 지방정부가 평균입찰방식(average bid auctions)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정책을 변경한 것을 이용해 최저가낙찰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평균입찰방식이란 업체가 제시한 입찰액 중 상하위 일정 비율의 입찰액은 제외한 뒤 평균을 계산해 그 평균과 가장 가까운 값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점수 책정 방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Conley and Francesco(2015)는 평균입찰방식에서 입찰자들의 담합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방법론을 제시했다.


11) $\Delta(q)$ 에 대한 자세한 수식 표현은 Che(1993)를 참고한다.

“
**평균입찰방식은
 담합의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사수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합의 유인을 낮추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5.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먼저 가격 위주의 낙찰제도에서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낙찰제도로의 변화는 계약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품질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사수행능력부문에 포함된 평가항목이 실제 공사 품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계약에서는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실제 공사 설계도에 대한 평가보다 객관적인 평가항목의 사용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항목이 높은 공사 품질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사 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부문의 변별력이 상실된다면 이는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본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제도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위험이 있을 뿐더러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점수 책정방법의 특성상 업체 간 강한 담합의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Conley and Francesco(2015)에서 언급했듯이 평균입찰방식은 담합의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사 수행능력부문의 변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제도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담합의 유인을 낮추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점수 산정방식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Che(1993) 등의 기존 연구에서 최적계약방식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점수산정방식은 가격의 선형함수이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부문 점수산정방식은 비선형함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점수 산정방식이 최적계약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특정 투찰률에서 가격점수 만점을 받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업체의 계약불이행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계약 이후 감리 등의 공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처럼 가격의 선형함수로 입찰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경우 품질 점수를 실제 선호도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비대칭 정보의 환경에서 최적계약방식을 설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2860,20141230\)\)](http://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2860,20141230)), (접속날짜: 2015년 11월 14일)
- 관계부처 합동,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경제관계장관회의, 2013.12.26.
-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 15-11-13 (보고안건), 2015.11.13.

- 장훈기, 『공공계약제도 해설』, 도서출판 삼일, 2015.
- 최민수·최은정, 「종합심사낙찰제의 개선 및 제도 정착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7.
- Asker, J. and Cantillon, E., “Properties of scoring auction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9, No. 1, Spring 2008, pp. 69–85.
- _____, “Procurement when price and quality matter,”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41, No. 1, Spring 2010, pp. 1–34.
- Burguet, R. and Che, Y., “Competitive procurement with corrup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5, No. 1, Spring 2004, pp. 50–68.
- Che, Y., “Design competition through multidimensional auction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4, No. 4, Winter 1993, pp. 668–680.
- _____, “Procurement,”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Second Edition. <http://www.columbia.edu/~yc2271/files/papers/Procurement.pdf> (접속날짜: 2015년 12월 15일)
- Conley, T. and Decarolis, F., “Detecting bidders groups in collusive auctions,” mimeo, 2015.
- Decarolis, F., “Awarding price, contract performance, and bids screening: Evidence from procurement auctions,”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6, No. 1, 2014, pp. 108–132.
- OECD(2015a),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접속날짜: 2015년 11월 14일)
- OECD(2015b),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http://www.oecd.org/corruption/recommendation-on-public-procurement.htm> (접속날짜: 2015년 11월 14일)



정책토론투리포트

■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

* 본 원고는 2015년 11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3, 4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

개요

- 주 제 2015 재정패널 학술대회
- 일 시 2015년 11월 27일(금) 13:30~17: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3, 4홀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프로그램
- 13:00~13:30 등록
- 13:30~14:50 **제1세션(3홀)**
- ▶ 사 회 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I-1. 노인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검토: 지역분배 격차를 중심으로
- ▶ 발 표 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자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오중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I-2. 유형별 공적이전의 빈곤효과성 비교·분석
- ▶ 발 표 자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 토 론 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I-3. 불평등도의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
- ▶ 발 표 자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자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3:30~14:50 제2세션(4홀)

▶ 사회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I-1. 중고령 자가거주 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주택다운사이징을 중심으로

▶ 발표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I-2.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 발표자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I-3. 고위험 흡연행위가 보건의료지출 및 위험자산수준에 미치는 효과

▶ 발표자 이순국 방송통신대 무역학과 강사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임재영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3:30~14:50 대학원생 논문 발표 1 (2홀)

14:50~15:00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

15:00~16:20 제3세션(3홀)

▶ 사회자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III-1. 정부재정지출에 따른 가계 혜택 조사

▶ 발표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II-2. 소득공제혜택이 개인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 발표자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석상훈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II-3. Do more tax incentives increase private pension saving?

- Theory and Evidence from extending tax deferral limit in Korea

▶ 발표자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6:20 제4세션(4홀)

▶ **사회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IV-1.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공제한도초과 기부금에 미치는 한계세율의 영향을 중심으로

▶ **발표자**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선우희연 서울대 경영대학 박사과정

정운오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V-2. 한계조세부담 및 금융소득종합 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 **발표자** 선우희연 서울대 경영대학 박사과정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운오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IV-3. 재정패널자료분석-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공제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병우 한국교통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5:00~16:20 대학원생 논문 발표 2 (2홀)

16:20~16:30 중간 휴식

16:30~17:00 제5세션

V-1. 생애주기, 직업, 고용형태가 가계자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홀)

▶ **발표자** 최희원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V-2. Stata를 활용한 효율적인 재정패널데이터 구축(3홀)

▶ **발표자**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자**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홍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V-3.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 인식 분석(4홀)

▶ **발표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영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토론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요약

I-1 주제

노인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검토:
지역분배 격차를 중심으로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지역불평등 격차로 인한 노인빈곤에
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거의 50%대에 육박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빈곤율은 4차(2010)의
47.9%에서 7차(2013)에는 48.4%로 증가하고 있
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여성,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교육수준이 낮아질수
록, 상용직보다는 불안정 고용에 근무하고, 도시보
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율이 높았다. 분
배 측면에서는 노인 간 소득점유율 차이가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4차년도(2010) 9.12배, 7차년도
(2013)에는 8.99배이었으며, 4년간 5분위 소득배
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인들 간
에도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불평등이 높은 지역이 불평등이 낮은 지역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태적
분석에서 4년간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노인은
36.7%에 불과해 노인 세 명 중 두 명은 빈곤을 한
번 이상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불평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불평
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빈곤에 놓
일 개연성이 높았다. 지역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

격차가 노인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
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토론요약 1

노인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상호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분석

김경아 /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노인빈곤과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함
에 있어 지역별 불평등 차이가 노인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
행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7개 광역단위의 지역기준(지역구분 I)과 지
역단위 연구의 기준이 되어 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세 가지 지역기준(지역구분 II)을 대상으
로 한 노인 불평등과 빈곤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해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년층의 지역 간 빈곤
및 불평등의 격차를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 거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문
제는 고령화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노인빈곤과 불평등의 문제와 그 상호 연관
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
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본 논문은 매우 의미 있
고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노인빈
곤과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그리 흔
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노



인들의 거주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높다고 사료된다.



토론요약 2

빈곤율의 측정이나 실증분석에 대한 보완 필요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노인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불평등도가 노인의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빈곤율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노인 빈곤율에 대한 연구는 마땅히 장려되어야 할 연구이다. 다만 본 토론자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경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토론문을 작성하였음을 먼저 밝힌다. 본 토론문은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의, 지역별 빈곤율 격차의 과대추정 가능성, 추정방법 등 세 가지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본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노인의 빈곤율을 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은 현재의 소득보다는 과거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자산 축적 등을 통해 현재로 이전함으로써 소비한다. 즉, 생애주기적으로 노인들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기

준으로 측정한 노인의 빈곤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노인의 빈곤율을 소득이 아닌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노인 빈곤율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다. 노인의 빈곤율을 측정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노인의 후생, 즉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는 소득이나 자산보다 삶의 질에 더 가까운 대리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보통 경제학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개인 효용함수를 소비의 함수로 정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율을 소비를 통해 측정하면 소득을 이용해 측정한 것과는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논문은 노인의 빈곤율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지역 간 빈곤율의 격차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대추정의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료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보통 자료에 나타나는 소득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소득이다. 이는 시장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껌, 파, 고추 등을 텃밭에서 길러서 소비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빈번하다면 농촌지역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지역 간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도 노인 빈곤율을 과대평가하는 요인일 수 있다. 소득이 낮더라도 물가 수준도 비슷하게 낮다면 구매력 측면에서 실질적인 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물가 수준이 낮아진다면 물가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대도시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농촌지역의 소득은 과소평가되어 지역 간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 번째, 불평등도가 노인의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 포아송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포아송회귀분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포아송회귀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종속변수가 포아송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4개년도 중 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있는 연도의 개수는 포아송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항 프로빗(multinomial probit) 모형 등 다른 방법의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독립변수 중 불평등도를 기준으로 불평등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1, 그렇지 않은 지역은 0으로 처리한 변수가 존재한다. 만약 불평등도가 노인의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니계수나 5분위배율로 측정된 지역별 불평등도 자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정보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 더 바람직해 보인다.

I-2 주제 유형별 공적이전의 빈곤효과성 비교·분석

임병인/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7차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유형별 공적이전의 빈곤효과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원천을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빈곤저감 효과를 평가할 때 순서의존성이 발생하며, 이는 빈곤저감 수단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왜곡을 야기한다.

둘째, 빈곤저감 정책의 목적과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 기존 연구와 달리 공적이전, 즉,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의 경우 전술한 공적이전의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빈곤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대안의 제시는 경계해야 하며,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토론요약 1

빈곤층 지원정책 효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해

강성호/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가구의 소득원천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빈곤완화 효과를 측정할 경우 발생하는 순서의존성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는 측면에서 좋은 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각종 소득원천에 의한 빈곤저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였으나, 이번 연구는 각각의 빈곤저감 정책에 대해 금액단위당 한계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 관점에서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문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빈곤층 지원정책별 비용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에는 빈곤율보다 빈곤율갭이 더 적절하다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는 빈곤선을 넘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빈곤율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와 같은 제도적 효과성, 금액당 한계 경제적 효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빈곤갭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지표가 더 유용하다는 측면보다 경우에 따라 적절한 지표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준다면 보다 균형된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논문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는 순서의존성에 대한 한계만을 지적했는데, 순서의존성에 따르는 효과와 통제했

을 때 나타나는 효과의 차이를 보여주면 더 풍성한 논문으로 발전될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이 공적이전의 빈곤영향과 빈곤효과성을 상쇄할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보험은 기여금뿐만 아니라 급여까지 포함해야 사회보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회보험 기여금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토론요약 2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론적 배경 많이 도입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론적 배경을 많이 도입했다는 부분이 본 논문의 큰 기여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제목에 유형별 공적이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적이전에 대한 유형을 논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번째, 본 논문에 따르면, 공적이전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비용(이전지출이 발생시키는 예산)과 편익(빈곤율 또는 빈곤갭의 규모 변화) 분석의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BC분석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차별점을 논문에서 언급해주시는 것이 독자들에게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세 번째, 본 논문에는 빈곤저감 정책의 단위당 금액에 대한 기여도, 즉 투입금액당 빈곤갭 감소효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빈곤선과 절대기여를 곱한 후 소득항목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여기서의 분자에 있는 절대기여는 한계의 개념이므로, 이와 같은 표현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넷째, 조세와 사회보험기여금이 빈곤갭을 저감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대부분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 같은 부분은 해당 조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득원천의 빈곤율 및 빈곤갭에 대한 빈곤영향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측정하셨는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여섯째, 투입금액당 비교할 때, 정부지원현금과 기초생보는 단순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사회보험서비스와 사회보험급여는 구분하는 것이 논문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비교한다는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사적이전소득과 민간연금보험소득을 묶어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한다고 논문에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적이전도 공적연금과 함께 묶어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I-3 주제	불평등도의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추이 분석
--------	-------------------------------------

남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2008~2014 재정패널조사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 분해를 통한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불평등도는 순위재설정 요소와 소득집중도로 분해될 수 있는데, 순위재설정 요소는 소득이동성의 척도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소득이동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달리 특별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으며, 불평등 추이 또한 특별히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의 값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순위재설정 성분과 누진성 부분의 크기가 비슷하여 순효과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순위재설정 성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이동성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통상적인 지니계수로부터 얻어진 순위재설정 성분은 소득이동성이 가장 빨리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요약 1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에 관한 유의한 접근 시도

이철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본 논문은 Jenkins & van Kerm(2006)의 모형을 활용한 순위재설정효과 부분과 누진성 부분으로 분해하는 시도를 통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에 관한 유의한 접근을 시도했다고 보인다.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소득이동성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매년 소득순위 변화는 소득 불안정성의 개념도 일부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개선의 영역으로 보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속되는 가계의 소규모화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1인 가구의 등장, 미혼가구의 증가, 소득이 취약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대한 분해를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타 경제학 분야의 결과들과의 일치성을 점검해야 한다. 기존 내용들은 주로 skill premium 증가에 따른 해석이 지배적이며 교육년수, 성별, 경험수준 등의 관측 가능한 요인 및 관측 불가능한 요인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Juhn et al. (1991)에서는 관측가능 및 관측 불가능한 부분 모두 소득불평등의 원천임을 지적하며, 후자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 성별 측면에서 임금불평등도가 개선되었지만, 관측 불가능한 부분에서 불평등도가 증가되었다.¹⁾

네 번째, 주요 미시적 요인들과 연계를 시도하거나 가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big data approach의 관점에서 분석한 Chetty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양자 소득의 ranking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함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25percentile 가구의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상위계층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요약 2

소득이동성 측정지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해 각 요인들의 기여도 분석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 1차부터 7차 자료(2008년~2014년)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소득 이동성의 추이를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추세는 Gini 계수를 비롯하여 상대빈곤율, 엔트로피 지수, 옻킨슨 지수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소득 이동성은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을 비롯하여 Shorrocks의 상대적 소득이동성 척도, Fields and Ok(1999)의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수, Jenkins and Van Kerm의 순위재설정 척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불평등 변화에 뚜렷한 추이가

1) 김대일(2000), 한종석 등(2015), Kim and Lee(2014)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소득 이동성 역시 기존 연구와는 달리 특별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 이동성을 순위재설정 성분과 누진성 부분으로 요인분해를 통해서 소득 이동성의 추세가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순위재설정 부분과 누진성 부분의 크기가 비슷하여 순효과가 0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소득 이동성의 추세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소득 이동성 측정 지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Fields and Ok의 총소득이동성 지수의 경우 1인당 소득이동성과 퍼센트 소득 이동성 부분으로 구분하고, 표준화된 Gini 계수는 순위 재설정 부분과 누진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들이 소득 불평등과 소득 이동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코멘트와 의문점이 있다.

첫 번째, 소득불평등 지수와 소득 이동성 지수들을 혼재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득불평등 지수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Gini 계수나 엔트로피 지수, 엡킨슨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소득 이동성 지표는 이행행렬뿐만 아니라 Shorrocks가 제시한 소득이동성 지수와 Fields and Ok이 제시한 총소득이동성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 소득 이동성 지수를 이전(transfer) 부분과 성장(growth) 부분으로 요인분해를 해서 분석하고

있다. 반면 Jenkins and van Kerm(2006)이 제시한 소득 이동성 지표는 두 기간 간의 소득불평등 지수의 변화를 누진적 부분과 소득 순위재설정 부분으로 분해한 후 소득 순위재설정 부분을 소득 이동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소득이동성에 대한 내용과 소득이동성의 요인분해에 대한 내용이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소득 이동성 지표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에서 이와 같은 분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표별로 소득 이동성 추세를 제공할 때, Shorrocks의 소득 이동성 지표와 Fields and Ok의 소득이동성지표, Jenkins and Kerm이 제시한 소득 이동성 지표인 소득불평등 지수 변화의 소득 순위재설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Shorrocks와 Fields and Ok의 지표들은 소득이동성에 대한 요인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 부분에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더 깊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다음은 소득이동성 지표를 설명하는 과정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Shorrocks와 Fields and Ok의 소득이동성 지표의 경우 이전부분과 성장부분으로 분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해가 되며 각 부분의 의미가 무엇이고 분석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본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행행렬과 Shorrocks, Fields and Ok의 경우는 소득 이동성을 측정할 때, 자료가 패널

2)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발표하고 있는 소득불평등 추이와는 다른 결과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한국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구조를 띠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Jenknis and van Kerm 방법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 간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후 이를 요인 분해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패널 구조를 띠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이 맞다면 Jenknis and van Kerm의 방법은 기존의 소득 이동성 측정방법과는 달리 패널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소득 자료를 소비지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본문에서는 항상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가구소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가구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세전과 세후 소득 등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 대신 소비지출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지출을 1인당 소비지출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 총소비를 가구원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균등화된 가구 소비를 측정하는 경우 가구 소득을 가구원의 제공근으로 균등화를 하는데, 직접 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 있다면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1 주제

**중고령 자가거주 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주택다운사이징을
중심으로**

항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4~7차 자료를 이용하여 50세 이상 중고령 자가거주 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택다운사이징 기초통계에서 최근 1년간 이사를 경험한 가구는 전체의 약 4.4%이며, 주택다운사이징 가구는 1.5%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이사한 중고령 자가거주의 약 1/3(33.8%)은 주거소비를 감소시켰지만, 2/3(66.2%)은 주거소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고령 자가거주 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 영향요인은 가구주 연령과 가구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이외), 거주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주택다운사이징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거주지역이 광역시일 경우 주택다운사이징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가구주 연령과 주택다운사이징의 관계는 주거소비 조정을 통한 자산의 소득화는 중고령 가구에서도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기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욕구(aging in place)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토론포트 1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부동산 자산 변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

민인식 /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중고령 자가거주 가구의 주거이동에 관한 논문으로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부동산 자산 변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령화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예상할 때 은퇴세대의 주거 다운사이징에 따른 소유주택 처분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세대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주거면적을 줄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의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implication을 얻는 결과가 얻어질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의 관심이 자산과 부채, 순자산 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가구는 자산의 75%가 부동산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자산변수가 주거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이 연구가 학술논문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재정패널 4-7차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재정패널 데이터는 중고령 가구에만 초점을 맞춘 sampling이 아니다 보니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 가구에서 이사를 경험한 가구는 190여 가구에 불과하고 또한 다운사이징을 경험한 가구는 67가구에 그친다. 프로빗 모형의 종속변수=1에 해당하는 가구가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rare events 데이터에 속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설명변수들이 사건의 발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추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거이동은 t-1시점과 t시점 사이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명변수는 두 시간 간 변화(chage)를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수준값(level)을 고려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것 같다. 가령 소득변수는 소득수준(level)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소득감소(change)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변수는 t시점의 소득인지 t-1 시점의 소득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변수에 대해서는 모두 수준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소득과 다르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비 지출 역시 주거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이 unexpected expenditure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이동과 관련이 있는지? 다른 지출항목과 달리 의료비 지출이 주거이동과 특별하게 연관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시장의 다운사이징은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격 변화는 주거지역과 관련이 있다. t-1 시점에서 서울에 살다가 t 시점에 경기도로 이사했다면 이러한 변화는 가구의 특성보다는 주택시장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 거주지역 자체보다는 거주지역의 이동이 주택 다운사이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 논문에서는 단변량 모형과 이변량 모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변량 모형의 단점은 rare events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변량 모형에서는 두 사건(이사 여부와 다운사이징)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



고 저자가 언급하고 있으나 이사를 해야만 다운사이징이 발생하는 데이터구조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사를 선택하지 않는 가구는 다운사이징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변량 모형보다는 probit selection 모형 또는 nested logit 모형이 더 적절하지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사 여부가 결정되고 이사한 가구에 대해서만 다운사이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제도로 인해 주거 다운사이징을 통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와 주거이동과 관련시켜서 implication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변량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할 때 athrho 값 대신 rho 값을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값으로 보인다. rho 값을 통해 두 의사결정(이사과 다운사이징)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토론요약 2

재정 패널이 가진 장점을 살린 패널 분석 시행 필요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주택보유자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부정적인 소득 충격(negative income shock)을 받았을 때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등으로 이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베이

비움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주택 보유자가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주택자산을 현금화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현금 유동성이 큰 자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인지 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주택 시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50세 이상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가구소득, 금융자산,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과 주택다운사이징 확률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가구소득 및 (현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자산과 주택다운사이징 확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주택다운사이징 확률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관측하였다.

연구주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 연구가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모형과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단변량과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다. 단변량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이사를 한 경우에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이사를 하고 주택다운사이징이 발생한 경우에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우선 이사를 한 경우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이는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50대 이상 가구로 하고 있다. 이는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사를 한 경우에 이것이 부정적인 소득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주택다운사이징을 한 경우도 부정



적인 소득 충격 때문이 아니라 건강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지역으로 전원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하는 등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ooled OLS 추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사를 한 경우가 재정패널 자료에서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생략변수에 의한 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간 부동산 가격이 다르고 이사에 대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명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소득 감소가 이사 그리고/또는 주택다운사이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패널자료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가 보다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은퇴시점 전후에 이사 및 주택다운사이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구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충분히 살려 분석한다면 본 연구는 보다 높은 완성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II-2 주제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김현식/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본 연구는 자산과 소득변수가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주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정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생존 분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산과 소득은 거주형태, 거주주택 외 주택소유 여부, 주택 외 부동산 소유 여부, 금융자산의 크기, 부채의 크기,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산에 있어 월세 및 기타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나 전세인 경우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금융자산이 많은 여성은 0원인 여성에 비해 출산율이 떨어진다. 둘째 자녀 출산에서는 부채가 없는 여성에 비해 부채가 많은 여성이 출산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일관된 규칙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발견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하나의 생애과정이론을 제안하였다.



토론요약 1

저출산정책 개선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없어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 1-7차 자료와 생존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자산 및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험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유형별 자산과 부채, 소득이 출산율과 일련의 관계가 있으며, 출산자녀의 순위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거주주택이 자가나 전세인 경우 월세 및 기타 형태에 비해 출산율이 높고, 둘째, 금융자산이 많은 여성은 0원인 여성에 비해 출산율이 낮으며, 셋째, 부채가 없는 여성은 부채가 많은 여성에 비해 출산율이 낮고 넷째,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 개선방향을 기대하였으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주거정책, 금융정책 등과 연계하여 출산율 제고방안을 제안하면 연구결과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고 정책적 기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완성도 향상을 위한 수정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쉽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구성으로 가독성 높게 잘 서술되어 있었으나 연구 분석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일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는 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의 출산력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제목에 '기혼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지, 노동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참고문헌의 김현식(2012)와 동일한 점에서도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 처리 과정에서 연구 대상 기혼여성의 연령을 '20-49세'로 한정하고 있는데, 연령은 1차년도 기준인지, 1-7차년도 기간 중 혼인상태가 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1차년도 기준의 연령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서술이 좋을 듯하다.

셋째, 모형의 설정에 있어 더미변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자산과 부채, 가구소득 등은 연속변수로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범주변수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범주별 상한 및 하한의 설정 근거는 무엇이며, 상·하한값의 변동에 따른 실증 분석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연속변수로 모형에 투입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등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자산과 부채가 개별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더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이 값으로 분석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넷째, 결과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자산, 부채와 출산율 사이의 역인과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기혼여성과 부채가 없는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녀 수가 많아서 증가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없고 또한 같은 이유로 빚을 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설명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관심에서 서술한 가구소득과



출산을 관계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해답으로 본 연구 결과는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약 논의 결과에 추가하면 연구 구성이 보다 논리정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요약 2

둘째 자녀 출산 결정요인 분석에 통제변수 추가 필요

이은경/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의 주제는 자산 및 소득이 첫째, 둘째, 셋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으로 재정패널 1~7차의 20~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콕스 모형과 이산시간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한 논문이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린다.

첫째, 여성의 출산(자녀수)의 결정요인이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다. 출산 자체와 자녀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는 자산이나 소득(economic resources), 두 번째는 기회비용인 여성의 노동참여율과 노동시장에서 갖는 임금과 교육 수준을 들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인 보육 및 교육비, 돌봄자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나이와 같은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요인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컨트롤이 되

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었다.

둘째,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 간의 자산 및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일 것 같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다시 말해 고소득 여성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감소할 것 같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자녀수가 증가할 것 같다. 따라서 분석을 할 때, 노동시장의 참여와 비참여로 샘플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셋째, 기초통계량을 제시함에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자녀별 출산 연령, 여성의 노동참여 여부, 교육수준, 소득 및 자산 변수 평균과 표준편차의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의 출산에 따라 자산과 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첫째 자녀 출산 당시에는 거주형태에 자가 소유가 거의 없고, 타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도 없을 것이며, 금융자산은 적고 부채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금융자산과 부채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는데, 구간별 금융자산과 부채의 분포가 균등한지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threshold를 변화시켜도 결과가 변화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threshold의 구분이 너무 작위적이라면 분위변수를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부채는 주택 관련 부채와 비주택 관련 부채로 구분하여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월가구소득 역시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였는데, 구간별 월가구소득의 분포를 보여주고 threshold가 달라져도 결과가 robust 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월가구소득의 경우에는 흔히 사용하는 소득 4분위 또는 5분위 변수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다섯째, 기혼여성에서 첫째 자녀의 출산은 소득이나 자산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19이므로 첫째 자녀는 언제 출산하느냐가 문제이지 출산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이 낮을수록 첫째 자녀 출산율이 높은 것은 반대의 효과(reverse causality)가 아닌지? 즉, 자녀 출산 후 비용이 많이 들어 금융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택,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이러한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요인이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저출산 대책에서도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결과에서 보이지 않듯이 엄마의 나이가 통제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첫째 자녀의 보육 및 교육비 지출 변수를 포함하면 첫째 자녀의 퀄리티 때문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식의 풍부한 결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둘째 자녀 출산율을 discourage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여성의 노동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이 중요한 변수일 것이므로 임금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결정모형에 콕스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형을 사용한 다른 연구들을 reference로 소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녀수 결정요인을 ordered logit model로 추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저자가 이미 연구한 노동패널 1~11차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다면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II-3 주제

고위험 흡연행위가 보건의료지출 및 위험자산수준에 미치는 효과

이순국/방송통신대 무역학과 강사

전용일/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재정패널 7차조사를 통해 가구주의 담배소비지출에 따른 보건의료비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위험자산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흡연행위로 인해서 보건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그 지출과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정 소득수준에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는 위험자산배분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40대 흡연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위험선호를 보이고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담배소비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고, 개인, 가계, 국가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토론포트 1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 필요

임재영 /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흡연 여부 및 정도를 기준으로 흡연자와 흡연에 전혀 노출된 경험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 위험수준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이로 인해 보험결정, 소득 및 자산의 배분, 보상임금수준의 결정 등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될 것이라는 선행연구(Viscusi, 1992)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증 분석한 것이다. 주제가 갖는 신선함과 흡연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연구목적 및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통해 논문의 완성도가 제고되기를 희망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논문은 개인의 흡연행위가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대리변수로서 적절한가를 실증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개인의 특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개개인의 흡연행위 및 자산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흡연기간 및 자산정도, 고용상태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론에서 제기된 본 논문의 연구배경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저자는 첫째 “흡연 및 음주 등 고위험

건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건강문제 외에 부각되는 또 다른 특성은 위험선호와 위험평가 왜곡현상이다. 중독적 재화를 장기간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 하나는 예방적 행위를 미룬다.”고 기술하며 흡연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위험직종에 진입하는 비율도 높고 일자리 안전사고 및 일상생활의 부주의 사고도 비흡연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의 경우 충분히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흡연과 관련된 건강행위가 노동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직업적 환경에 의해 건강행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환언하면,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흡연 및 음주를 더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및 모형과 관련하여, 첫째, 설정된 각 가설들 간 유기성이 부족하며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즉 가설 1³⁾과 가설 2⁴⁾가 어떠한 논리로 연결되는지 불분명하며 가설 2의 경우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이 불분명하다. 둘째, 이론모형에서 가정한 내용을 보면, “건강상태는 흡연 정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렇게 형성된 건강상태는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험수준에 입각하여 소득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흡연으로 인한 건강수준의 저하 및 그로 인한 임금수준의 저하, 아울러 흡연량의 증가(Simultaneous Effect of smoking and income) 및 건강수준의 추가적인 저하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3) 가설 1: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수준에서 위험선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1-1: 일정 소득수준에서 비흡연자에 비해서 위험선호 성향이 높은 흡연자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이다.
4) 가설 2: 중독적 건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수준의 하락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고위험행위인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객관적 건강수준이 하락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한 보건의료지출은 증가한다.



와 이로 인한 소득감소효과 부분이 모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추정모형과 관련하여, 담배가 보건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식에서 보건의료비지출이 역으로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인과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흡연이 위험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식에서 흡연행위와 건강상태 간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이를 추정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방법 이외,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matching을 통해 다른 부분들을 통제하고서 과연 흡연행위가 위험선호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가 보다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 저자가 사용한 자료원에 제시된 보건의료비 지출은 “가구조사의 항목으로 연간 총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 여부를 묻고 각각 세부적 항목으로 한약재, 성형수술비, 치과진료비,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를 세부 지출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술한 바, 이 지출액이 본인부담의료비인지 아니면 총의료비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만일 본인부담의료비라면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보유 여부 및 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증 분석의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 첫째, 흡연으로 인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의 증가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것으로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위험자산비중에 대한 흡연행위 효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 즉 40대에 비해 50대 흡연자가 위험자산비중을 낮추고자 함은 곧 흡연자의 건강상

태 악화 및 이로 인한 소득수준의 저하로 인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흡연행위는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수준의 변화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형태의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흡연행위를 위험선호 수준으로 인식하고자 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소득수준별 흡연이 위험자산에 미친 영향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고소득계층만 흡연행위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계층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행위가 위험자산의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기보다 단지 소득수준별 위험자산의 비중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흡연행위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흡연행위와 건강상태와의 관계 및 이로 인한 소득수준의 변화가 위험자산투자행위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토론요약 2

자산 포트폴리오상 위험자산 보유 결정, 위험선호도 외 다른 요인 존재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흡연이 건강에 위대한 영향을 미쳐 흡연자의 의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흡연자(특히 장기간의 흡연자)의 경우 위험선호도가 비흡연자와는 다르므로 위험자산배분의 정도도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흡연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와 위험자산배분에 미치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흡연과 위험자산배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흥미로운 주제로 생각된다. 다만, 흡연자의 위험선호도가 비흡연자의 위험선호도보다 높다는 가설이 반드시 자산 포트폴리오상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약하다고 보여진다. 자산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자산 보유에 대한 결정은 위험선호도 외에도 수익률의 차이, 지속적 저금리 기초하의 투자환경 등 주요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자산 보유 결정이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한 채, 흡연 여부와 연령그룹, 소득그룹과 같은 요인들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모형상에 주요한 변수들이 오차항에 포함될 가능성, 즉 omitted variable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흡연자의 위험선호도가 비흡연자의 위험선호도보다 클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예컨대, 금연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위험선호도가 높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금연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흡연을 하게 되는 것은 위험선호도보다는 중독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즉, 흡연의 위험도 인지하고 금연을 하고도 싶은데 의지가 약하여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의 위험선호도가 반드시 비흡연자에 비해 높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위험선호성향이 높다는 전제하에 자산 포트폴리오상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인다는 가설을 테스트하고 있으나, 흡연자의 위험선호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높다는 사실 자체가 테스트가 필요한 가설이라고 보여진다.

가설 3⁵⁾은 연령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흡연율은 30~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의료비 지출은 50대 이상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반면 순자산의 경우 주택구입, 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연령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에, 반드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순자산이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자산 포트폴리오상 위험자산비중은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와 관련이 있지만 대체로 젊은 연령대에서 위험선호도가 높고, 고령층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증모형에서 포함한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한편, 위험자산을 금융자산 중 주식, 펀드, 채권

5) 가설 3: 일반적으로 연령이 늘어나면서 가계 보건의료 지출 증가와 더불어 순자산 수준이 하락하여 위험자산배분은 낮아질 것이다.



으로 보고 있는데, 위험자산의 정의도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최근과 같은 저금리 상황하에서는 펀드, 채권과 같은 상품은 위험선호도가 낮은 사람이라도 예금의 대안으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단위가 단년도 횡단면 분석이기는 하지만, 위험자산의 정의를 주식으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흡연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흡연자가 평균적으로 의료비는 덜 지출하는 것으로 기초통계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비 지출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흡연은 개인의 행위인데, 실증분석의 자료는 가구 의료비 지출과 가구 내 흡연자를 사용한 자료상의 한계는 있다고 보여진다.

Ⅲ-1 주제

정부재정지출에 따른 가계 혜택 조사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귀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 및 추정방법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13년 기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 1~5분위 중에서 가장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1분위에 대한 정부의 현금 및 현물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에게 가장 크게 귀착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5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이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는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세금부담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2~5분위 가구에 대한 재분배 효과는 분석결과보다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2분위와의 격차는 시사하는 바가 존재한다. 혹자는 정부의 지원은 최저소득계층에게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분위 계층의 소득수준을 염두에 둘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최저소득계층에 편향되어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



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빈곤관련 정부지원의 수준이 시장소득의 변화 등을 상쇄할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이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조사내용에 따르면 정부지출로 인해 시간에 따라 소득분포가 개선되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이용량과 관련하여 수혜를 받게 되는 현물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즉, 단순히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제도의 증대가 소득분포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목표가 재정지출정책, 그중에서도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분포의 개선인 경우에는 여러 계층에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요약 1

현물급여의 가구별 귀착 산출 위해 계산방법 더 상세히 설명해야

임병인/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횡단면 분석과 패널분석을 함께 수행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재정지출의 가구귀착 정도를 소득재분배 효과로 규정하면서 현물급여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제시, 논의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달리 현실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 논평결과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행 연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본 연구와의 차이점 내지는 특징을 추가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현물급여의 가구별 귀착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방법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물급여 중 의료혜택이 가구별로 얼마나 귀착되는지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에서 가구보험료지출을 차감하고 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외에 본인(또는 가구)의 부담금이 존재한다. 이를 가구보험료지출과 마찬가지로 차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세 번째, 본 연구의 특징인 현물지원정책의 가구별 귀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요 수준이라도 현물지원 관련 제도와 예산 추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가구별 귀착 분석을 위해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였는데, 연도별 분위에서는 1분위 대비 3분위 비율로 설명하고 있어 같은 연구 내에서 가구 구분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1-3분위를 구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소득 기준 분위 구분에서 균등화지수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각주에서라도 설명해주면 좋을 듯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가구별 귀착, 즉 소득재분배효과를 정확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니계수 또는 Atkinson지수 등을 활용한 재분배효과 지표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는 단순하게 가구별 귀착 정도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표 14>과 <표 15>, <표 16>의 연도별 소득 추이를 6쪽의 [그림 1]과 연계하여 통합하여 제시하고 설명하면 가독성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평을 반영하여 보완할 경우,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이 포함된 유용한 논문이 될 것이다.



토론요약 2

추가적 2차 분석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결과 도출 기대

이동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수준별로 가구들에 얼마나 배분되었는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면 분석의 경우 소득분포를 5분위로 분류하고 각 분위별로 얼마나 정부지원을 받았는지 비교한다. 정부지원은 크게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한편, 횡단면 분석뿐 아니라 패널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득분포를 3분위로 분류하고 분위별 정부지원을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현금·현물지원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분석 내용으로 볼 때, '재정지출에 따른 가계 혜택'을 소득분위별, 지원형태(현금·현물)별, 지원항목(기초생활보장, 자녀양육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 항목과 의료·교육·융자 등의 현물지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공헌이 인정된다. 특히, 제도의 효과를 금액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정책 입안자의 제도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구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2차 분석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분석에 대한 보강을 제안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에 의한 수혜 내역의 총액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에



만 그치지 않고, 재정지출의 주요 항목에서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은 항목별 혜택의 양상과 전반적인 소득계층별 수혜 추이를 보기에 용이하다. 그러나 혜택의 차이가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금액의 추세 저변에 있는 원인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의료지원의 혜택이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이면서 의료지원 항목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혜택 차이를 각기 비교분석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분위별로 가족 구성원의 인원수나 연령분포 등을 함께 비교한다면 항목별로 각 소득분위에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교육지원의 혜택이 역진적인 경향이 있음을 자녀양육지원금 등의 세부항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항목별 비교에 더하여, 각 소득분위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함께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예컨대, 소득분위별로 자녀의 수가 어떻게 분포하고 1인 가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함께 비교한다면, 왜 소득분위별로 정부 재정지출의 혜택이 차이가 나는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본고의 제목에 비추어 볼 때, 연구주제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깊은 논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2차 분석을 병행하는 것보다, 본고의 1차적인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로서 재정지출 혜택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소득 분위와 기간 비교 수준의 조정과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횡단면 분석은 5분위를, 패널 분석에서는 3분위를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하고 있다. 각 분석별로 분위

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배경을 본문에 설명하면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분석 모두 5분위로 소득계층을 나누어 분석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패널은 3분위로 하였는지, 또는 5 내지 3분위가 아닌 10분위로 할 경우에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석결과를 논하기 전에 언급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진행을 받아들이기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는 기간 비교 시, 2009년, 2011년, 2013년만을 보이고, 그 사이의 2010년, 2012년은 생략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거나 감소추세를 보이면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중간에 꺾이는 V자나 역(逆) V자 형태의 추세를 보인다면 생략된 연도들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모두 보여주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 연도들을 생략할 경우, 중간에 꺾이는 추세가 나타나면 독자들은 이것이 특정 연도 한 해에 한하여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매년 지그재그 식으로 임의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기간이나 계층 분류의 수준을 지금과 같이 설정한 이유를 언급하는 것이 분석결과를 설명하기 앞서 부연된다면 더 명료한 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2 주제

소득공제혜택이 개인연금
보험료에 미치는 효과

김재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5년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공적노후소득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가입과 유지가 절실하다.

정부는 개인연금의 강화를 위해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가입과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입을 기피하여 사적연금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연금 세제혜택과 가입능력이 개인연금가입과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제혜택의 효과로 전체 소득공제액 중에서 개인연금보험료의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양(+)의 효과를 나타내 소득공제가 개인연금 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가구원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료 결정에 대한 분위회귀분석결과에서도 개인연금보험료의 공제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들었다. 반면 경상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입능력은 가입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보험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소득공제의 한도가 변경되는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기간터미에 있어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 2011년 이후 상위 75%의 보험료지출자에게 양(+)의 상관관계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증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혜택은 개인연금 가입과 보험료 증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가입능력이 낮은 경우 가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과 보험료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험료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론요약 1

개인연금 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필요

석상훈 / 기획재정부 사무관

본 논문에 대한 주요 논평결과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된 소득기간이 끝나고 퇴직한 후에는 공적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으므로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개인연금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서론 부분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변화율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패널 통계를 이용해 개인연금의 가입률 및 유지율 관련 데이터의 변화추세를 보여주면 더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분석모형과 관련하여, 본 논문 모형분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개인연금공제율이 설명변수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공제율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와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기타 설명변수는 설명을 못할 것 같다. 핵심변수를 잘 뽑아내었으나, 이 변수이외에 proxy variable 등의 다른 변수의 사용을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면세율이 상당히 높아서 저소득층은 세제혜택을 받을 게 없다는 부분이다. 세수감소의 문제 등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부분들도 고려해서 논문에 정책제언을 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중요한 설명변수로 개인연금소득공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연금 가입능력, 그리고 제도 변화를 나타내는 연도더미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개인연금소득공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움직임은 실증분석인 개인연금 가입 여부에 미치는 세제혜택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종속변수인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종속변수가 0의 값인 미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이 총소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이 될 것이고,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갖는 가입자의 경우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세제혜택의 변화보다는 종속변수인 가입 여부의 변화를 더 크게 반영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가입 여부에 따라 경제주체의 행위가 반영된 결과변수보다는 각 개인별 연금 가입능력(경상소득-총지출)만큼 해당 개인이 개인연금 조세지원 제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크기를 추정하고 이 혜택이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이에 의해 가입 여부라는 경제주체의 행위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두 번째 실증분석에서도 동일한 변수를 세제혜택변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변수에 대한 분위별 추정계수의 크기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게 추정되는 공통점을 모든 모형의 추정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 내지 사전적 기대와 상충된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 부근의 고소득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 및 사전적 기대와 상



토론요약 2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보험료 결정에 미치는 효과 실증적으로 분석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논문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개인연금 보험료 결정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미가입자를 포함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분석과 함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실증분석에서



반된 분석결과는 설명변수 선택의 문제, 특히 세제 혜택을 대변하는 변수로 설정된 개인연금소득공제 비율의 문제라 판단된다.

세 번째,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도더미를 제도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해석하고, 2010년 이후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추정결과를 제도 확대에 따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추정식에 포함된 연도더미는 제도 변화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추정식에 설정된 변수들 이외의 모든 연도별 여건 변화를 나타내므로 해당 추정계수가 제도 변화의 효과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저소득층에는 정부지원 및 차등적인 공제한도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정부지원을 확대할 경우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저소득층이 정부가 개인연금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준다고 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고소득층에 낮은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저자가 제안한 차등적 공제한도 방식이라면 가입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공제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Ⅲ-3 주제

Do more tax incentive increase private pension saving?
- Theory and Evidence from extending tax deferral limit in Korea

정원석/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사적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연금저축을 증가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에 소득공제 한도 증가가 사적연금저축을 증가시키는데 대해 추정하였다. 소득공제 한도 증가는 저소득층, 중간계층 기여자의 연금저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높은 기여자는 연금저축을 탄력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론요약 1

한도 증액의 영향이 고소득 계층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결론

남재우/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세계 적격 개인연금에서 세제 혜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개인연금 저축액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시하



고 있다. 논문의 구성과 분석 결과가 명확한, 잘 구성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이라 함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개념이나, 특히 퇴직연금의 IRP와 개인연금을 묶어 개인형 사적연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세제 혜택 한도 상향 조정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 700만원으로 확대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자산운용사의 상품 측면에서 연금펀드와 퇴직연금펀드가 다르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펀드의 선택폭은 대단히 협소하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종합연금계좌(IPA)의 도입이 촉구되는 부분이다.

한도 증액의 영향이 고소득 계층에서만 확인된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대단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세제 혜택이 규모의 증대가 아닌 상한선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상한선이 제약적으로 작용하지 않던 소득 계층에 영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보다 흥미로운 부분은 일반 저축과의 대체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고소득 개인이 세제 적격 개인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은 확정적인 수익률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된 IRP 연금 증가분의 자산구성성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아마도 기존의 퇴직연금에 비해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실적배당상품으로 많이 배분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제를 통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대부분 면세점 이하인 중하위 계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해결

하기 어려우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토론요약 2

향후 세액공제 제도 연구할 수 있는 분석틀 정립해

홍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2014년도 이전에 시행된 소득공제 제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최근에 세액공제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와 같은 분석방법으로 앞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틀을 갖춘 것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특히,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득세 공제한도인데,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벤치마크 모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며, 실증분석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공제한도(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를 늘리게 되면, 연금소득이 같이 늘어나는 것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실증분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논문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 공제한도 증가로 이미 한도에 가깝게 저축하는 고소득, 고자산보유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소득자들이 더 저축을 하는 것인지 제도 때문에 더 저축을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IV-1 주제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공제한도초과 기부금에 미치는 한계세율의 영향을 중심으로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선우희연 / 서울대 경영학 박사과정

정운오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본 연구는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에 중점을 두고 절세효과를 반영하는 한계세율과 가구별 기부 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우선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절세효과가 커지고, 비조세적 요인이 절세효과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부금 지출액의 총액을 종교적 기부금 지출액과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으로 구분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도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한도초과기부금의 경우에도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라 커지는 절세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른 기부금 총액의 증가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기부금 비율이 높을수록 동(同)지출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별도의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할 수 있는 종교적 기부금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계세율이 커짐에 따라 한도초과기부금비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해서 소득공제의 배제에 따른 잠재적 기회비용의 증가에 따라 가급적 한

도액을 초과해서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가급적 한도초과기부금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절세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과도한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익·자선 등의 비조세적 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종교적 기부금 비율은 동(同)비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쳐서 종교적 기부금의 기본적 특성이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론요약 1

시간변수를 포함한 패널분석 필요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본 연구는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조세 부담이 개인의 기부금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이다. 한계세율은 기부금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도(특히 종교기부금에 있어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한도초과기부금 비율은 감소하는데, 이는 절세효과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에도 종교기부금에 대해서는 동 비율이 영향을 미쳐 절세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의견 제시로서 연구에서 활용하



는 추정 회귀식에서 시간변수(연도더미)가 빠져 있는데, 최근 연구들의 패널자료 분석에서 시간변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의 결과가 음(-)으로 나타난 경우 대한 설명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결과에서 종교적 기부금은 음(-)으로, 다른 기부금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계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포함시켜서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미래소득에 대한 예상인데, 그 부분을 반영해 볼 수 있다. 송헌재 외(2015) 등에서 연금정책과 기부금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니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Quantile 분석이 추가되면 좀 더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현재 주요한 이슈가 되는 점은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다.



토론요약 2

기부에 대한 동기나 모형에 대한 새로운 설명 필요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첫째,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절세 목적을 제기하셨는데 과연 절세 목적이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기부의 비용(기부금 지출액)이 기부의 편익(세금 절감액)보다 크므로 기부할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절세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므로 기부에 대한 동기나 모형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 연구 문헌처럼 이론적 기초가 있는 기부 가격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 논문으로 추정과정에 존재하는 통계적인 문제에 대한 식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정전략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독자들의 이해가 쉬울 것이다. 통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Choi & Jeong(1993)에서 논의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첫째, 기부금이 0인 다수의 응답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censoring bias 혹은 selection bias가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이 censoring bias를 컨트롤하기 위해 t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둘째, 누진세체계에서 기부가격을 결정짓는 소득세율(평균실효세율)은 기부금 규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ndogeneity bias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기부금공제 차감 전 과표에 대응하는 법정 한계세율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는 기부가격을 결정짓는 소득세율(평균실효세율)과 다르기 때문에 괴리감이 생기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Choi & Jeong(1993)이 제안한 simultaneous equations tobit(SET) estimation을 패널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셋째, 핵심 변수들의 개념 및 정의와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소득변수로 가치분소득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변수 생성에 대한 논의의 부재가 아쉽다. Choi & Jeong(1993)처럼 소득변수는 기부금 지출의 결정요인으로 보다 적합한 소득개념을 사용하며, 기부금 지출과 내생성 문제가 없도록 소득변수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계세율에 대한 개념의 정확한 정의도 필요하고 기부가격 산정 시 지방소득세 부담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각 세율구간별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분석해 보길 권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공익적 목적과 종교적 목적을 구분하나 그 구분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부금공제 한도 관련 설명에 있어서 이해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불필요하다면 빼거나 부록으로 돌리고 중요하다면 구체적 사례를 부록에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 한계세율 및 가치분소득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논의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생성 문제보다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법정 명목세율과 소득과의 관계는 다른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동일한 소득이라도 서로 다른 법정 명목세율과 연계되고 그 순서도 바뀔 수 있다. 종속변수로 한도초과기부금 지출액을 이용한 가설 검정 시 기부금 지출액이 없는 경우와 기부금 지출액이 있지만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의 통계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 바란다.

마지막으로 추정 결과의 계수값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제공되면 독자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IV-2 주제 **한계조세부담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선우희연 / 서울대 경영학 박사과정
전병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운오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본 연구는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강화가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소득에 대한 한계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가계가 금융투자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요건은 금융소득에 대한 가계의 한계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어 2013년도 이후의 가구 금융자산 구성에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강화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계의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3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가계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영향을 미

쳤으나, 그 효과는 조세혜택 금융자산과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계의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가계들이 자산 구성을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의 한계세율과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이용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분야이다.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금융자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한계세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인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토론요약 1

분석 대상 샘플 수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구심

오승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한계세율(가설 1)⁶⁾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변화(가설 2)⁷⁾가 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논문이다. 분리과세 시 조세비혜택 자산의 경우 한계세율 차이에 따른 과세세율의 차이가 없으므로 종합과세가 되어야만 세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꿀 유인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한계세율은 금융자산 선택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검증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분석 대상의 샘플과 관련하여 가설 1의 분석에서 종합과세 대상 가구의 샘플 수가 충분한가? 즉, 자신의 한계세율이 적용이 되어 그것의 영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대상의 샘플 수가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었고, 가설 2의 경우 DID(difference in difference)분석 방법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실험군)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룹(대조군)이 필요한데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 그룹의 가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 요인을 확인하기에는 불가능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선행연구는 어떻게 이러한 분석이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의 경우 이자소득, 개

인배당소득이 모두 종합소득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구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종합소득과세가 되므로 한계세율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종속변수를 그룹으로 묶어 분석했는데, 금융상품 각각의 규모나 결정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품별 개별 분석을 수행하고 각 금융자산 간 보완 혹은 대체관계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경우 토빗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하위 50% 가구의 경우 조세혜택 자산이 전무하므로 이들 가구의 자산구성은 한계세율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sample selection bias 보정을 위해서는 다른 모형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한계세율이라는 것이 결국 소득계층인데 이 소득계층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 가설 1: 개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것이고, 조세혜택 금융자산이 총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7) 가설 2: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금융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을 줄이고,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



토론포트 2

IV-3 주제

재정패널자료분석-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공제를 중심으로

자산 구성의 영향 보기 위해서 자산수준에 대한 통제 필요

김병우 / 한국고통대 교양학부 교수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간략하게 본 논문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제도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자산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자산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두 부분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산의 구성만을 보려면 자산수준의 변화를 통제하고 분석해야 신뢰도 높은 결과 해석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분석은 어렵다. 기대수익률에 따라서 변화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트렌드라는 부분이 작용을 한다. 물론 모형을 설정할 때 연도터미를 넣긴 했지만 이것은 각 연도의 경기 순환에 대한 부분일 뿐, 트렌드를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2012년과 2013년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조세혜택 자산과 비혜택 자산의 구분이 너무 폭넓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기준으로 자산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주식에 대한 조세혜택 자체가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 세후 소득을 변화시키는데, 저금리로 인해서 주식, 펀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연관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변수를 분석 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는 흔히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라 불린다. 램지(F. Ramsey) 등의 이론은 주로 효율성 증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전통이론은 최선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차선의 정책을 추구해왔다. 이론은 다음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소득세와 같이 구체적인 조세를 두고 이를 최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여기서 공제제도 운영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현행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책을 살펴보고 이 논의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시도한다. 재정패널조사 제7차년도(2015)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적 처리상 이유로 7,559개의 횡단면 자료를 가구원 ID에 연계한 Random Number Generator를 통해 100개의 표본만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당국의 중장기 조세정책은 비과세 및 감면제도 합리화(공평과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상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향후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각종 공제제도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둘째, 법인세 증세와 소득세 감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수행한다는 성급한 비합리적 추론을 멈춰야 한다. 모든 조세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조화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론요약 1

논문의 뚜렷한 목적성과 분석에 따른 결과의 필요

김상겸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논문의 완성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 논평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논문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논문의 목적을 보다 뚜렷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가 평가하기에 본 논문은 소득세 공제 제도의 효과 검증 및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목적인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논문에서는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최적조세의 논의에 대한 시도도 엿보인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구의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공제제도의 효과만으로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가 아직 진행단계인 탓이겠지만, 분석 결과가 뚜렷하지 않다. 현재의 논문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단편적인 변수 간의 관계분석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보편적인 회귀모형이라면, 개별 공제항목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해 회귀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접근방법으로 왜 이러한 접근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문 중, “교육비 공제 여부는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여부와 양(+)의 관계를, 연금보험료 금액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가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귀식의 계수만을 나열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reasoning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실증분석 결과로서, “1) 가구원 특성과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공제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 2) 최종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거자료 제출 여부, 연금보험 및 저축공제 여부, 교육비 공제 여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라 사료된다. 종합소득공제는 가구원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정상이며, 공제가 최종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공제제도가 유효하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할 때 공제항목을 열심히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정책에 대한 평가나 제언은 명확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뚜렷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정책제언은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컨대 산출세액(2조 1천억원)에 결정세액(1조 9천억원)의 차이(대략 2,500억원)가 있다하여 현재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나, “조세수입 확보기능이 재분배기능에 의해 공동화되었음을 시사한



다.”는 주장 등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제제도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제도의 기본 취지가 있음을 생각하면 공제제도로 인해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점인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 사료된다.



토론요약 2

논문의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해야

하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완성도가 낮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우선 논문의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알맞은 분석 방법을 적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연구자의 분석은 독립변수를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가지고 회귀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다양한 변수의 통제없이 한 두개 변수의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추가적으로 표·그림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직접적으로 논문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V-1 주제

생애주기, 직업, 고용형태가 가계자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희원 /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을 안전금융자산, 위험금융자산, 자가주택자산, 기타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와 인적자원의 질적 요소인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애주기(연령대)에 따라 가계자산 항목의 평균보유액 차이가 있다는 것과 직업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자산 평균보유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선호도가 안전자산인 자가주택자산, 안전금융자산 등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토론요약 1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 있다면 좋은 연구 될 것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패널자료이므로 패널분석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1개 연도만 분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ANOVA 분석은 변수가 상당히 통제된 경우에만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는 변수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첫 째로, 본 연구의 목표가 자산 규모라기보다는 자산의 구성이므로 종속변수로 위험자산 비중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가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소득자보다는 가구의 최고 연장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대는 주소득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남녀 이외에 기혼, 미혼 등의 변수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자녀의 수나 자녀 유무도 자가주택 보유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과 주식 수익률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전년도 순자산 규모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패널자료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로그값을 이용한 추정도 시도해 본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요약 2

분산분석으로 생애주기 해석하는 것보다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 봐야

성명재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본 논문은 저자가 의도한 내용과는 달리 생애주기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분산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noise가 통제가 되는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집단 간 평균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생애주기에 관한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중간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고 결과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첫째, 횡단면적 연령 차이를 생애주기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만약 세대 간 경험이나 패턴, 분포 등의 구조적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라면 생애주기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애주기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본다.

둘째, 직업 및 직군 고용형태의 차이가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 고용형태별 (평균)소득수준의 차이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분산분석 방법으로는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만약 소득 등 다른 환경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얻은 결론이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논문에는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생애주기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셋째, 자산의 절대액 차이 비교를 통한 가설검정으로 생애주기를 설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연령대



별로 자산축적 총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액을 기준으로 자산종류별 크기 비교를 하면 scale effect 때문에 제대로 된 검정이 어렵다고 본다. 자산총액은 분포가 생애주기시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정 후 자산종류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더미를 사용한 것은 옳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연령, 연령제곱 등을 사용한다면 보다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산유형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개별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기보다는 SUR 형태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한다면 보다 나은 연구가 될 것이다.

V-2 주제 **Stata를 활용한 효율적인 재정패널데이터 구축**

민인식/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재정패널(NSTB) 데이터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개별가구와 가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NSTB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만든 Stata 통계패키지 명령어 파일을 이용하여 손쉽게 연구용 패널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데이터 구축에 사용했던 시간을 연구분석 자체에 더 많이 쓸 수 있다. 결과적으로 NSTB를 이용한 학술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nstb_use와 nstb_add 명령어를 통해 NSTB 원데이터의 변수 그리고 wave를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자가 작성한 명령어 파일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실행된 기부금 세액공제 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토론요약 1

재정패널에 특화된 Stata 개발, 앞으로 많은 도움 될 것

송헌재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민인식 교수님의 연구는 재정패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사실 재정패널은 처음 이 자료를 접하는 연구자에게 진입장벽이 꽤 높은 편이다.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재정에 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재정패널 자료가 갖고 있는 장점에 상당한 매력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인식 교수님께서 위의 두 가지 문제에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패널데이터에 대한 기초지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실증연구에 필요한 주요 변수들을 아주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 이어서 궁금한 실증분석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패널에 특화된 STAT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신 것이다. 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찾아 검증해보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구축하여 제공되는 패널자료들은 수집하는 정보의 양도 다양하고 데이터 자체의 크기도 매우 커서 연구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안타깝지만 재정패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

황에서 민교수님의 연구 결과물은 현재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들과 앞으로 재정패널을 이용한 실증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재정패널 데이터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고 데이터 가공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줘 연구의 주제와 검증방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면에서 민인식 교수님께서 수행하신 연구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냉정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그런데 민인식 교수님은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동기로 이 연구를 시작하셨다. 경제학자 가운데에서 이타적인 분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후배 경제학자들에게 귀감이 되셨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결과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패널 홈페이지에 민교수님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연구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고 데이터 가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민교수님의 연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명의 경제학자의 이타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를 본받는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토론요약 2

패널 데이터 구축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의미 있는 연구

홍우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각 연도별로 수집된 재정패널(NaSTaB) 데이터를 연구용 패널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는 Stata 명령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핵심은 바로 두 가지 명령어, `nstb_use`와 `nstb_add`로 요약된다. 먼저 `nstb_use` 명령어는 저자가 이미 코딩한 변수들을 간편하게 연구용 패널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며, `nstb_add` 명령어는 저자가 이미 코딩한 변수들 이외에 재정패널 원자료에서 포함하고 있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가져와 기존에 `nstb_use`를 통해 구축한 패널형태의 데이터와 병합하는 작업을 한다. 이와 같이 두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재정패널 원자료를 기초로 모든 형태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공헌은 연구자들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을 절약시켜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추후 재정패널 데이터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두 명령어가 저자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서 그 활용성의 측면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 두 명령어를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자가 `nstb_use`의 명령어에 이미 코딩한 변수들

에 있으며, 이에 두 명령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은 얼마나 정교하게 더욱 많은 default 변수들을 `nstb_use` 명령어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따라서 추후 이 명령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default 변수들의 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 명령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변수들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각 변수를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해설서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명령어의 사용을 보편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패널 조사팀과의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명령어는 이미 공개된 재정패널 데이터의 원자료를 가지고 연구용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패널의 구성이 바뀐다면 이 명령어의 사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패널팀과의 공조는 이 명령어를 보편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명령어의 우수성은 매우 긍정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nstb_use` 명령어는 한글로 변수이름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한글보다 알파벳이 축약이 더욱 자유롭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알파벳으로 변수이름을 지정되 변수의 설명을 한글로 하거나, 혹은 알파벳과 한글 변수이름이 둘 다 통용되는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이 명령어는 Stata 14 버전에 특화되어 있어 이보다 낮은 버전은 이 명령어를 구동할 수 없다. 이는 분명한 단점이라고 생각되며, 이 명령어들의 호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3 주제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분석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영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세라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인식이 납세자의 경제적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세부담과 복지혜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 납입액이 큰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이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근로시간이 많거나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세 신설과 추가 세부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실질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세 신설에 따른 추가 세부담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요약 1

학술적 기여도가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

김상겸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일세는 어떠한 형태로든 또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세목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그동안 학계의 관심이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토론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통일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더욱이 납세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라 생각되므로 학술적인 기여도는 물론, 시의성이 충분한 연구라 사료된다. 향후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regression 모형은 기본적으로 ordered logit을 기본으로 하여, 유의미한 변수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몇몇 변수들은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적절한 통제 없이 함께 분석하는 것은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모형에서는 가구소득, 연간소득, 공적연금납부액 등이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연간소득은 가구소득과 직접적 상관이 있을 것이며, 공적연금납부액(국민연금 등)은 가구소득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어찌면 연간소득금액이 유의하지만 coefficient가 0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타난 이유도 여기에 근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공적연금납부액이 높은 사람들이란 어느 정도 소득수준에 다다른 사람들임을 의미하는데(소득이 낮으면 연금납부액이 작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면), 연금납부액은



크게 영향을 주지만 소득이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논문의 통일세 신설 시 추가 세부담 의향 분석결과 분석 역시 유사한 문제의 소지가 엿보인다.

둘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교육과 공적연금납입액이 통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발견된 fact에 대해 가능한 해석 내지는 추론 등이 보강되면 좋을 것 같다. 분석결과만 놓고 보자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에 찬성한다는 것이지만, 왜 그런지? 예컨대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통일세를 준비해야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인 것인지,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으면 통일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등등 가능한 이론적 해석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공적연금납입액이 높은 것이 왜 통일세에 찬성하는 성향을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한 reasoning도 추가되었으면 한다. 연금납입액과 통일세 간에 가시적인 연결고리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 연금납입액이 수령액에 영향을 미쳐서 통일세 부담을 기꺼이 지겠다는 것인지, 또는 연금납입액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지 이유를 덧붙여 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모형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ordered logit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ordered probit 모형은 시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포에 따라서는 상이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하지만 영향력이 거의 없는 소득변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토론요약 2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통일세 관련 연구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통일세 신설에 대한 수용도 및 부담의향이 다양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와 관련하여 기존에도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지만, 위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가 아닌 조사시점에서 논의되던 통일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일세는 구체화된 정책이 아니었으며, 통일이 되는 경우의 지불의사와 통일세 신설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통일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통일에 따른 부담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통일에 따른 부담을 지불할 의사는 있지만 조사시점에서 논의되던 통일세, 즉 재원의 사전조성 등에는 반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둘째, 그러한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일에 대한 부담의향이 소득 및 자산,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등과 관련된 변수 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위 연구의 중요한 기여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90년대의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추정한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충분한 차별성이 있다.



결과의 제시와 관련하여 통계적 유의성 외에도 파라미터의 크기도 중요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통일세에 대한 태도 및 지불의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결과를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운데, 단위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보기 쉬울 것이다. 통일에 대한 지불의사와 관련하여 지불의사가 성별, 연령대별 특성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언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11

요약

- **캐나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유언 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 과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유언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에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것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인 29%로 과세함
 - 유언신탁에만 적용되던 일부 과세혜택을 폐지하여 생전신탁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미국** 국세청 자문위원회(IRSAC)는 2015년 11월 19일 국세행정개선 제안내용을 담은 ‘201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함
 - 납세자 부정신고 감시, 납세편의 증대를 위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덴마크**는 11월 19일에 2016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정책보다는 경제성장을 주요 골자로 개정함
 - 광고세의 도입을 취소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함

- 직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스톡옵션이나 주식에 대하여 연봉의 10%까지 양도소득을 면제함
 - 토지세는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동결하고, 기타 미비한 규정을 대해 보완함
-
- **루마니아**는 국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배당 개인소득세, 소규모사업자의 세제 등을 개정함
 - 자국 내에 유럽연합국 이외의 국가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배당세율을 5%로 인하할 방침임
 -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3%의 단일 소득세율에서 고용직원의 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정부는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관개수(灌溉水)와 식수에 대하여도 9%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3%의 단일 소득세율에서 고용직원의 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 2015년 9월 22일 **이탈리아** 정부는 「성장과 국제화 촉진 법령」을 발표함
 - 「성장과 국제화 촉진 법령(Legislative Decree promoting growth and internationalization)」은 2014년 3월 채택된 세제개편 실행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법인의 성장과 국제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2015년 10월 25일 이탈리아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 2016 세법개정안(draft Stability Law)은 법인세를 인하, 유·무형자산 상각특례규정과 소득세 및 부가세 분야 개정세법 등을 포함함
-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10월 10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간소화방법 적용을 위해 자기평가를 적용하는 「공고 70」을 공개함
 - 이 공고는 외부납부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도 산정시 간소화방법 적용을 위한 현행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자기평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연간소득신고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이 공고는 공개일인 2015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됨
- 중국 재정부와 과세당국은 2015년 10월 30일 증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지 118」을 공개함
 - 이 통지는 증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기존에 면세가 적용되던 방송, 기술, 경영관리 등과 관련된 용역을 포함시킴
 - 이 통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 중국 재정부, 과세관청 및 과기부는 2015년 11월 2일 초과공제되는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통지 119」를 공개함
 - 이 통지는 현재 법인세법상 발생비용의 150% 공제 또는 자본화되는 경우 50%의 초과상각을 허용하는 적격연구개발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용과 배제되는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중국 재정부, 과세당국은 2015년 10월 26일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에 대한 세무처리를 명확히 하는 「통지 115」를 공개함
 - 이 통지는 재무부의 지침에 따른 회계상 보험부채의 인식액을 세무상으로 공제하도록 함
 - 기존에 인식한 부채와 재무부 지침에 따른 보험부채와의 차이금액은 향후 10년간 안분하여 소득에 포함시킴
- 인도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2015년 10월 19일 정상가격의 범위 및 다기간자료 이용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개정하는 공지를 공개함
 - 이 공지는 인도 재무장관이 2014 예산안에서 이전가격에 정상가격의 범위개념과 다기간자료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이 공지에 따른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4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기간 즉, 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인 2015년 11월 30일 신고시 적용됨
- 2015년 11월 6일 OECD는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의 최종 패키지를 발표함
 - OECD VAT 가이드라인은 국제거래에서

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이 최종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룸

1. 캐나다-2016년부터 유언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에 소득세 최고세율로 과세함

- 캐나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s)과 조부모의 생전신탁(grandfathered inter vivos trusts)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29%로 과세할 예정임¹⁾
 - 이 규정은 2014년 캐나다 예산안에서 제안했던 내용으로, 기존에 15~29%의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던 것에서 생전신탁(inter vivos trusts)과 동일하게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이는 동일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탁종류에 따라 조세부담액에 차이가 있고, 여러 개의 유언신탁을 만들어 과세부담을 낮추는 등 유언신탁을 남용하는 문제로 인해 개정된 것임
 - 단, 예외규정을 두어 다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함
 - 유언신탁자의 사망 이후 3년 동안 최고세율 과세 적용 유예
 - 신탁수익자가 장애인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또한, 기존 유언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에만 제공되던 과세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부 과세규정을 개정함
 - 기존 유언신탁 및 조부모 생전신탁에 한해 최저한세에 기본공제 40,000달러를 적용하는 규정을 폐지함
 - 유언신탁도 생전신탁과 동일하게 비거주자 수익자(designated beneficiary)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신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신탁에 과세됨²⁾
 - 유언신탁도 납부세액을 분기별로 분할 납부(instalment payment)하도록 개정함
 - 기존에는 유언신탁에 한해 과세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당해연도와 직전 2개년 동안의 납부세액이 각각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분납하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2. 미국-국세청 자문위원회의 '2015년 연차보고서' 발간

- 미국 국세청 자문위원회(IRS advisory council; IRSAC)는 2015년 11월 19일 국세행정 개선에 관한 제안내용을 담은 '201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함³⁾
 - 납세자 부정신고의 효율적 감시를 위한 방안, 납세편의 증대를 위한 정보 수시제공, 납세순응을

1) 캐나다 재무부, 「2014년 캐나다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4)」, 2014. 02. 11, pp. 329-330 및 캐나다 재무부, 「Consultation on Eliminating Graduated rate Taxation of Trusts and Certain Estates」, 2013.06.0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 "Canadian Master Tax Guide 2015," ¶ 7306

3) 미국국세청(<https://www.irs.gov/uac/Newsroom/IRSAC-Releases-Its-2015-Annual-Report>)



제고하기 위한 가산세제도 개편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국세청 자문위원회는 납세자 부정신고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근로소득신고서(Form 1040)’ 내용의 인증 강화 방안 및 고용주의 ‘종업원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W-2 form)’의 제출기한 변경을 제안함
 - 이는 허위소득을 신고하여 부정 세금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 따라서 고용주가 제공한 W-2 form의 내용과 개인이 작성하는 Form 1040의 내용을 비교하는 시스템 개발을 제안함
 - 현재 상황에서는 두 신고서상 기재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시스템이 없으며, 국세청은 전화·팩스를 통해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심되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W-2 form의 제출기한을 1월 31일로 앞당길 것을 제안함
 - 현재 고용주는 W-2 form을 종업원에게 1월 31일까지 지급하며, 국세청에 우편인 경우 2월 말, 전자제출인 경우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 W-2 form의 제출기한인 3월 이전에 종업원이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은 개인의 신고내용(form 1040)과 고용주의 급여지급내용(W-2 form)을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납세자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 제공 및 납부시스템 제공을 제안함

- 기존의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한 납세자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공지(notice)를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 수시제공
- 신규회사의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전자연방납세시스템(EFTPS)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⁴⁾

■ 또한, 납세순응(tax compliance) 강화라는 가산세제도 운영목적에 맞게 아래의 2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가산세제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기한 후 신고 또는 고의가 없는 과소신고의 경우 납세순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⁵⁾
 - 고의가 없는 경우(no-fault)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가산세부담을 경감
 -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automated process)를 재고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경감 신청 및 가산세 불복요청이 끝날 때까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할 것을 제안
 - 이전에 신고기한을 어긴 적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가산세 부과 안함
- 납세자가 신고의 오류발견 시 본인이 수정 후 신고(self-correction)할 동기를 부여해야 함
 - 현행 제도에서는 ‘CIC(Coordinated Industry Case) 프로그램⁶⁾에 참여하는 납세자에 한해,

4) 고용주의 종업원 소득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체의 의무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전자연방납세시스템을 통하는 경우 고용주가 직접 납세하거나, 서비스대행 업체의 의무 불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5) 해외소득 신고(Form 5471, 5472)의 경우, 기한 후 신고 및 납세자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음

6) CIC프로그램은 납세자가 총자산, 총수입액, 총 국외자산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 과소신고 이후 수정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주로 대규모 납세자가 CIC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혜택이 적용되는 납세자 범위가 한정적이며, CIC프로그램의 폐지 결정으로 기존의 가산세 혜택 또한 폐지될 예정임
 - 따라서, IRSAC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대체제도를 마련할 것과 혜택이 적용되는 납세자 범위의 확대를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3. 덴마크-2016년 예산안 통과

- 덴마크는 10월 6일부터 시작된 2015/16 의회기간 중 세법개정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당과 정부가 합의하였음을 11월 19일 발표함⁷⁾
 - 현 정부는 2015년 8월 총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 이루었으나⁸⁾ 소수정당으로 향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⁹⁾
- 당초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상당부분 수정되어 통과됨
 -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의 주요 골자는 세율인하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나 이번 개정에서 세율인하는 이루어지지 아니함¹⁰⁾
 - 이번 예산안은 환경보호정책보다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에 대한 세금(NOx tax)을 폐지하고 광고세(Advertising tax)의 도입을 취소함
- 질소산화물에 대한 세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종의 환경세로서 질소산화물의 배출 1kg당 25크로네에서 5크로네로 줄이는 것으로

7) 덴마크 재무부(<http://www.fm.dk/nyheder/pressemeddelelser/2015/11/afale-om-finanslov-2016>)

8) 덴마크의 2015년 총선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사회민주당에서 4년 만에 19.5%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 당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이 총리직을 수락하게 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단위: 표, %)

정당		득표 수	비율	정당		득표 수	비율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et)	924,940	26.3	보수 성향	덴마크 국민당(Dansk Folkeparti)	741,746	21.1
	적녹연합당(Enhedslisten)	274,463	7.8		자유당(Venstre)	685,188	19.5
	대안 정당(Alternativet)	168,788	4.8		자유연합당(Liberal Alliance)	265,129	7.5
	급진자유당(Radikale Venstre)	161,009	4.6		보수당(Det Konservative Folkeparti)	118,003	3.4
	사회국민당(Socialistisk Folkeparti)	147,578	4.2		기독교민주당(Kristendemokraterne)	29,077	0.8
확보 의석		89		확보 의석		90	

출처: 덴마크의 통계청 자료를 재정리함. <http://www.dst.dk/valg/valg1487635/valgpop/valgpopHL.htm>

9) Tax analysis, 2015.10.19., P.218를 재인용함

10) 주 덴마크 외교부 (http://dnk.mofa.go.kr/korean/eu/dnk/policy/econo/condition/index.jsp?sp=/webmodule/hi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2195%26seqno=1158284%26tableName=TYPE_LEGATION)



합의함¹¹⁾

- 광고세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전단지 형식의 광고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아니하였음
- 덴마크는 환경오염을 규제할 목적으로 자동차 구입에 따라 과세표준의 180%를 등록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함
 - 덴마크는 그동안 비영업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의 105~180%로 높은 등록세를 부과하였음
 - 이러한 높은 등록세에 대한 인하요구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개정에서 정부와 정당이 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함
- 다만, 전기자동차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고가의 전기자동차도 조세혜택의 대상이 되어 조세가 역진적이라는 여론으로 면제규정은 단계적 폐지함
 - 2007년 교토의정서 이후 유럽위원회는 환경문제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¹²⁾을 마련하였으며, 덴마크도 이러한 기조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일부 세제혜택을 제공하였음
 - 등록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가의 전기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세부담이 없고 저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는 높은 등록

세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가 역진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됨

- 등록세 면제는 2016년에 구입한 자동차부터 적용될 것이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기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음
 - 덴마크 수입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10만달러를 넘는 전기자동차인 테슬라는 2015년 1~3분기 동안 849대를 판매하였고 이는 동일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의 0.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혔¹³⁾

〈표 1〉 덴마크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폐지

구분	내용
2016년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등록	등록세의 20% 부과
2017년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등록	등록세의 40% 부과
2018년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등록	등록세의 65% 부과
2019년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등록	등록세의 90% 부과
2020년 구입한 전기자동차의 등록	등록세의 100% 부과

- 회사가 직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스톡옵션이나 주식에 대하여 과세를 일정부분 면제함
 - 회사가 직원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옵션이나 주식은 직원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함

11) "Aftale mellem regeringen, Dansk Folkeparti, Liberal Alliance og Det Konservative Folkeparti," P.14

(덴마크 재정부 <http://www.fm.dk/~media/files/nyheder/pressemeddelelser/2015/11/altale-om-finansloven-for-2016.ashx>)

12) EU는 2009년에 제정되고, 2011년 채택된 '2050 저탄소 경제를 위한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Low-carbon Economy in 2050)'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함(대외경제연구원,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시사점」, 2014.8.7., P.9을 인용)

13) Tax analysis, 2015.10.19., P.219를 재인용함

- 면제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급여 대신 투자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며 회사는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되지 않음
- 토지세의 동결과 그 외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정이 이번 개정에서 함께 이루어짐
 -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토지세는 최고 세율에서 6.6%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동결로 처리되어 명목세율은 2015-2016과 동일함
 - 덴마크는 OECD의 BEPS 권고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간 신고 등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이 개정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하였음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하여 국내 · 외 법인에 대한 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규정이 개정됨
 - 덴마크는 국내 · 외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자국의 배당거래와 달리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EU의 '설립의 자유'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지적임
- 2016년 1월 1일부터 톤세의 대상을 굴착장비(rigs)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하기로 함
 - 톤세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산출함
 - 따라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납세자는 세부담의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예

측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일종의 혜택임¹⁴⁾

- 덴마크는 2002년에 도입한 톤세에 대한 선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양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C의 승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4. 루마니아-국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

- 10월 27일 루마니아 정부는 국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하, 소규모사업자의 세제 등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함¹⁵⁾
 - 이번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긴급 법령(Emergency Ordinance)으로 이루어짐
 - 지난 8월 16일 의회는 2015-2020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음
 - 루마니아의 2015-2020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략은 자본화, 성과 위주의 공공정책 방향의 수립, 산업발전의 전 · 후방효과 등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힘¹⁶⁾
 - 이를 위해서는 기업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규제환경을 완화하고 감세정책을 시행할 예정
- 정부는 당초 개정된 부가가치 세율인하 대상에 농업 관개수(灌溉水)와 식수에 대하여도 9%의 낮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14) 기획재정부 (http://www.most.go.kr/_bbs/rss.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3&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dnPage=395&&actionType=view&runno=55395&hdnTopicDate=2005-06-10)를 재인용

15) 루마니아 정부 (<http://gov.ro/en/government/cabinet-meeting/fiscal-measures-to-encourage-investment-and-create-new-jobs>)

16) <http://gov.ro/en/news/national-strategy-for-competitiveness-2015-2020-adopted-by-government&page=3>



- 당초 2월 개정안 발표시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2016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24%에서 20%로, 2017년부터는 19%로 인하하고 케이터링, 식당 서비스, 음식 배달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무알코올음료와 식품은 이미 6월 1일부터 9%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이번 인하 대상의 확대조치는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에 가장 필요한 관개수와 식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함
- 루마니아는 유럽연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자국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배당세율을 5%로 인하할 방침임
 - 당초 감세에 대한 개정안의 효력 발생은 2017년 1월로 예정하였으나, 시행시기를 앞당겨 201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임
- 배당세율 인하조치로 조세조약상 배당 한계세율이 이보다 높았던 국가들로부터 자본의 유입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¹⁷⁾
 -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으로 규정한 한계세율이 개정된 배당세율보다 높은 국가들의 예는 다음과 같음
 - 미국과 루마니아는 배당에 대한 적용세율의 한도를 10%로 규정함
 -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총배당액의 7%를 적용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10%를 적용함

- 영세기업(microenterprise)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3%의 단일 소득세율에서 고용 직원의 수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영세기업은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이 65,000유로인 기업으로 규정하였으나 이 기준을 10만유로로 확대적용하기로 변경함
 - 이번 조치는 고용 촉진과 더불어 직원의 유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신설되었으며 영세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2〉 루마니아의 영세기업에 적용되는 개정 세율

구분	세율	
현행	영세기업	3%
	2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	1%
개정	1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	2%
	직원이 없는 기업	3%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7) Tax analysis, 2015.11.02., P.411

5. 이탈리아-2015년 9월 22일 이탈리아 정부는 「성장과 국제화 촉진 법령」을 발표함¹⁸⁾

- 「성장과 국제화 촉진 법령(Legislative Decree promoting growth and internationalization)」은 2014년 3월 채택된 세제개편 실행의 일환으로 이탈리아 법인의 성장과 국제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2015사업연도부터 이탈리아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고시된 지역(blacklisted jurisdictions)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액 과세됨
 - 이탈리아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규정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해당 자회사의 소재지가 저세율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기 수입배당금 전액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2015사업연도부터 조세피난처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이나 법인과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은 거래가격의 사업 합리성과 거래의 실질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의 시가에 한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됨
- 2015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대상 회사의 범위가 이탈리아 내국법인 외에 EU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에 소

재하는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으로 확대됨

- EEA의 경우 해당 국가가 이탈리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연결납세를 신청할 수 있음
- 2016사업연도부터 기존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손익 귀속에 대한 규정(force of attraction)을 폐지하고 2008년 OECD가 개발한 고정사업장의 손익귀속계산 접근법(authorised OECD approach)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위험부담 분석을 통해 고정사업장 귀속손익을 계산하는 접근법을 채택함
- CFC규정 적용대상 해외 피지배회사의 정의, 면책 규정(safe harbor rule)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신청제도 폐지 등 2015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CFC규정을 정비함
 - 이탈리아 거주자의 해외피지배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직간접으로 20% 이상의 지분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10%)의 경우에는 CFC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탈리아 거주자가 해외법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해외피지배법인의 소재지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저세율 국가인 경우 해외 피지배법인의 유보소득을 이탈리아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 CFC규정의 면책규정 적용을 위한 기존 사전승인 제도는 폐지되나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 면책규정

18) Italy—Legislative Decree promoting growth and internationalization—details on amendments to corporate taxation—part 1 (23 Oct. 2015), News IBFD;
 Italy—Legislative Decree promoting growth and internationalization—details on amendments to corporate taxation—part 2 (23 Oct. 2015), News IBFD;
 PwC, International Tax News, November 2015.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2016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계산 시 허용되는 접대비 공제한도액이 인상됨
 - 1천만유로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현행 1.3%)
 -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6%(현행 0.5%)
 - 5천만유로 초과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4%(현행 0.1%)
- 2015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는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 및 소급공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개정된 규정에서는 관련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기술함
 - 해외고정사업장 또는 연결재무제표 대상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한해 적용하던 소급 또는 이월공제(최대 8년) 대상 외국납부세액 범위를 법인세 신고 전 납세의무가 발생한 모든 외국납부세액으로 확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6. 이탈리아-2015년 10월 25일 이탈리아 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¹⁹⁾

- 2015년 10월 15일 이탈리아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에서 법인세율 인하, 유·무형자산 상각 특례규정과 소득세 및 부가세 분야 개정세법 등을 포함하는 2016 세법개정안(draft Stability Law)을 승인함
- 경제성장 촉진과 법인의 투자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법인의 유·무형자산에 대한 특별가속상각제도와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도입함
 - 현행 27.5%의 법인세율을 2016사업연도에는 24.5%로, 2017사업연도에는 24%까지 인하함
 -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유형자산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상각할 수 있는 특례상각제도를 도입함
 - 합병 및 분할 등을 통해 증액된 영업권 및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가속상각할 수 있도록 함
 - 2016년 9월 30일까지 법인과 파트너십 소유의 부동산 또는 등기된 유형자산을 주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양도세율인 31.4% 대신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19) Italy-Draft Stability Law for 2016-presented to parliament (27 Oct. 2015), News IBFD.

EY Global Tax Alert(<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Italian-Parliament-considers-draft-budget-law-for-2016>)

- 소득세 분야에서는 납세간소화제도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고, 부가세 분야에서는 현행 부가세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적격 근로자와 연금수급자를 납세간소화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함
 - 사전 예고되었던 부가세 인상 계획은 보류하고 현행 부가세 표준 및 경감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2015년 개정세법에서는 현행 22% 및 10%의 부가세 표준 및 경감세율을 2016년부터 24%와 12%로 각각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7. 중국-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간소화방법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폐지

- 중국 과세당국(國家稅務總局)은 2015년 10월 10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간소화방법 적용을 위한 현행 사전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자기평가를 적용하는 「공고 70」을 공개함²⁰⁾
 - 이 공고는 외부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간소화방법 적용을 위해 사전승인 절차를 요구한 현행 공고 125의 제10조를 폐지하고, 자기평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연간소득신고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간소화방법이란 외국납부세액 한도 산정시 정확한 산정을 하지 않고 외국 소득의 12.5% 또는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의 국가와 같이 중

국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외국소득에 중국법인세율을 반영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는 것임²¹⁾

- 이 공고는 공개일인 2015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됨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8. 중국-영세를 적용대상 수출용역을 확대

- 중국 재정부와 과세당국은 2015년 10월 30일 증치세 영세를 적용대상 수출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통지 118」을 공개함²²⁾
 - 이 통지는 증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방송, 기술, 경영관리 등과 관련된 용역을 포함시킴
 -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등의 제작 및 배급
 -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공정, 검사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용역
 - 역외의 경영외주, 경영개선관리 등의 용역
 - 기존에 이러한 용역은 면세가 적용되던 것들로 영세를 적용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²³⁾
 - 이 통지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20) 国家税务总局, 「关于企业境外所得适用简易征收和饶让抵免的核准事项取消后有关后续管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70号, 2015年10月10日.

21) S. (Shiqi) Ma, China (People's Rep.)—Corporate Taxation sec. 6., Country Surveys IBFD.

22) 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影视等出口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政策的通知」, 财税[2015]118号, 2015年10月30日.

23) China (People's Rep.)—More export services zero-rated (03 Nov. 2015), News IBFD.



9. 중국-초과공제되는 연구개발항목의 세부규정 공개

- 중국 재정부, 과세관청 및 과기부는 2015년 11월 2일 초과공제되는 연구개발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통지 119」를 공개함²⁴⁾
 - 이 통지는 현재 법인세법상 발생비용의 150% 공제 또는 자본화되는 경우 50%의 초과상각을 허용하는 적격연구개발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용과 배제되는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기술 등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적격비용으로 보아 초과공제를 허용함
 - 이러한 연구개발에는 신기술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 제품 및 용역 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함²⁵⁾
 - 연구개발과 관련한 적격비용은 내·외부 인건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간접비를 포함함
 - 연구개발과 관련한 내·외부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직접비
 - 연구개발을 위해 이용된 시설·설비 등의 감가상각액과 무형자산 상각액
 -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률·규제·임상실험 등의 비용
 - 이외의 간접비용

-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적격비용에서 배제함

- 제품의 일상적인 향상, 기술적 또는 시장 탐색,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술지원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적격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담배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초과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담배제조, 숙박 및 음식제공,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업, 유흥업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초과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0. 중국-보험부채에 대한 세무처리 지침 공개

- 중국 재정부, 과세당국은 2015년 10월 26일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에 대한 세무처리를 명확히 하는 「통지 115」를 공개함²⁶⁾
 - 이 통지는 재무부의 지침에 따른 회계상 보험부채의 인식액을 세무상으로 공제하도록 함
 - 보험부채의 구성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책임준비금, 장기건강보험, 지급준비금, 확정보험지급금으로 구성됨
 - 기존에 인식한 부채와 재무부 지침에 따른 보험부채와의 차이금액은 향후 10년간 안분하여 소득에 포함시킴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24) 财政部·国家税务总局·科技部, 「关于完善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 2015年11月2日.

25) Ernst & Young, China Tax & Investment Express, China Tax Center Issue No. 2015044, 13 Nov 2015, pp. 1~2.

26) 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保险企业计提准备金有关税收处理问题的通知」, 财税[2015]115号, 2015年10月26日.

11. 인도-정상가격의 범위 및 다기간자료 이용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 개정

- 인도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2015년 10월 19일 정상가격의 범위 및 다기간자료 이용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개정하는 공지를 공개함²⁷⁾
 - 이 공지는 인도 재무장관이 2014 예산안에서 이전가격에 정상가격의 범위개념과 다기간자료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²⁸⁾
 -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²⁹⁾ 2014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기간 즉, 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인 2015년 11월 30일의 신고시 적용됨³⁰⁾
- 정상가격의 결정을 위한 비교가능성 분석시 독립된 당사자가격은 당해기간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당해기간의 자료가 이용 불가능하다면 직전년도 자료를 이용하도록 함
 - 다만 신고시 당해기간의 자료가 이용 불가능하다라도 사후 세무조사시 당해기간 자료가 이용 가능해지면 당해기간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정상가격을 범위로 산정될 경우에 대한 적용순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 정상가격이 다수로 식별되는 경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함
-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해 당해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2년간의 자료를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당해기간 자료가 없는 경우 이전 2년간의 자료만도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당해기간에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는 경우 이전 2년간 비교가능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비교가능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비교가능대상은 최소 6개 이상이어야 하며, 오름차순에서 35분위와 65분위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설정함
- 다만 이익분할법 등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범위로 산정할 수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12. OECD-2015년 11월 6일 OECD는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의 최종 패키지를 발표함³¹⁾

- 2015년 11월 개최된 OECD Global Forum on VAT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 대표들이 국제거래에서의 부가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OECD

27) Government Of India · Ministry Of Finance · Department Of Revenue, Notification No. 83/2015 [F.No.142/25/2015-TPL], the 19th October, 2015.

28) Ernst & Young, “India publishes draft rules for public comment regarding arm’s length pricing computation for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or specified domestic transaction,” *Global Tax Alert*, 28 May 2015, p.1.

29) Government Of India · Ministry Of Finance · Department Of Revenue, op. cit., Article, 1(2).

30) Ernst & Young, “India finalizes transfer pricing rules on use of arm’s length range and multiple year data,” *International Tax Alert*, 27 October 2015, p.2.

31) <http://www.oecd.org/ctp/consumption/international-vat-gst-guidelines.pdf>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이하 「OECD 부가세 가이드라인」)을 지지함

- OECD 부가세 가이드라인은 국제거래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원칙과 부가세 징수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룸
 - 동 부가세 가이드라인은 부가세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개별 국가들의 관련 세법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루지 않음
-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부가세 체계의 상호작용이 급증하면서, 국제거래에 있어 부가세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해결방안을 강구함
- OECD는 1998년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채택을 시작으로 “Consumption Tax Guidance Series”를 거쳐 OECD 부가세 가이드라인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됨
 - OECD 부가세 가이드라인은 일관성이 결여된 국제 부가세 과세체제로 인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의 위험과 불확실성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가장 일반적 형태의 국제 용역 및 무형자산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부가세 과세원칙을 제시함
- 국제거래에서의 부가세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소비지과세 원칙(destination principle), 중립성, 효율성, 확실성과 단순성, 효과성과 공정성, 그리고 유연성을 제시함
- 소비지과세 원칙: 소비자의 최종소비를 과세대상 거래로 하는 부가세 측면에서 원산지과세 원칙(origin principle)이 아닌 소비지과세 원칙이 이

론과 실무 측면에서 보다 적합함

- 중립성: 비즈니스 관련 의사결정은 세무상 고려사항보다는 경제적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비교가능한 상황의 유사한 거래는 유사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야 함
 - 조세 중립성과 조세 공정성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간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전통거래 간에 이루어져야 함
- 효율성: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함
- 확실성과 단순성: 부가세규정은 명확하고 단순하여 납세자가 거래에 앞서 부가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함
- 효과성과 공정성: 부가세 과세는 적절한 때에 정확한 금액으로 징수되어, 조세포탈이나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유연성: 부가세 과세체계는 유연하여 비즈니스의 기술과 상업적 발전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이사회, 2016년 EU 예산에 대한 입장 채택 (2015.9.4.)¹⁾
 - (방향) 과거 집행률을 고려하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년도 재정체계(MFF)의 한도하에서 충분한 여유를 둠
 - (규모) 2016년 EU 예산안은 commitments 기준²⁾ 1,532.7억유로, payments 기준³⁾ 1,421.2억유로
 -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⁴⁾ 대비 commitment 기준 5억 6,360억유로, payments 기준 14억유로 감소한 수준
 - 2015년 예산 대비 commitments 기준 5.36%, payments 기준 0.59% 감소한 수준
 - (내용) 2016년 예산안에는 경제성장, 고용 창출, 난민 문제 관리 등의 조치가 포함됨
 - 대외 정책 부문(+22.5%), 난민 등 안보 및 시민권 관련 부문(+15.4%),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등(+8.6%)에서 2015년 예산 대비 금액 증가

〈표 1〉 2016년 EU 예산안(이사회 채택안 기준)

(단위: 십억유로)

	Commitments	Payments
1. 스마트, 포용적 성장	69.6	65.9
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18.8	17.1
b) 경제 · 사회 · 지역적 통합	50.8	48.8
2. 지속가능한 성장-천연 자원	62.9	55.6
- 시장관련 지출 및 직접 원조	42.7	42.7
3. 안보 및 시민권	2.6	2.2
4. Global Europe(신통상정책)	8.7	9.1
5. 행정기관 지출	8.9	8.9
6. 특수 기관	0.5	0.4
합계 (EU 28개국 GNI 대비 비율)	153.3 (1.04%)	142.1 (0.97%)

출처: EU 이사회, EU budget 2016: Council ready to negotiate with EP, 2015.

- EU 집행위원회, 난민 문제 지원 방안 발표(2015.9.9.)⁵⁾
 - 난민 분산 수용(relocation)⁶⁾을 통해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난민 관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수용 규모) 향후 2년간 이탈리아(15,600명), 그리스(50,400명), 헝가리(50,400명)로부터 12만명의 난민⁷⁾을 다른 회원국으로 분산 수용
 - ↳ 5월 발표된 분산 수용 계획 인원 4만명(그리스 16,000명, 이탈리아 24,000명)과 함께 총 16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게 됨
- * 국가별 수용 규모는 인구 규모(40%), GDP(40%), 과

1)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9/04-eu-budget-2016/>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5/07/09-eu-budget-2016/>
 2) 승인된 EU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budgetary commitment)를 위해 주어진 기간 동안 유보 · 배분된 금액
 3) budgetary commitment에서 기인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금액
 4)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016년 EU 예산안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5년 상반기 재정동향』 참고
 5)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596_en.htm
 6) relocation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특정 EU 국가에서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
 7) EU 평균 난민인정률 75% 이상의 국적(시리아, 이라크, 에리트레아)을 가진 난민에 적용



- 거 4년 평균 망명 신청자 수(10%), 실업률(10%)을 고려하여 결정
- (임시 연대 조항) 자연재해 등 정당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GDP의 0.002% 수준의 분담금을 EU 예산에 납입
- (지원 금액) 총 7억 8천만유로의 EU 예산 지원
 - ☞ 난민수용 국가에는 난민 1인당 6천유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에는 난민 이동 비용

- 인당 500유로를 지원
- (향후 절차) 9월 14일 긴급 내무장관회의에서 논의 후 관련 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며 분산 수용 계획은 향후 이사회의 채택이 필요
- 이밖에도 상설 난민 분산 수용 체계, 송환 정책 효율화, 아프리카 긴급 구호 기금 조성 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

〈표 2〉 국가별 난민 분산 수용 규모

(단위: 명)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합계
오 스 트 리 아	473	1,529	1,638	3,640
벨 기 에	593	1,917	2,054	4,564
불 가 리 아	208	672	720	1,600
크 로 아 티 아	138	447	479	1,064
키 프 로 스	36	115	123	274
체 코	387	1,251	1,340	2,978
에 스 토 니 아	48	157	168	373
핀 란 드	312	1,007	1,079	2,398
프 랑 스	3,124	10,093	10,814	24,031
독 일	4,088	13,206	14,149	31,443
라 트 비 아	68	221	237	526
리 투 아 니 아	101	328	351	780
룩 섴 부 르 크	57	185	198	440
몰 타	17	56	60	133
네 덜 란 드	938	3030	3246	7,214
폴 란 드	1,207	3901	4179	9,287
포 르 투 갈	400	1291	1383	3,074
루 마 니 아	604	1951	2091	4,646
슬 로 바 키 아	195	631	676	1,502
슬 로 베 니 아	82	265	284	631
스 페 인	1,941	6271	6719	14,931
스 웨 덴	581	1877	2011	4,469
합계	15,600	50,400	54,000	120,000

출처: EU 집행위원회, Refugee Crisis: European Commission takes decisive action, 2015.

- EU 이사회, 회원국의 장기실업자 구직 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출(2015.9.17.)⁸⁾
 - (배경) EU의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4년 EU의 장기실업자* 규모는 2007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200만명으로 추정됨
 - * 12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를 장기실업자로 정의
 - (내용) 1년 이상 실업상태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 및 구직 지원 통합 협약(job integration agreement)*을 제공하고 실업 지속기간 18개월 이전까지 구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맞춤형 계획을 제공
 - 장기 실업자의 고용 서비스기관 등록 장려
 - 구직자의 요구와 잠재력을 식별하기 위해 장기 실업자(실업 기간 18개월 이하)들에게 개별 심층 평가 제공
 - 등록된 장기실업자(실업 기간 18개월 이하)들에게 구직 지원 통합 협약을 제공
 - * job integration agreement: 실업자의 구직 지원을 위한 계획을 제공하는 단일 기관과 실업자 간의 서면 협약으로 상호 간 권리와 책임을 명시함. 구직자의 요구에 맞게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을 위한 맞춤형 계획들로 구성⁹⁾
 - (지원) 회원국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의 지원을 받아 위와 같은 권고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음
 - (향후 절차) 이사회의 논의 · 채택을 거쳐 회원국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시행될 예정
 - 또한 회원국의 권고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위원회에서 평가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합의할 예정
- EU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난민 문제 해결 방안 논의(2015.9.23.)¹⁰⁾
 - (우선순위 발표) 용커 위원장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 6개월 이내에 실행해야 할 우선순위 조치를 발표
 - (운영 조치) 분산수용 계획 및 이민 관리 지원 팀 운영, EU 시민보호메커니즘(EU Civil Protection Mechanism: CPM)¹¹⁾ 또는 긴급 국경통제지원팀(Rapid border intervention teams) 작동, 외교적 공세 및 공조 강화 등
 - (예산 지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긴급 기금 지원(1억유로), 난민 관련 EU 기관 지원(6억유로), 식량 구호 지원(2억유로), 인도주의적 지원(3억유로), 터키, 세르비아 등 인근 국가 지원 등
 - (EU 법률 시행) 망명 관련 절차, 자격 등을 포함한 법률 개정 및 시행
 - (기타) EU 국경 강화시스템 강화, 정착 시스템, 효율적인 송환 정책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
 - (합의 사항)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에 합의하고 난민 관련 장기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등을 논의
 -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의 시리아 난민 관리 지원, UN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와

8) 출처: EU 이사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565_en.htm

9)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거, 교통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멘토링, 구직 지원, 교육 · 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한 단일 접점을 통해 제공됨

10)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15/09/23/>

11)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시 참여 국가들의 협력 및 지원 제공



UN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에 최소 10억유로의 추가 기금 조달

- 터키와 대화·협력 강화, 서발칸지역의 난민 유입 관리 지원, 아프리카의 불법 이민에 대한 근본적 원인 관리를 위한 기금 확대, EU 국경 지역 사태 관리·통제 등

■ EU 집행위원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발표(2015.9.30.)¹²⁾

-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및 2016년 EU 예산에서 17억유로를 지원할 예정
 - (지원내용) 난민 문제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에 대한 긴급 지원, 관련 EU 기관 직원 증대, 제3국가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등
 - (규모) 2015년*에 8억 130만유로, 2016년**에 9억유로 규모

* 망명·이주·통합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MIF), 내부안보기금(Internal Security Fund: ISF) 강화(1억유로), FRONTEX,¹³⁾ EASO,¹⁴⁾ Europol 등 관련 EU 기관 직원 증대(130만유로), 시리아 지원을 위한 각종 구호기금 조성(5억유로), UN난민기구, UN식량계획 등 지원(2억유로) 등

** 망명·이주·통합기금, 내부안보기금, 관련 기관 직원 증대(6억유로), 인도주의적 지원(3억유로)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IMF

■ IMF, 키프로스 경제조정프로그램¹⁵⁾ 8차 검토 결과 발표 및 1억 2,600만유로 분할금 지급 승인(2015.9.23.)¹⁶⁾

- (평가) 경제조정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채무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015년 상반기 경제활동과 재정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으며, 주요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문제와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문제가 개선됨
- (정책제언)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
 -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금융권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
 - ☞ 은행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 과정이 중요
 - ☞ 재무 당국은 특히 그리스 소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
 - 경기진작을 위해 공공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
- (지원내용) 검토결과 키프로스는 1억 2,600만유로(9,900만SDR)의 분할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총누적지원금은 8억 8,200만유로(6억 9,300만SDR)

12)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729_en.htm

13) 유럽연합 국경관리청

14) 유럽난민지원사무소(The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15) 2013년 3월, 트로이카는 키프로스에 2016년까지 100억유로(ESM 90억유로, IMF 1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3/pr13175.htm>

16) IMF: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433.htm>

- EU 재무장관회의 개최, 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 자본시장동맹 등 논의(2015.10.6.)¹⁷⁾
 - (과세 투명성 제고) 법인세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방침 정보의 국가 간 자동 사전 공유 지침 등에 합의
 - (자본시장동맹) 2019년까지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 간 투자 장벽 제거, 중소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 개편 등
- * 지난 9월, EU 집행위원회는 '자본시장동맹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개선,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 시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참고>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s union)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2015.9.30.)¹⁸⁾

- (배경) EU의 성장, 고용, 투자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동맹 추진은 '투자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목표) 자본시장동맹은 은행 중심의 EU 자금 조달 구조를 보완하고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 창출, 실물 경제와 자금의 연계,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 제고, 금융 통합 및 경쟁 강화 등

이점을 제공

- (주요 내용) 우선 단기 계획으로 건전한 자산 유동화 체계, 인프라 프로젝트 재원 조달 개선, 관련 제도 추가 논의 등 발표
 - (자산유동화 관련) 투명하고 표준화된 자산 유동화(securitisation) 체계 구축
 -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 개선) solvency II¹⁹⁾ 규정 조정을 통해 보험사들이 유럽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추가 논의) 범유럽 커버드 본드(covered bond)²⁰⁾ 체계 구축, 벤처 캐피탈, 금융서비스 개혁의 누적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추가 협의 추진
 - 이밖에도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 투자 제고, 국가 간 투자 장벽 제거 등을 위한 장기 계획도 발표

- EU 집행위원회, 2015 연금 적정성²¹⁾ 보고서(Pension Adequacy Report)²²⁾ 발표(2015.10.5.)²³⁾
 - (최근 EU 노년층의 생활 수준) 현재 연금은 대부분의 EU 노령 인구에게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와 적절한 소득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

17)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15/10/06/>

18)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731_en.htm

19) 유럽 단일 보험감독체계

20)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

21) 연금 적정성은 주로 빈곤 예방 정도, 은퇴 이전 소득의 대체 정도, 젊은 연령 그룹과 동등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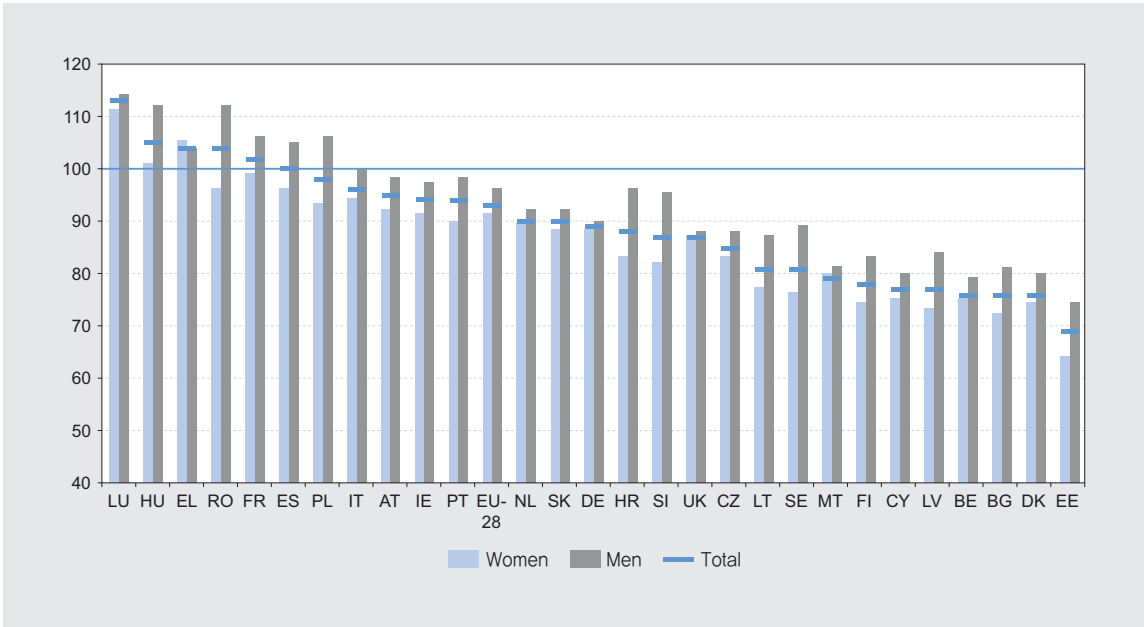
22) EU의 2015 연금 적정성 보고서는 2015년 Ageing Report를 보완하여 연금 소득의 적정성, 빈곤 예방, 적정 생활수준 제공 정도 등을 추정하고 과거 연금 개혁의 성과와 향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평가함. 2012년 처음 발표된 이후 3년 만에 발표됨

23) 출처: EU 집행위원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5769_en.htm



[그림 1] 65세 미만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중위 소득 비율(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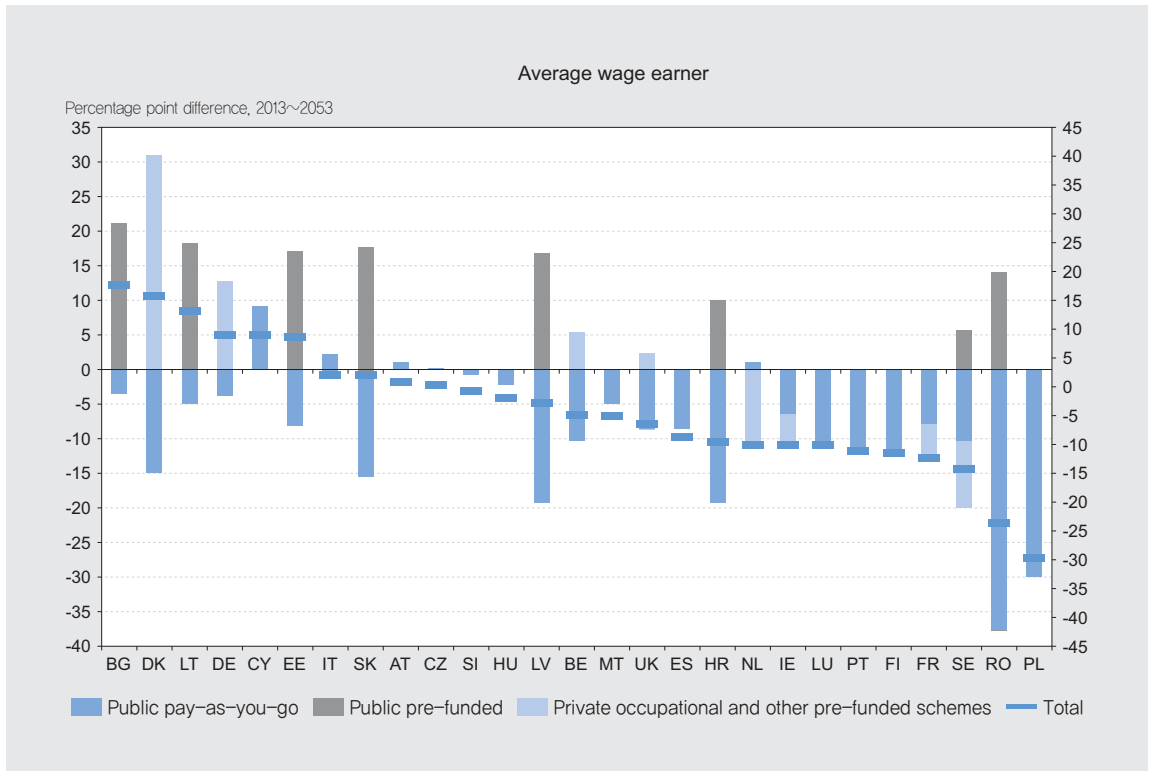
출처: European Commission, The 2015 Adequacy Report: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2015.

- (소득) 전체 EU의 65세 이상 인구 중위 가처분 소득은 65세 미만의 약 93% 수준으로 EU의 노령 인구들은 젊은 세대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음
- (빈곤 위험) 65세 미만의 경우 16%가 빈곤 위험에 있는 반면 65세 이상은 14%가 빈곤 위험에 있음(2012년 기준)
 - ☞ 금융위기 동안 65세 미만의 빈곤 위험 인구 비중은 16%에서 17%로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은 17.8%에서 13.8%로 감소해 금융위기 시 노령층이 다른 연령 그룹보다 더 나은 보장을 받았다고 평가
 - ☞ 다만 일부 회원국의 경우 여전히 노년층의 빈곤 위험 관리와 소득 보장에 대한 노력을

-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성별 격차)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고 근로 기간이 짧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어 성별 격차가 지속됨
 - ☞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이 길고 남성의 40% 수준의 연금을 수령
 - ☞ 연금의 성별 격차는 줄어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
- (미래의 연금 변화) 개혁으로 인한 연금 수령 인구 감소는 2013~2060년 동안 연금 지출을 2.6%p 줄일 전망이며 낮아진 수급액(benefit)은 미래 세대 노인인구의 소득 적정성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2] 2013년과 2053년의 소득대체율 차이

(단위: %p)



주: 소득대체율 차이가 양수이면 2013년에 비해 2053년의 소득대체율이 높음을 의미, 성별 격차가 있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를 나타냄
출처: European Commission, The 2015 Adequacy Report: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2015.

-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6개 국가에서 5%p 이상, 6개 국가에서 15%p 이상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감소할 전망
 - ☞ 소득대체율 감소는 새로운 연금 적립방식으로 인한 혜택 증가로 일부 상쇄되기도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은퇴 이후 미래 소득 유지를 위해 직업 연금, 개인 연금 등 민간 부문에 점차 의존하게 됨
- 연금 수급 연령 상승에 맞춘 퇴직 연령 연장이 소득대체율 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에 대한 회원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사회적 파트너가 중요해질 수 있음
- (시사점) EU 회원국에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 법정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미래 세대의 은퇴자들에게 적절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더 많은 노인 인구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도록 하는 노동정책이 제공될 필요
 - ☞ 대부분 조기 퇴직은 건강, 실업, 육아 등의



이유로 발생하므로 건강, 고용 자격을 위한 사회적 지원, 요구되는 기술 제공 등이 중요함

- 연금시스템 또한 노동시장에 남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연금수급권을 구축해야 함

■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5 발표 (2015.10.6.)²⁴⁾

- (동향)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신흥국의 경제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1%로 하향 조정
 -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적 저조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임
 - (유로) 4월 WEO 전망과 대체로 일치하며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
 - (일본) 경기가 1분기 반등하였으나 소비와 순수출은 상반기에 감소
- (전망) 세계경제는 2016년 3.6%로 성장하며, 2016년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는 둔화되나 신흥국의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세계경제성장률이 증가할 전망
- (위험요인) 저유가에 따른 내수증대 가능성이 경제성장의 상방위험으로 작용하긴 하나, 하방위험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
 - (선진국) 그리스 사태가 유로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 소비 위축과 저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의 하방 위험 요인이 잔존
 - (신흥국)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으로 인한 저성

장, 원자재시장 재균형 지연, 기업의 위험노출액(Exposure; 부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 증가, 자산가격 급변에 따른 자본흐름 변동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

- (정책제언) 실제 및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책우선과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마다 필요한 정책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구조개혁에 역점을 둘 필요
 - (선진국) 확장적 통화 정책을 유지, 재무상태와 신용공급 경로를 강화, 국제 불균형 개선과 수요중심의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
 - (신흥국) 달러 강세에 따른 재무악화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성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

²⁴⁾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2/index.htm>
 보고서 원문: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2/pdf/text.pdf>

〈표 3〉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rojections			Difference from July 2015 WEO Update		Difference from April 2015 WEO	
	2014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World Output ¹⁾	3.4	3.1	3.6	-0.2	-0.2	-0.4	-0.2
Advanced Economies	1.8	2	2.2	-0.1	-0.2	-0.4	-0.2
United States	2.4	2.6	2.8	0.1	-0.2	-0.5	-0.3
Euro Area	0.9	1.5	1.6	0	-0.1	0	0
Japan	-0.1	0.6	1	-0.2	-0.2	-0.4	-0.2
Korea	3.3	2.7	3.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²⁾	4.6	4	4.5	-0.2	-0.2	-0.3	-0.2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3.3	3.2	4.1	-0.9	-0.3	-0.5	-0.6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 ³⁾	-7.5	-46.4	-2.4	-7.6	-11.5	-6.8	-15.3
Nonfuel	-4.0	-16.9	-5.1	-1.3	-3.4	-2.8	-4.1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1.4	0.3	1.2	0.3	0	-0.1	-0.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²⁾	5.1	5.6	5.1	0.1	0.3	0.2	0.3

주: 1) G7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와 유로지역 국가는 제외

2)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이며, GDP는 2011~12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GDP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1.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4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96.25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5년 51.62달러, 2016년 50.36달러

2.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약 90%를 설명하며, 신흥국 경제의 약 80%를 설명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5, table 1.1.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국가는 경제 규모에 근거하여 정렬되었으며 집계된 분기 자료는 계절 조정됨. 리투아니아는 WEO April 2015에서 유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유로지역에 포함

■ Fiscal Monitor, October 2015 발표(2015.10.7.)²⁵⁾

- (원자재 가격변동의 영향)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Commodity Price) 변동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1980년대 원자재가격 하락 시기 동안, 이란, 리비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하락하였으며 공공지출이 3분의 1 이상 감소

- 원자재가격 충격은 장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가격하락뿐 아니라 상승 또한 정부수입과 지출, 수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25) 출처: <ht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5/02/fm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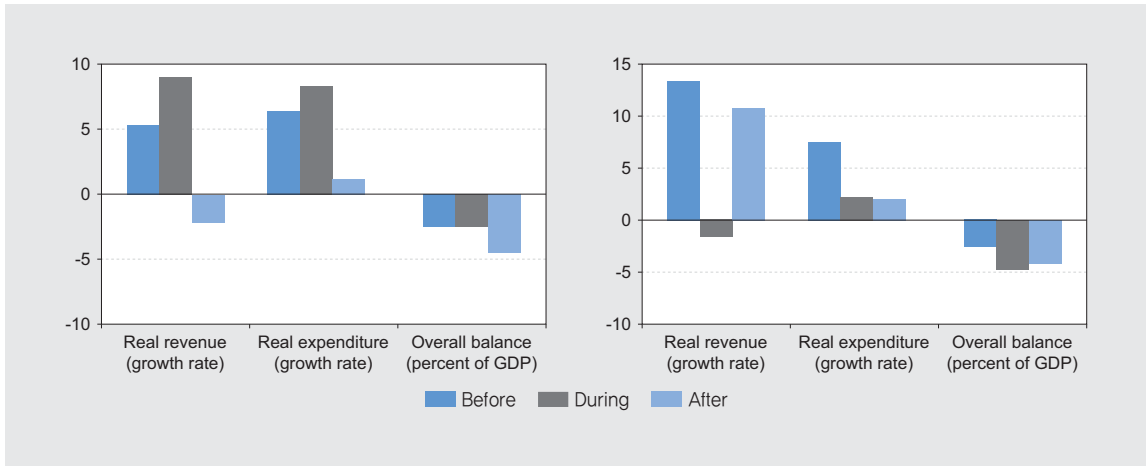
보고서 원문: <http://www.imf.org/external/pubs/ft/fm/2015/02/pdf/fm1502.pdf>



[그림 3] 1973-80년 호황기

[그림 4] 1982-88년 침체기

(단위: %)



출처: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5, Figure 1.5.

- (기존정책 평가) 자원부국의 재정정책이 경기충격에 대응하는 안정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특히 공공지출이 경기순응적(pro-cyclical) 특성을 보인 경우,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가격충격의 효과를 가중시킴
 - 호황기인 2000~08년 원자재수출국은 증가한 재정수입 중 상당부분을 공공투자로 지출하였지만, 경제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된 경우는 일부에 불과
- (정책제언)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정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노력

- 4가지 우선순위를 고려(적절한 저축 수준 설정, 제도적 기반 강화, 효과적인 지출정책, 효율적 조세정책으로 수입변동성 축소)한 재정 프레임워크 마련
- 원자재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반영된 재정지표가 필요하며, 재정지표 선택시 각 국가가 직면한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중기재정계획, 재정위험관리 개선, 정책 투명성 강화 등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IMF·WB 연차총회²⁶⁾(2015.10.9~11)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32회 회의 개최 및 공동성명서 발표(2015.10.9.)²⁷⁾
 - (경제전망)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세

26) 연차총회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총회(plenary session),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개발위원회(DC) 회의, 세미나 등으로 구성됨.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f.org/external/about/govstruct.htm> 참고.
 27) IMF: <http://www.imf.org/external/np/cm/2015/100915.htm>

가 완만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며, 중기 성장전망 또한 약화

- (선진국) 원자재가격 하락, 확장적 통화정책, 금융안정화로 인해 경기가 점차 회복되나, 근본적인 생산성 성장(underlying productivity growth)은 여전히 미약
- (신흥국) 원자재가격과 글로벌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위험) 불확실성과 금융변동성이 심화
 - (선진국) 시장 변동성 증대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악화, 글로벌 수요가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 여전히 높은 채무 수준
 - (신흥국) 자본유입 둔화, 환율 압력(currency pressure)으로 외화채무 부담 증가, 원자재 수출국의 성장둔화
- (정책제언) 단기 및 잠재 성장률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률 감소, 금융안정성 관리, 무역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 (성장지원) 선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채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 신흥국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조정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여력(policy space)을 활용
 - (회복력 강화) 선진국은 대차대조표 개선, 부실채권 해결, 시장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신흥국은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유출입관리조치(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를 시행

- (장기성장) 생산성, 잠재성장률, 생활수준 제고, 자신감 강화,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구조개혁을 시의적절하게 이행

- (기타)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²⁸⁾ 발효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조속한 개혁안 비준을 촉구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 OECD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5.8.26.)²⁹⁾

- OECD 국가의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
 - OECD 회원국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14,2q) 0.4% → (3q) 0.6% → (4q) 0.5% → (15,1q) 0.5% → (2q) 0.4%
- 주요 7개국(G7) 중 영국(0.4% → 0.7%)과 미국(0.2% → 0.6%)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독일(0.3% → 0.4%)과 이탈리아(0.3% → 0.2%)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 또는 하락한 가운데 프랑스(0.7% → 0.0%)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일본(1.1% → -0.4%)은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
 - EU(0.4% → 0.4%) 및 유로지역(0.4% → 0.3%) 경제는 전분기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OECD 국가의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28) 2010년 합의된 쿼터 개혁안은 IMF 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권한을 줄이고 중국, 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권한을 늘리는 것이 주 내용

29) 출처: OECD(<http://www.oecd.org/std/na/QNA-GDP-Growth-Q215-Eng.pdf>)



2.0%로 영국(2.6%)과 미국(2.3%)이 전분기에 이어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일본(0.7%)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

〈표 4〉 전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계절조정)

	2013			2014				2015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0.4	0.6	0.5	0.3	0.4	0.6	0.5	0.5	0.4
G20	0.9	0.9	0.9	0.8	0.8	0.9	0.8	0.7	..
유럽연합	0.4	0.3	0.3	0.4	0.3	0.3	0.4	0.4	0.4
유로지역	0.4	0.2	0.3	0.2	0.1	0.2	0.4	0.4	0.3
주요 7개국	0.5	0.6	0.6	0.2	0.4	0.6	0.5	0.4	0.3
캐나다	0.5	0.7	0.7	0.3	0.9	0.8	0.6	-0.2	-0.1
프랑스	0.8	-0.1	0.2	-0.2	-0.1	0.2	0.1	0.7	0.0
독일	0.9	0.4	0.3	0.7	-0.1	0.2	0.6	0.3	0.4
이탈리아	-0.1	0.1	0.0	-0.2	-0.2	-0.1	0.0	0.3	0.2
일본	0.6	0.6	-0.2	1.1	-1.9	-0.3	0.3	1.1	-0.4
영국	0.6	0.7	0.4	0.9	0.9	0.7	0.8	0.4	0.7
미국	0.3	0.7	0.9	-0.2	1.1	1.1	0.5	0.2	0.6

주: '..'은 Latest quarter not yet available

캐나다의 2015년 Q1, Q2 수치는 OECD 자료가 아닌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함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표 5〉 전년 동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단위: %, 계절조정)

	2013			2014				2015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0.9	1.4	2.0	1.9	1.9	1.9	1.8	2.0	2.0
G20	2.9	3.2	3.5	3.5	3.4	3.3	3.2	3.2	..
유럽연합	0.0	0.3	1.0	1.4	1.3	1.3	1.4	1.5	1.6
유로지역	-0.5	-0.2	0.5	1.1	0.8	0.8	0.9	1.0	1.2
주요 7개국	0.8	1.3	2.0	1.7	1.7	1.7	1.6	1.8	1.8
캐나다	1.6	2.1	2.7	2.1	2.5	2.6	2.5	2.1	..
프랑스	1.1	0.8	1.0	0.7	-0.2	0.2	0.1	0.9	1.0
독일	0.3	0.5	1.3	2.3	1.4	1.2	1.5	1.1	1.6
이탈리아	-2.0	-1.4	-0.9	-0.2	-0.3	-0.5	-0.4	0.1	0.5
일본	1.4	2.4	2.3	2.1	-0.5	-1.4	-0.8	-0.8	0.7
영국	1.7	1.6	2.4	2.7	3.0	3.0	3.4	2.9	2.6
미국	0.9	1.5	2.5	1.7	2.6	2.9	2.5	2.9	2.3

주: '..'은 Latest quarter not yet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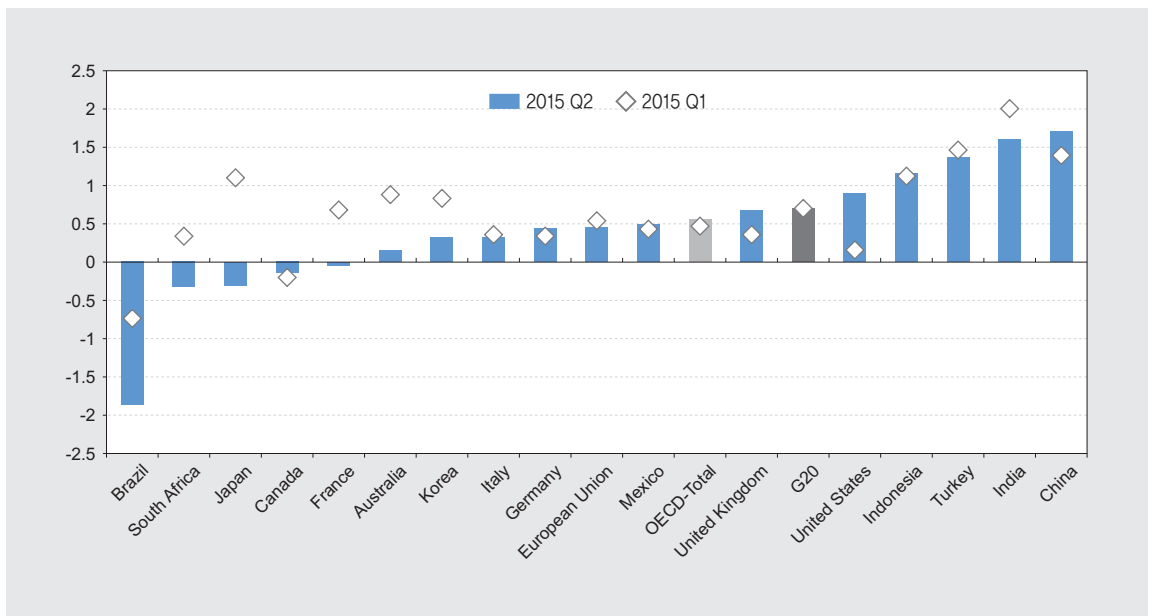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 OECD, G20 국가의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5.9.14.)^{30) 31)}
 - G20 국가의 2015년 2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은 0.7%로 직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국가별 성장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G20 국가 중 중국과 인도가 각각 1.7%, 1.6%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보임
 - 미국(0.2%→0.9%)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 상승하였으며, 중국(1.4%→1.7%), 영국(0.4%→0.7%)의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 기록
 - 일본(1.1%→-0.3%)의 경제성장률은 큰 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호주(0.9%→0.2%), 프랑스(0.7%→0.0%)의 성장률도 큰 폭 하락
 - 우리나라의 2015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하여 전분기(0.8%) 대비 0.5%p 하락

[그림 5] G20 국가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주: 실질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침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30) 출처: OECD, <http://oecd.org/std/na/G20-GDP-Eng-Q414.pdf>

3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실물 및 금융 통계의 가용성 및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의한 「Data Gap Initiative」의 일환으로, OECD는 G20 각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해당 분기 약 70일 경과 후 발표하고 있음



■ 중간 경제 평가(Interim Economic Assessment) 발표(2015.9.16.)³²⁾

* 중간 경제 평가는 5월(또는 6월)과 11월에 발표되는 경제전망의 중간 시점에 발표하는 주요국 중심(G7 및 중국, 인도, 브라질)의 약식 경제전망

• (경제전망) 2015년 글로벌 경제는 장기추세치를 하회(sub-par)할 전망이며, 2016년에 소폭 상승하지만 미래 잠재 성장률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함

- 미국 경제가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2015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은 3.0%에 그칠 전망

- 글로벌 경제전망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임

- 또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조한 투자와 생산성 정체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잠재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음

• (주요국별 전망)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호전(favourable tailwinds)으로 유로지역과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 전망

- (유로지역) 유로지역 경기회복 속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 비해 완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민간부문의 과다 채무(debt overhang)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신규 대출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 신용 채널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제약된 것으로 분석

- (미국) 미국 경제는 2015~2016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달리화의 절상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 등으로 정체되었던 기업투자도 최근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고 평가

☞ 다만, 주택투자는 과거 경기 상승기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일본)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2014년 소비세 인상 연기 및 일본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이후 산업활동과 고용이 추세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평가

- (중국) 중국 경제성장률은 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주가 하락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 경기가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연계성이 높거나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 (신흥경제국) 신흥경제국 경제는 미국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노출되면서 향후 대내외 하방리스크에 노출

☞ 원자재 수출 신흥시장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해당 통화의 환율이 하락(depreciation)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는 등 금융여건이 악화됨

32)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sub-par-global-growth-and-slowdown-in-emerging-economies-requires-a-shift-in-policy-action.htm>

☞ 예외적으로, 인도의 경우 민간 소비와 공공 부문의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표 6〉 주요국의 경제성장률¹⁾ 전망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5년 9월 전망치	2015년 6월 전망치와 차이(%p)	2015년 9월 전망	2015년 6월 전망치와 차이(%p)
미국	2.4	2.4	0.4	2.6	-0.2
유로지역	0.9	1.6	0.1	1.9	-0.2
일본	-0.1	0.6	-0.1	1.2	-0.2
독일	1.6	1.6	0.0	2.3	0.0
프랑스	0.2	1.0	-0.1	1.4	-0.3
이탈리아	-0.4	0.7	0.1	1.3	-0.2
영국	3.0	2.4	0.0	2.3	0.0
캐나다	2.4	1.1	-0.4	2.1	-0.2
중국	7.4	6.7	-0.1	6.5	-0.2
인도 ²⁾	7.2	7.2	-0.1	7.3	-0.1
브라질	0.2	-2.8	-2.0	-0.7	-1.8
그 외 국가	2.8	2.3	-0.2	3.3	-0.3
계	3.3	3.0	-0.1	3.6	-0.2

주: 1)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 근로일수 조정

2)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출처: OECD Interim Forecast

• (정책권고) OECD는 세계 거시경제정책이 경제 내 수요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금융안정성과 장기 성장 활성화 방향과 일치되어야 함을 지적

- (유로지역 및 일본)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완화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

- (미국)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점진적 인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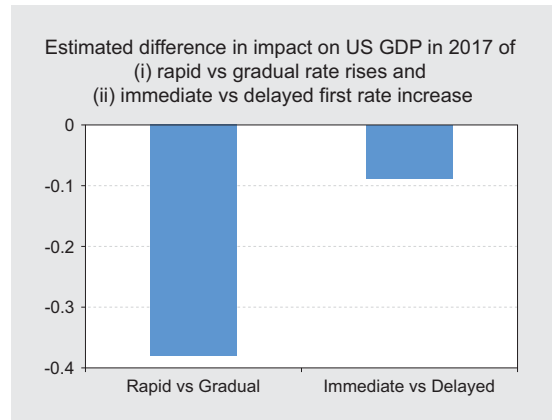
통해 금리인상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되는 경우에 비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금리 인상이 즉시(2015년 9월) 이루어질 경우는 그 이후(2016. 1월)에 인상이 시작되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6]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및 시점이 2017년 미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단위: %p)



주: 1) "빠른 속도(rapid)"는 최근 FOMC 회의 이후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금리예상 경로에 따라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경우를 말하며, "점진적 속도(gradual)"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인상 경로를 반영한 것

2) "즉각 인상(immediate)"은 금리인상 기초가 2015년 9월 기준 시작되는 경우를 말하며, "추후 인상"은 2016년 1월 시작되는 경우를 말함

- (중국) 재정지출 확대, 통화정책 완화와 각종 투자진작 수단 등 경기대응 정책이 부채를 증가시키거나 경제내 수급 불균형 상황을 악화시



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거시정책 이외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소비 진작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흥경제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수요회복을 지원해야 하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환율의 조정기능(adjustments)과 적절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measures)이 필요함

■ OECD, 2015년 2분기 OECD 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5.10.6.)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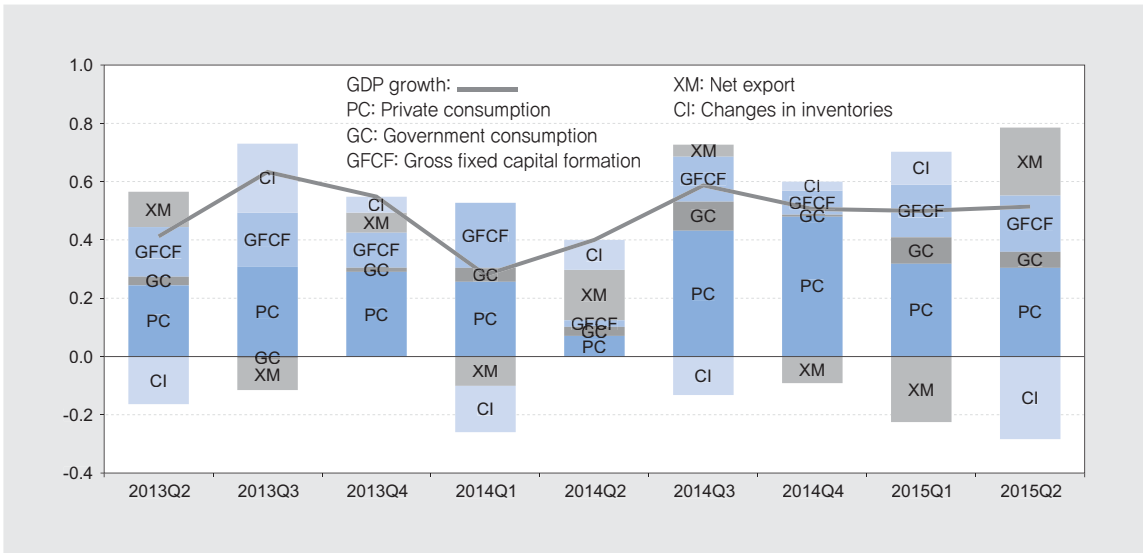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2015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5%이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의 주요한 기여요인임

- GDP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소비가 0.3%p로 가장 높고, 투자와 순수출이 각각 0.2%p, 정부 소비는 0.1%p 성장에 기여한 반면, 재고정리(destocking)로 GDP 성장률이 0.3%p 감소
- 대부분의 G7 국가는 민간소비가 성장의 주요 동인이나, 일부 국가(영국, 독일)의 경우 순수출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는 투자 부진, 재고비축 감소가 민간소비 및 순수출 증가분을 상쇄하여 -0.1%의 GDP 성장률을 보였으며, 일본은 민간소비 및 순수출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0.3%)로 전환

[그림 7] OECD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

33) 출처: OECD, <http://www.oecd.org/std/na/contributionstogdpgrowthsecondquarter2015quarterlynationalaccountsoecd.htm>

〈표 7〉 G7 국가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¹⁾	순수출	재고비축 ²⁾	GDP 성장률
OECD 전체 ³⁾	Q1 15	0.3	0.1	0.2	-0.2	0.1	0.5
	Q2 15	0.3	0.1	0.2	0.2	-0.3	0.5
캐나다	Q1 15	0.1	0.0	-0.5	0.0	0.2	-0.2
	Q2 15	0.3	0.1	-0.4	0.2	-0.3	-0.1
프랑스	Q1 15	0.5	0.1	0.0	-0.2	0.3	0.7
	Q2 15	0.0	0.1	0.0	0.4	-0.5	0.0
독일	Q1 15	0.2	0.1	0.3	-0.2	-0.1	0.3
	Q2 15	0.1	0.1	-0.1	0.7	-0.4	0.4
이탈리아	Q1 15	-0.2	0.0	0.2	-0.4	0.6	0.4
	Q2 15	0.3	-0.1	-0.1	-0.2	0.4	0.3
일본	Q1 15	0.2	0.1	0.4	-0.1	0.5	1.1
	Q2 15	-0.4	0.1	0.0	-0.3	0.3	-0.3
영국	Q1 15	0.5	0.2	0.3	-0.6	0.0	0.4
	Q2 15	0.6	0.1	0.2	1.4	-1.6	0.7
미국	Q1 15	0.3	0.1	0.1	-0.5	0.2	0.2
	Q2 15	0.6	0.0	0.3	0.0	0.0	1.0

주: 1)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2) Changes in inventories
 3)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호주

1. 예산 · 결산 등

- FY2014-15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 발표(2015.9.21)³⁴⁾
 - 재정수입은 3,807억호주달러(GDP 대비 23.6%)로 FY2015-16 예산안의 전망치 대비 34억호주달러 감소(전년 대비 68억호주달러 증가)

- 이는 조세수입 중 법인세가 전망치 대비 36억호주달러 감소한 것에 기인
- 재정지출은 4,179억호주달러(GDP 대비 25.9%)로 FY2015-16 예산안의 전망치 대비 24억호주달러 감소(전년 대비 41억호주달러 증가)
- 재정수지는 399억호주달러(GDP 대비 2.5%) 적자로 FY2015-16 예산안의 전망치 대비 5억호주달러 악화(전년 대비 38억호주달러 개선)

34) 출처: 호주 예결산 홈페이지, <http://www.budget.gov.au/2014-15/content/fbo/html/index.htm>
 재정부장관 홈페이지, <http://www.financeminister.gov.au/media/2015/0921-final-budget-outcome.html>



- 이는 FY2015-16 예산안 전망치 대비 재정수입 34억호주달러, 재정지출 24억호주달러, 순자본투자 4억호주달러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
- 순채무는 2,387억호주달러(GDP 대비 14.8%)로 FY2015-16 예산안의 전망치보다 115억호주달러 낮게 나타남(전년 대비 362억호주달러 증가)
 - 이는 정부채권(CGS)의 시장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
- 기능별 지출에서는 사회복지 및 복지부문의 지출이 1,478억호주달러, 지출총액 중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FY2015-16 예산안 전망치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보건과 사회복지 및 복지부문의 각각 13.4억호주달러, 13.2억호주달러 감소

〈표 8〉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3-14 실적	2014-15 전망 ¹⁾	2014-15 실적
재정수입 (Revenue) (GDP 대비 비율)	373.9 (23.6)	384.1 (23.9)	380.7 (23.6)
재정지출 (Expenses) (GDP 대비 비율)	413.8 (26.2)	420.3 (26.2)	417.9 (25.9)
재정수지 (Fiscal balance) (GDP 대비 비율)	-43.7 (-2.8)	-39.4 (-2.5)	-39.9 (-2.5)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²⁾ (GDP 대비 비율)	-48.5 (-3.1)	-41.1 (-2.6)	-37.9 (-2.4)
순채무 (Net Debt) (GDP 대비 비율)	202.5 (12.8)	250.2 (15.6)	238.7 (14.8)

주: 1) FY2015-16 예산안에서의 전망

2) 현금주의기준, 미래펀드(Future Fund) 수익금 제외

출처: Final Budget Outcome 2014-15 September 2015.

〈표 9〉 기능별 지출(Expenses by Function)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3-14 실적	2014-15 전망 ¹⁾	2014-15 실적
일반공공서비스	33,642	25,169	24,605
국방	22,113	24,612	23,790
공공질서 및 안전	4,368	4,580	4,443
교육	29,669	31,202	31,101
의료	63,983	67,037	65,696
사회보장 및 복지	140,566	149,107	147,787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8,355	4,940	4,835
여가 및 문화	3,749	3,520	3,534
연료 및 에너지	6,749	6,986	6,799
농업, 산림, 어업	2,385	2,731	2,411
광업	3,451	3,218	3,550
교통 및 통신	8,407	6,504	6,433
기타 경제부문	10,838	10,680	10,046
기타 목적	75,568	80,049	82,871
총지출	413,845	420,335	417,898

주: 1) FY2015-16 예산안에서의 전망

출처: Final Budget Outcome 2014-15 September 2015.

2. 기타

- 통계청, 2015년 6월 분기(June Quarter)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15.9.2.)³⁵⁾
 -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로 3월분기 GDP 성장을 0.9%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
 - 가계와 정부가 소비하는 최종 수요 품목이 GDP 상승에 기여한 반면 광산업 생산 및 순수출이 GDP 성장을 하락시킨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

35) 출처: 호주 통계청.

<http://www.abs.gov.au/AUSSTATS/abs@.nsl/mediareleasesbyReleaseDate/1AB7DE51F7FCAA46CA257E5800149A70?OpenDocument>

〈표 10〉 2015년 6월 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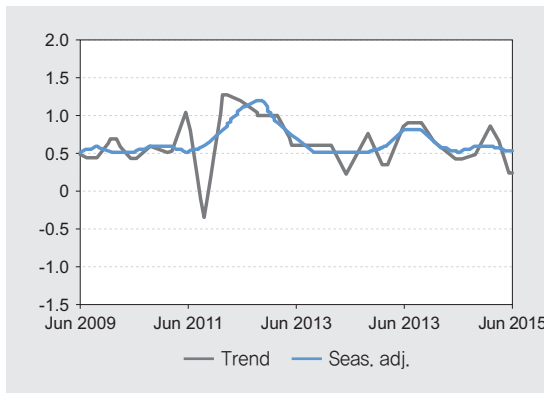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GDP	0.2	2.0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9	2.9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4	-3.3
교역조건 (Terms of Trade)	-3.4	-10.6
실질순국민가처분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0.9	-1.1

출처: 통계청, 2015.9.2.

[그림 8] GDP 성장률

(단위: %)



출처: 통계청, 2015.9.2.

■ 사회서비스부, 보모지원 시범 사업(Nanny Pilot Programme) 시행 계획 발표(2015.10.2.)^{36) 37)}

- 호주 정부는 2016~2017년 2년간 보모지원 시범 사업에 2억 4,600만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
 - (사업 목적) 보육시설로의 접근이 어렵거나 근로시간이 표준적이지 않은(non standard hours) 근로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대상 및 방법) 약 10,000여명의 아이돌봄에 필요한 보모비용을 지원
 - (시행시기) 2015년 10월부터 서비스공급자, 참여가정, 보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초반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017.12.31일까지 시범 사업이 지속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The Fiscal Monitor(2015년 4월~6월) 발표³⁸⁾(2015.8.28.)

- 2015년 4월~6월 기준 재정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억캐나다달러 상승한 50억캐나다달러
 - (수입) 개인소득세, 소비세의 인상 및 GM 보통주 매각 실현이익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62억캐나다달러(9.2%) 증가한 약 733억캐나다달러

36) 출처: 사회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programmes-services/early-childhood-child-care/nanny-pilot-programme>

37) 호주는 FY2015-16 예산안에서 보모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언급한 바 있음(2015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IX. 호주 참고)

38) <http://www.fin.gc.ca/fiscmon-revlin/2015-06-eng.asp>



- (프로그램 지출) 개인에 대한 이전지출 및 육아 보육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2억캐나다달러(3.7%) 증가

- (공공채무비용) 공공채무비용은 약 70억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

〈표 11〉 캐나다 2015년 4월~6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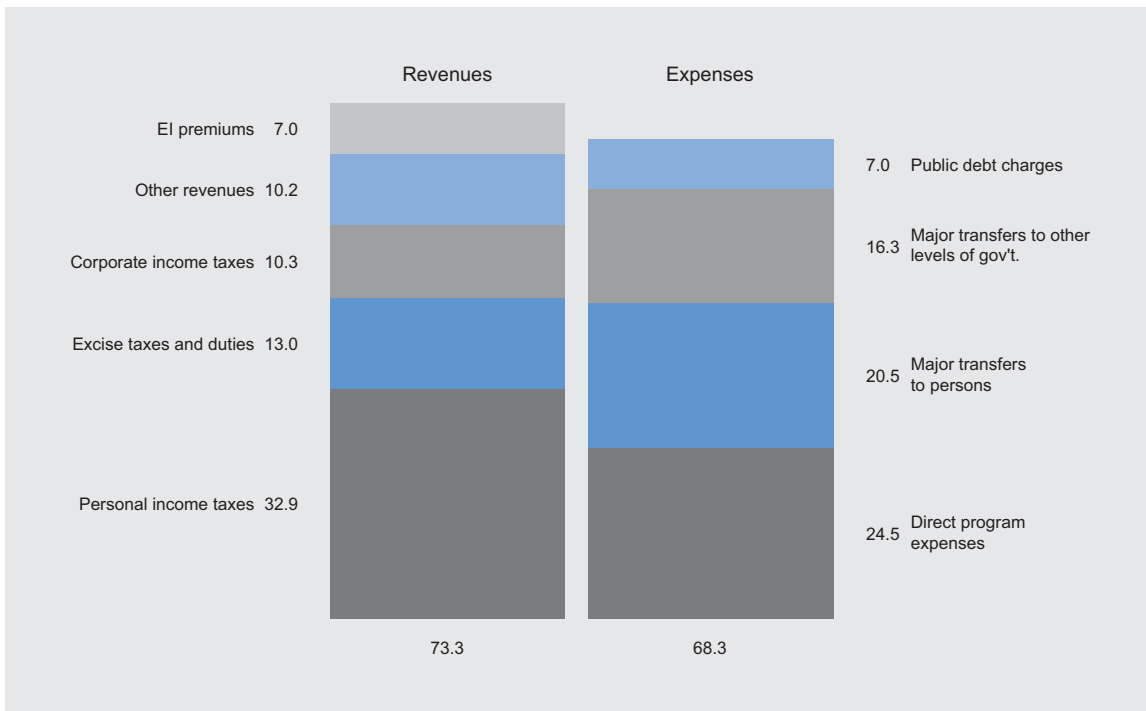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FY2014-15	FY2015-16
수입(Revenues)		67,157	73,315
지출(Expenses)	프로그램지출(Program expenses)	-59,112	-61,296
	공공채무비용(Public debt charges)	-7,621	-7,008
재정수지(Budgetary balance)		424	5,011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to June 2015.

[그림 9] 세입 및 세출구성

(단위: 십억달러)



출처: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to June 2015.

2. 기타

- 캐나다 통계청, 2015년 2분기 실질경제성장률 발표³⁹⁾(2015.9.1.)
 - 캐나다의 2015년 2분기 실질경제성장률(계절조정, 연율기준)은 전분기 대비 0.1%p 상승한 -0.1% 규모
 - 가계소비와 정부소비는 전분기보다 상승하여 각 0.5%와 0.3%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재고투자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표 12〉 캐나다 최근 분기별 성장률 추이
(계절조정, 연율기준)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4. 1Q	2014. 2Q	2014. 3Q	2014. 4Q	2015. 1Q	2015. 2Q
가계 최종소비지출	0.3	1.0	0.7	0.5	0.1	0.5
정부 최종소비지출	-0.2	0.5	-0.2	0.3	-0.1	0.3
총지출	0.2	0.9	0.4	0.4	0.1	0.5
총고정 자본형성	-0.3	0.1	1.4	0.3	-2.2	-1.6
재고투자	-2,566	-9,110	-4,491	7,341	3,503	-4,906
수출	0.1	4.6	2.0	-0.4	-0.3	0.1
수입	-1.1	2.4	1.0	0.4	-0.4	-0.4
실질GDP 성장률	0.3	0.9	0.8	0.6	-0.2	-0.1

출처: 캐나다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income and expenditure, second quarter 2015, Table 1* 일부 발췌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FY2016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6) 발표(2015.9.30.)⁴⁰⁾
 - (경제전망) 프랑스는 지난 3년 평균 0.3%의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나타냈으나,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 2016년 경제성장률은 1.5%로 점진적인 회복을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 2016년 총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4억 유로 감소한 720억유로로, 2015년 대비 3.2% 개선될 전망
 - (재정지출) 2016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72억 유로(2.0%) 증가한 3,748억유로로 전망
 - (재정수입) 2016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69억 유로(2.5%) 증가한 2,860억유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억유로(10.6%) 증가한 157억유로로 전망

39)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50901/dq150901a-eng.pdf>

40) 프랑스 재무부,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5/publication-projet-loi-finances-2016>



〈표 13〉 2016년 중앙정부 예산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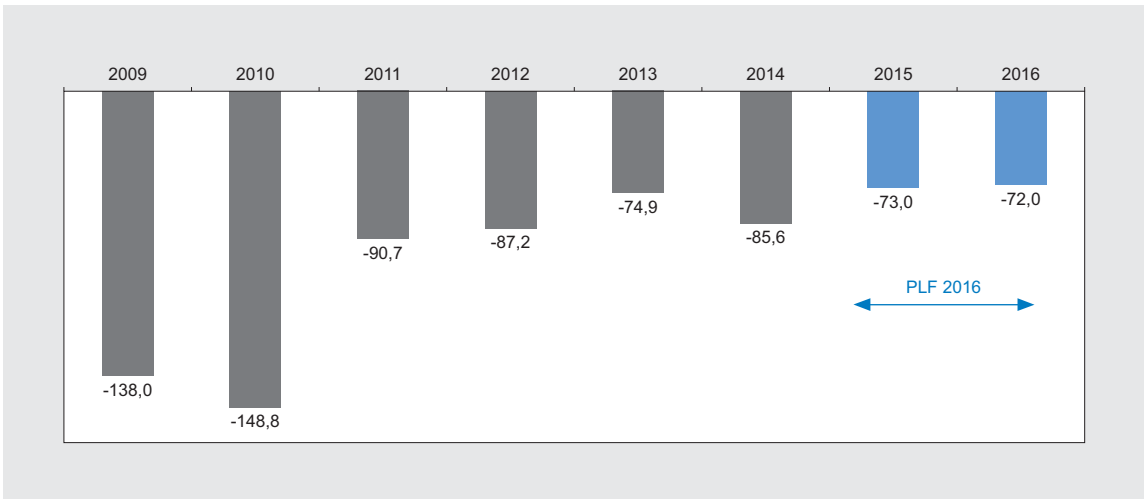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2014 결산	2015 예산법	2015 예산법(수정)	2016 예산법안
재정지출(Dépense nettes)	374.0	367.6	366.3	374.8
재정수입(Recettes nettes)	288.3	293.3	292.3	301.7
조세수입(dont recettes fiscales)	274.3	279.1	278.2	286.0
세외수입(dont recettes non fiscales)	13.9	14.2	14.1	15.7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85.7	-74.3	-74.0	-73.1
부속예산(Solde du budget annexes)	0.0	0.0	0.0	0.0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2	-0.2	1.0	1.1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85.6	-74.4	-73.0	-72.0

출처: PLF 2016.

[그림 10]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유로)



출처: PLF 2016.

• (주요 지표 전망)

-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5%p 개선된 -3.3%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전망
- ☞ 구조적재정수지는 경제회복 영향에 따라 전

- 년 대비 0.5%p 개선된 -1.2%를 나타낼 전망
-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5년보다 0.2%p 증가한 96.5%로, 2007년 이후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국가채무가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표 14〉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0.4	1.0	1.5
물가상승률	0.5	0.1	1.0
구조적재정수지	-2.0	-1.7	-1.2
재정수지	-3.9	-3.8	-3.3
국가채무	95.6	96.3	96.5

출처: PLF 2016.

- (예산기조) 2016년 예산법안은 재정적자 감축, 세금 인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를 목표로 함
- (주요내용)
 - 2015-17년 지출절감 프로그램⁴¹⁾ 시행이 계속 될 것으로, 2015년 186억유로 지출절감에 이어 2016년에는 160억유로의 지출절감을 시행할 계획
 - ☞ 중앙정부 부문에서 51억유로, 지방정부 부문에서 35억유로, 사회보장 부문에서 74억유로 감축 계획
 - ☞ 2017년에는 총 154억유로의 지출절감을 시행할 계획(중앙정부 51억유로, 지방정부 37억유로, 사회보장 65억유로)
 - ☞ 재정지출 절감노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인 고용과 투자, 불평등 감소, 치안, 청년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농업 및 난민 수용에 사용될 예정

- 2016년에는 20억유로 규모의 소득세 감세를 시행할 것이며, 330억유로 규모의 세금 완화 등 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
 - ☞ 2016년에도 2014년부터 시작된 소득세 감세를 지속할 것으로, 납세자의 3분의 2가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책임·연대 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 et de solidarité) 등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예산법안의 주요 미션은 교육, 국방, R&D 및 고등 교육,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주택 및 건설, 치안
 - ☞ 교육(Enseignement scolaire) : 479.9억유로
 - ☞ 국방(Défense) : 317.3억유로
 - ☞ R&D 및 고등 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 256.3억유로
 -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égalité des chances) : 180.4억유로
 - ☞ 주택 및 건설(Égalité des territoires et logement) : 176.8억유로
 - ☞ 치안(Sécurité) : 122.4억유로

■ 프랑스 재무부, FY2016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6) 발표(2015.9.24.)⁴²⁾

41)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 예산안 2015』의 프랑스편 참조

42) 프랑스 재무부,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5/presentation-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plfss-2016>



- 2016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목표를 2015년 적자 전망보다 30억유로 감소한 97억유로로 설정,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산재보험(AT-MP)부문은 4년 연속 흑자를 달

성할 전망이며, 경제정책 효과로 인해 가족지원금(Famille)부문과 의료보험(Maladie)부문의 수지가 개선되고 노령연대기금(FSV)부문 적자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표 15〉 2016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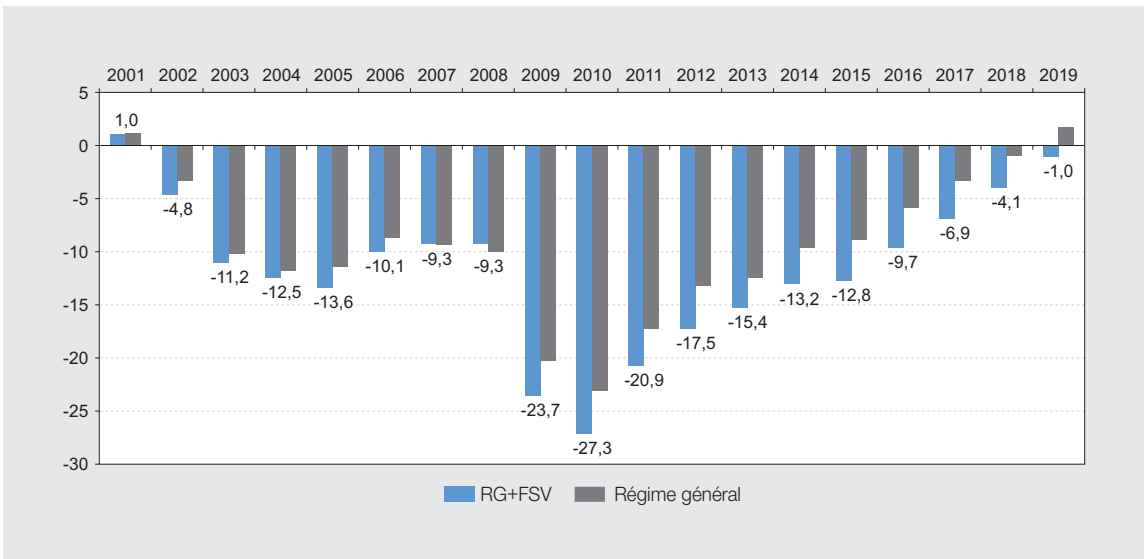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결산	PLFSS 2016 전망				
의료보험 (Maladie)	-6.5	-7.5	-6.2	-4.7	-2.9	-0.3
산재보험 (AT-MP)	0.7	0.6	0.5	0.6	1.5	1.9
법정연금기금 (Vieillesse)	-1.2	-0.6	0.5	1.1	0.4	-0.1
가족지원금 (Famille)	-2.7	-1.6	-0.8	-0.3	0.0	0.3
일반제도수지 (Total Régime Général)	-9.7	-9.0	-6.0	-3.3	-1.0	1.8
노령연대기금 (FSV)	-3.5	-3.8	-3.7	-3.6	-3.1	-2.8
총액 (RG+FSV)	-13.2	-12.8	-9.7	-6.9	-4.1	-1.0

출처: PLFSS 2016.

[그림 11]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 추이

(단위: 십억유로)



출처: PLFSS 2016.

2. 기타

- 통계청(INSEE), 2015년 2분기 실업률 발표 (2015.9.3.)⁴³⁾
 - 프랑스 통계청은 2015년 2분기 실업률을 10.0%로 잠정 집계하였으며 이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
 - 프랑스 전체(해외포함)의 실업률은 10.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15~24세의 실업률과 25~49세의 실업률은 전분기 보다 감소하였으나 50세 이상의 실업률은 증가

〈표 16〉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2015 Q1	2015 Q2 (잠정)	증감(%p)		2015 Q2 실업자 수 (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10.0	10.0	0.0	0.3	2,852
15-24세	24.0	23.4	-0.6	0.4	625
25-49세	9.5	9.3	-0.2	0.1	1,657
50세 이상	6.4	7.0	0.6	0.4	570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프랑스에 거주하는 인구 대상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5.9.3.

- 통계청(INSEE), 2015년 2분기 일반정부 채무 발표 (2015.9.30.)⁴⁴⁾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5년 2분기 말 일반정부 채무는 전분기 대비 160억유로 증가한 2조

1,054억유로 규모

-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97.6%로 전분기 대비 0.2%p 증가
- 정부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전분기 대비 254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기금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는 각각 81억유로, 12억유로 감소

〈표 17〉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무

(단위: 십억유로, %)

	2014 Q2	2014 Q3	2014 Q4	2015 Q1	2015 Q2
일반정부 채무	2,027.6	2,035.4	2,037.8	2,089.4	2,105.4
GDP 대비	95.4	95.6	95.6	97.4	97.6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5.9.30.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연방내각, 난민지원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두 번째 추경예산안 채택(2015.9.29.)⁴⁵⁾
 - (배경) 9.24일 '난민대책 정상회의'를 통해 난민지원을 위한 추경에 합의하였고, 에너지기후기금 46)을 통한 에너지전환* 보조금 지출도 병합 처리하기로 함
 - * 장기적으로 원자력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정책

43)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14&date=20150903>

44)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40&date=20150930>

45)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9.29.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9/2015-09-29-PM38.html>

46) EKF: Energie- und Klimafond



- (규모) 난민지원에 대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관련 10억유로, 에너지 전환 보조금 관련 15억유로 등을 포함해 총 51억유로 추가 편성
- (재원조달) 금번 채택된 추가 지출은 휴대폰 라이선스 매각, 세입 증가분, 이자지급 절감분을 통해 충당하며, 당초의 균형재정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

<표 18> FY2015 두 번째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당초예산 (A)	2015.6 추경 (B)	2015.9 추경안(C)	C-B
재정지출	2,991	3,016	3,067	51
투자	265	301	301	0
재정수입	2,991	3,016	3,016	51
조세수입	2,775	2,789	2,801	11
신규차입	0	0	0	0

출처: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9.29.

2. 기타

- 재무부, 보조금 보고서 *Subventionsbericht* 발표 (2015.8.26.)⁴⁷⁾
 - (배경) 동 보고서는 “경제안정 및 성장 증진법⁴⁸⁾”에 따라 2년마다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로, 연방의 재정지원 및 조세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
 - (내용) 재정지원 및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04

억유로에서 2015년 218억유로, 2016년 229억유로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비율) 재정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경제상황과 조세지출의 감소로 2015년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은 0.7%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부문) 2015년 기준으로 재정지원 중 “에너지 효율화 건물 지원 사업”^{*}이, 조세지출 중 “기업·주식의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시 감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Maßnahmen zur energetischen Gebäudesanierung: 독일재건은행 KfW를 통해 에너지효율 건물에 대한 융자, 보수비용 등을 지원받는 사업

- 연방정부, 16개 주 총리들과 함께 “난민대책 정상회의” 개최(2015.9.24.)⁴⁹⁾
 - (배경) 201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80만명*의 난민이주가 예측되면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당면한 인도주의적·행정적·재정적 문제를 논의
 - * 이주난민청은 당초 2014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만명 이상의 난민을 전망하였고, 이에 연방정부는 6월 추경을 통해 지자체 난민정책 지원금을 10억유로로 2배 확대한 바 있음
 - (주요내용) 회의를 통해 비현금성 지원 강화, 안전국가 지정, 승인가능 망명신청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합의

47) 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5.8.26.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8/2015-08-26-PM31.html>

48) StWG: Gesetzes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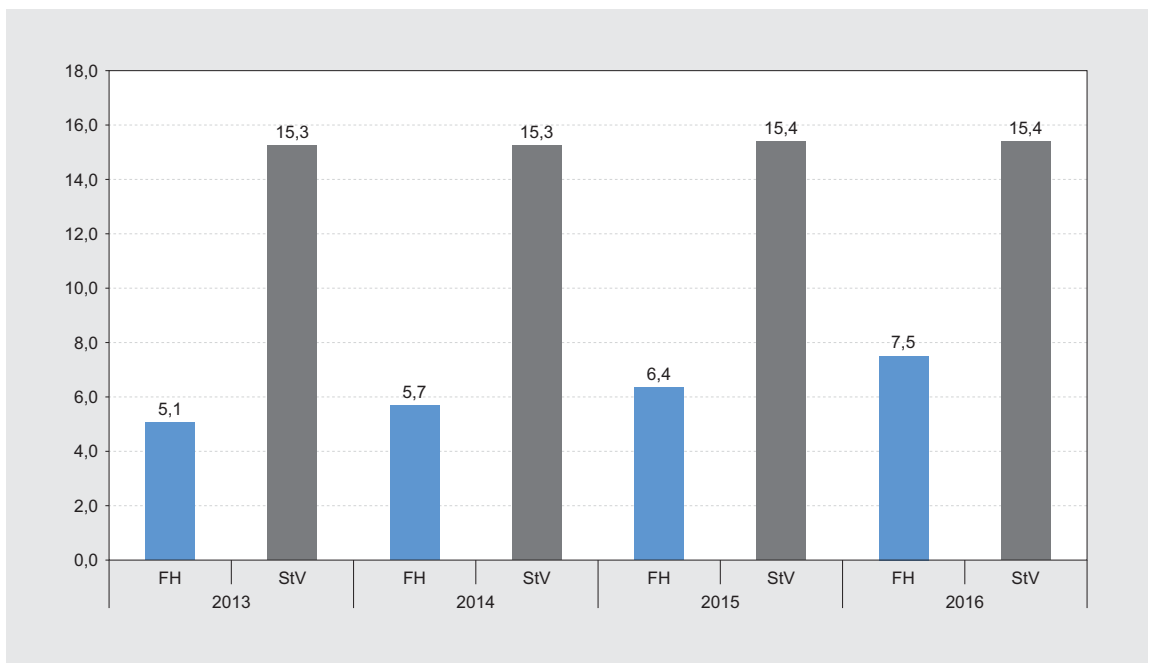
49) 연방정부, News, 2015.9.24.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EN/Artikel/2015/09_en/2015-09-24-fluechtlinge-kanzleramt_en.html?nn=709674

- (비현금 지원) 난민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수용시설에 머무는 동안 최소한의 현금 지원은 유지하되(1달 이하) 비현금 지원 중심으로 전환
- (안전국가 지정) 분쟁이 종식된 서부 발칸반도의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를 안전국가로 지정하여 해당 국적의 난민 수용을 감축
 - ☞ 이는 해당 국적의 난민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거부는 아니며, 극한 어려움에 처한 개별적인 경우(증빙 필요)에 한해 망명을 승인
- (재정지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승인가능 망명신청자 1인당 매달 670유로 지원(망명절차 완료까지)
 - ☞ 또한, 공공지원주택 건설을 위해 5억유로, 보호자 없는 난민들을 위해 3.5억유로 지원

[그림 12] 연방의 보조금 규모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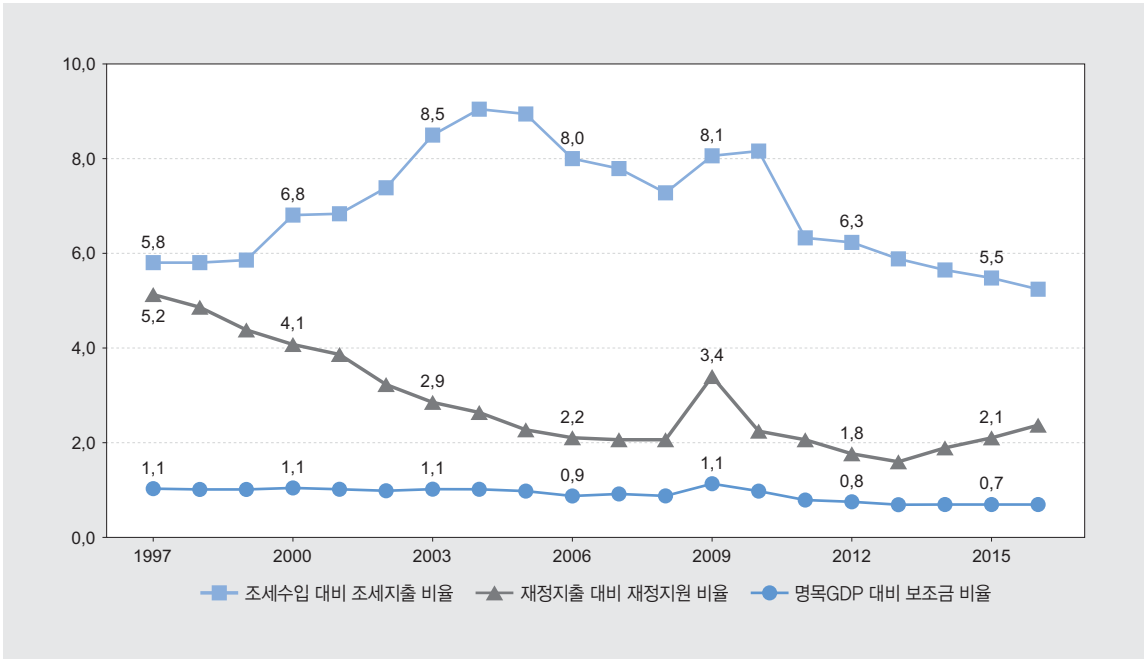


주: FH는 연방의 재정지원을, StV는 조세지출을 의미
출처: 재무부, *Fünfundzwanzigster Subventionsbericht*, 2015.



[그림 13] 연방의 보조금 비율

(단위: %)



출처: 재무부, *Fünftundzwanzigster Subventionsbericht*,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2015년 중기재정계획 업데이트(Nota di Aggiornamento a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발표⁵⁰⁾(2015.9.18.)
 - (경제전망) 이탈리아 경제는 2015년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상반기에 국내수요와 수출에서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 3분기에는 서비스 부문이 개선됨
- 2015년 3-4분기 및 이후 4개년 동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50)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Approvata la Nota di Aggiornamento al DEF 2015, http://www.mef.gov.it/inevidenza/article_0160.html

〈표 19〉 2015년 중기재정계획 업데이트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질GDP(PIL)	-0.4	0.9	1.6	1.6	1.5	1.3
국내최종소비 (consumi finali nazionali)	0.0	0.6	1.4	1.1	1.1	1.1
투자(investimenti)	-3.3	1.2	2.6	4.0	3.4	2.2
수출(Esportazioni)	2.6	4.1	3.9	4.2	3.9	3.7
수입(Importazioni)	1.8	5.3	4.3	4.3	4.3	3.9

출처: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Nota di Aggiornamento a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2015.

- (재정전망)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을 4월 중기재정계획의 2.5%에서 2.6%로 수정
 - 2015년 이후 공공채무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

〈표 20〉 2015년 중기재정계획 업데이트

공공재정 지표

(단위: 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수지 (Indebitamento netto)	-3.0	-2.6	-2.2	-1.1	-0.2	0.3
구조적 수지 (Indebitamento netto strutturale)	-0.7	-0.3	-0.7	-0.3	0.0	0.0
공공채무 (Debito Pubblico)	132.1	132.8	131.4	127.9	123.7	119.8

출처: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Nota di Aggiornamento al Documento di Economia e Finanza 2015.

2.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 2015년 2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발표⁵¹⁾(2015.10.1.)
 - 2015년 2분기 GDP 대비 순차입은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한 0.9%이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한 2.9% 수준
 -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여 GDP 대비 49.2%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경상지출이 0.4% 증가하고 자본지출이 0.1% 감소함
 -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GDP 대비 45.7% 수준이며, 경상수입이 0.9% 증가

〈표 21〉 2015년 2분기 일반정부 비금융계정

(단위: 백만유로, %)

	2014-Ⅱ	2015-Ⅱ	전년 동기 대비
지출			
경상지출	183,734	184,411	0.4
자본지출	16,539	16,523	-0.1
총 지출	200,273	200,934	0.3
수입			
경상수입	194,493	196,273	0.9
자본수입	1,417	979	-30.9
총 수입	195,910	197,252	0.7
경상수지	10,759	11,862	
GDP대비	2.7	2.9	
순차입	4,363	3,682	
GDP대비	1.1	0.9	

출처: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51) 이탈리아 통계청, Conto economico trimestrale 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http://www.istat.it/it/archivio/163350>



● **일본**

엔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조 680억엔 증가
 -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금액은 76조 3,556억엔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조 4,643억엔 증가한 규모

1. 예산·결산 등

- 「2016년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2015.9.4.)⁵²⁾
 - 2016년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은 102조 4,099억

〈표 22〉 FY2016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단위: 억엔)

소 관	전년도 예산액(당초)	FY2016			전년 대비 증감액
		요구액	요망액	합계	
황실비	61	56	8	64	3
국 회	1,386	1,384	-	1,384	△3
재 판소	3,131	3,125	70	3,195	64
회계검사원	171	165	7	173	1
내각·내각본부등	26,189	25,808	1,295	27,103	914
경찰청	3,216	3,181		3,435	219
총무성	163,428	164,560	424	164,983	1,556
(내 지방교부세교부금등)	(155,357)	(157,528)	(-)	(157,528)	(2,170)
법무성	7,375	7,220	474	7,694	319
외무성	6,854	6,632	1,110	7,743	888
재무성	22,065	22,109	930	23,039	974
문부과학성	53,303	50,149	8,403	58,552	5,249
후생노동성	299,146	304,423	2,252	306,675	7,529
농림수산성	21,356	20,414	4,081	24,495	3,138
경제산업성	9,220	9,420	2,254	11,674	2,454
국토교통성	59,247	53,746	14,548	68,294	9,047
환경성	2,962	3,440	702	4,142	1,180
방위성	49,801	49,195	1,717	50,911	1,110
소 계	728,912	725,027	38,529	763,556	34,643
국채비	234,507	260,543	-	260,543	26,036
합 계	963,420	985,570	38,529	1,024,099	60,680

주: 1)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개산요구액은 세수 등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전명한 임시 금액
 2)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각 부처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집계한 것으로, 조사 결과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要望額」, 2015.9.4.

52) 재무성, 「平成28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要望額」, 2015.9.4.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6/sy270904.pdf

참고: 요망액은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범위를 설정해, 각 부처는 요구 기초액의 30% 내에서 요망가능

- 「FY2015년도 1분기 예산사용의 상황 개요」 발표 (2015.9.4.)⁵³⁾
 - FY2015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1분기 수입 비율(B/A)은 17.1%,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은 27.5%를 기록
 - FY2015 제 1사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33.6%, 이번년도 사용가능한 금액 대비 지출 비율은 31.2%를 기록

2. 기타

- 2015년 2분기 GDP성장률 2차 속보치 발표(2015.9.8.)⁵⁴⁾
 - 내각부, 2015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Delta 0.3\%$ (연율환산 $\Delta 1.2\%$) 감소, 명목GDP 성장률은 0.1% (연율환산 0.2%)로 1차 속보치에 비해 상향 조정
 - (내외별 기여도) 민간설비투자가 하향 조정되었지만, 민간재고투자 확대(기여도 $0.1\% \rightarrow 0.3\%$)로 내수 기여도는 1차 속보치보다 상향 ($\Delta 0.0\% \rightarrow \Delta 0.1\%$)

〈표 23〉 FY2015 제 1사분기 예산사용 상황의 개요

(단위: 억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963,419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D)	999,468	세입예산액(A)	4,064,982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D)	4,101,791
제1사분기 국가 수납금액(B)	165,246	제1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74,880	제1사분기 국가 수납금액(B)	1,369,823	제1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282,42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7.1% (13.2%)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7.5% (26.8%)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33.6% (33.3%)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31.2% (32.4%)
제1사분기까지 누계(C)	165,246	제1사분기까지 누계(F)	274,880	제1사분기까지 누계(C)	1,369,823	제1사분기까지 누계(F)	1,282,423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17.1% (13.2%)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27.5% (26.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33.6% (33.3%)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31.2% (32.4%)

주: ()는 전년 동기 비율

출처: 재무성, 「平成27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4.9.5.
http://www.mof.go.jp/budget/report/budget_use/fy2015/27_1.html

53) 재무성, 「平成27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5.9.4.

참고: 예산사용의 상황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와 국민에 대한 보고'로서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상황 및 소관 조직·항으로 지출상황, 특별회계 등의 수지상황에 대해 각 부처의 월별보고에 따라 재무부는 분기별로 집계

54) 내각부, 「2015(平成27)年4~6月期GDP速報(2次速報値)」, 2015.9.8.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gaiyou_top.html



- ☞ (민간최종소비) 자동차, 기타 식료품, 음료 등이 상향 조정에 기여($\Delta 0.8\% \rightarrow \Delta 0.7\%$)
- ☞ (민간설비투자) '2분기 법인기업통계'를 반영한 결과 화학, 식품, 철강 등 제조업 투자 부진으로 하향 조정($\Delta 0.1\% \rightarrow \Delta 0.9\%$)
- ☞ (민간재고증감) GDP기여도는 0.3%로 1차 속도치(0.1%)에서 상향 조정

■ 재무성, 「재정에 관한 장기추계」 개정판 발표(2015. 10.9.)⁵⁵⁾

- 장기추계 보고서는 EU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2'를 모방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혜택의 증가가 미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경제전망 전제) 2023년도까지는 「내각부 중앙 기시산」, 2024년도 이후는 「연금재정검증」⁵⁶⁾의 경제재생 case를 토대로 TFP상승률은 1.0%, 물가상승률은 1.2%, 실질임금상승률은 1.3%, 실질운용금리 3.0% 적용해 작성⁵⁷⁾
 - (재정전망 전제) 2020년도까지 「내각부 중장기 시산」⁵⁸⁾을 바탕으로 작성

- (구성요소) 2020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수지개선폭은 (1) 2020년 시점의 PB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수지개선폭,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출증가 대응을 위한 수지개선폭, (3) 금리·성장률 격차에 따라 필요한 수지개선폭(2020년 시점의 GDP 대비 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수지개선폭)으로 구성
- (일반정부, 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 포함) case 1, case 2로 전망
 - (case 1) 2020년도 1회의 수지개선 이후 2021년부터 2060년까지 현 제도를 유지한 경우
 - (case2) 2020년 중앙·지방 PB균형을 전제한 경우
- (중앙·지방정부) case A, case B로 전망
 - (case A) 2020년도 1회의 수지개선 이후 2021년부터 2060년까지 현 제도를 유지한 경우
 - (case B) 2020년 중앙·지방 PB균형을 전제한 경우
- (분석결과)
 - (case 1) 2060년 이후 GDP 대비 채무비율을

55)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 「我が国の財政に関する長期推計」, 2015.10.9.

http://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proceedings/material/zaiseia271009/01.pdf

56) 재후생노동성, 「年金財政検証」, 2014.6.

「연금재정검증」은 2009년 발표 후, 5년 후인 2014년에 재정검증을 실시해 2014년 6월에 결과를 발표.

「연금재정검증」의 8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D(내각부의 경제재생 case, TFP상승률은 1.0%, 물가상승률은 1.2%, 실질임금상승률은 1.3%, 실질운용금리 3.0%)를 적용

57) (재정에 대한 가정)

- 연령관계지출은 연령계층별 인당 지출이 사회보장혜택(연금, 의료, 개호)이나 교육 등의 지출, 인구구조의 변화, 각 제도를 반영한 연령계층별 인당 급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추계

- 비연령관계지출은 명목GDP 성장률로 계산

- 이차지급비용의 산출시 금리는 명목장기이자율

- 정부수입(세금, 사회보험료, 기타소득)은 세금·보험료를 인상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명목GDP 성장률로 계산

(경제에 대한 가정)

- 2020년까지 중앙·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내각부 「중장기시산」(2015년 7월)으로 변경

- 인구구조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2012년 1월)을 사용

58) 내각부, 「中長期試算」, 2015.7.

-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도 기준 GDP 대비 9.53~11.12%의 수지개선 필요⁵⁹⁾
- (case 2) 2060년도이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도 기준 GDP 대비 8.21%~9.78%의 수지개선 필요, ⁶⁰⁾ 초기개혁을 통해 연령관계지출과 채무증가 억제에 따라 필요한 수지개선폭은 case 1에 비해 축소
 - (case A) 2060년 이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도 기준 GDP 대비 6.74~8.44%의 수지개선 필요
 - (case B) 2060년도 이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도 기준 GDP 대비 5.43~7.10%의 수지개선 필요
 - 「경제 · 재정 재생계획」⁶¹⁾대로 아베내각이 세출개혁을 2020년까지 유지시 중앙 · 지방 기초 재정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5.64~7.31%의 개선이 필요하며 case B와 유사
- (결론) GDP 대비 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20년 시점의 수지개선폭을 줄이려면 세출개혁 노력이 필요
 - ▣ 유럽의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일본의 수지개선 폭은 두드러지며, 중장기적으로 수지개선 방법에 관한 세출 · 세입 양측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

〈표 24〉 시나리오별 전망결과

시나리오		전제	2060년 GDP 대비 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지개선폭	2060년 채무비율
일반정부 (중앙 · 지방+사회보장기금 포함)	Case 1	2020년도 1회의 수지개선 이후 현행제도 전제	9.53~11.12%	107.6%
	Case 2	2020년 중앙 · 지방 PB균형 전제	8.21~9.78%	104.5%
중앙 · 지방	Case A	2020년도 1회의 수지개선 이후 현행제도 전제	6.74~8.44%	174.4%
	Case B	2020년 중앙 · 지방 PB균형 전제	5.43~7.10%	171.4%

출처: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 「我が國の財政に關する長期推計」, 2015.10.9.

59) (1)+(2)+(3)=9.53~11.12%

GDP대비 채무비율을 안정화, 기초재정수지 적자 해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출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기준 수지개선폭은 GDP 대비 6.62~6.75% (금리 · 성장률 격차에 따라 필요한 수지개선폭을 더하면 9.53~11.12%)

60) (1)+(2)+(3)=8.2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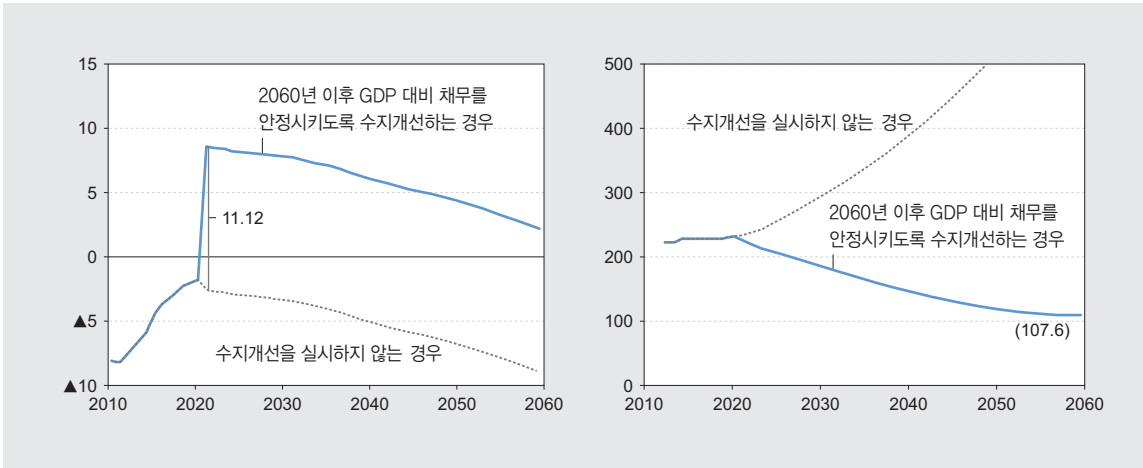
GDP 대비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기준 GDP대비 5.34~5.47%의 개선이 필요

61) 「經濟 · 財政再生計畫」



[그림 14] Case 1: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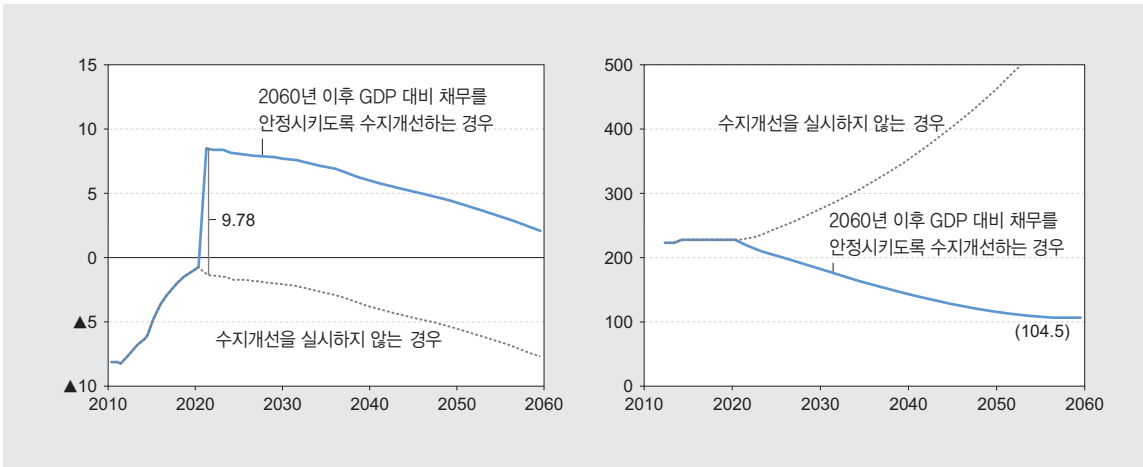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주: 그림은 「연금재정검증」(2014년 6월) 시나리오의 경제가정을 이용한 경우

[그림 15] Case 2: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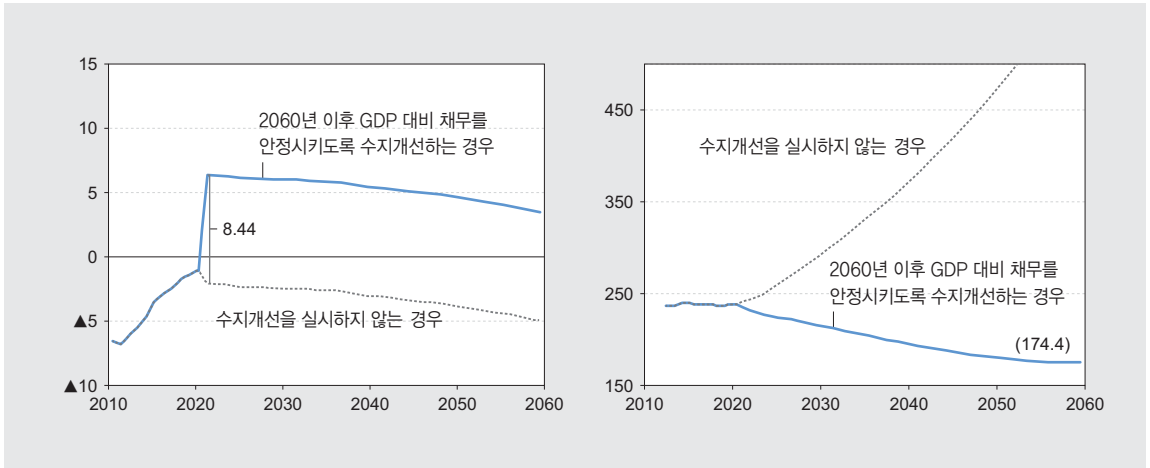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주: 그림은 「연금재정검증」(2014년 6월) 시나리오의 경제가정을 이용한 경우

[그림 16] Case A: 중앙 · 지방 기초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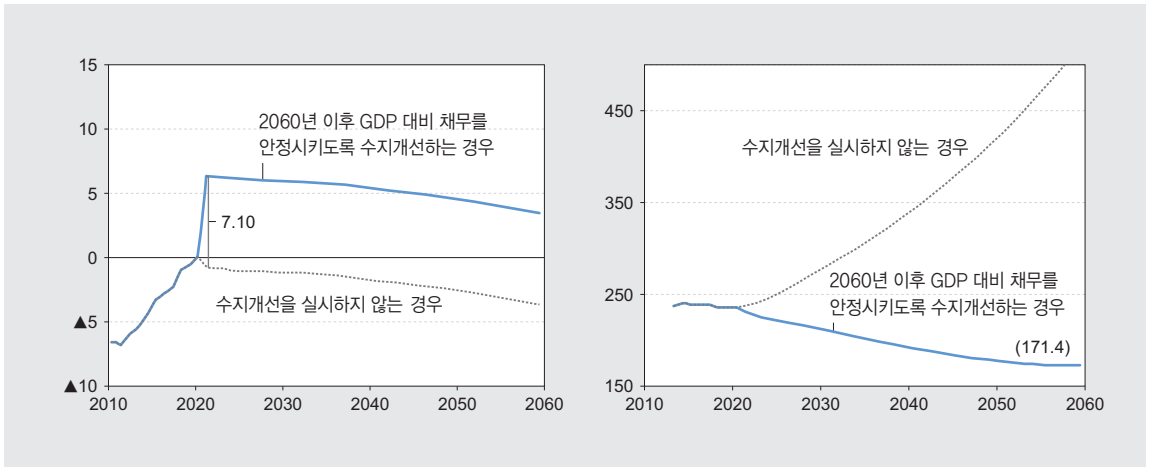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비중, %)



주: 그림은 「연금재정검증」(2014년 6월) 시나리오의 경제가정을 이용한 경우

[그림 17] Case B: 중앙 · 지방 기초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단위: GDP 대비 비중, %)



주: 그림은 「연금재정검증」(2014년 6월) 시나리오의 경제가정을 이용한 경우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통계청, 2015년 2/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15.8.27.)⁶²⁾
 - 2015년 2/4분기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1%로 집계되어, 1/4분기의 2.7%보다 0.4%p 상승
 - 국내수요의 GDP 기여도가 1/4분기 3.1%p에서 2/4분기 3.3%p로 상승했으며 대외수요의 GDP 기여도 역시 -0.4%p에서 -0.2%p로 개선됨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4분기 2.8%에서 2/4분기 3.8%로 크게 성장
 -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4분기의 0.9%보다 0.1%p 상승한 1.0%로 집계
 -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EU-28) 0.4%, 유로존(EMU-19) 0.3%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강조
- 카탈루냐 지역 지방선거 실시(2015.9.27.)⁶³⁾
 - 스페인 카탈루냐(Cataluña) 자치지역(Comunidad de Autónomas)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 언론의 관심을 받아옴
 -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15.9%,⁶⁴⁾ GDP의 약 18.9%⁶⁵⁾를 차지하며, 여

- 타 스페인 지역과 역사·언어가 상이
 - 2014년 비공식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80.76%의 찬성을 얻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개표결과) 독립찬성 정당연합인 ‘Together for Yes(JxSi)’가 득표율 39.54%로 62석을 획득하는 등 독립 찬성 측(JxSi와 CUP)이 의석 과반을 확보
 - 독립 찬성 측은 투표율이 77.44%를 기록하였으며 독립 찬성 의석수(72석)가 과반(68석)을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독립 반대 측은 찬성 득표율(47.74%)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 독립 찬성 측은 찬성이 과반을 넘을 경우 18개월 내 독립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하였으나 CUP가 독립 찬성 조건으로 의석수 및 득표율 과반을 제시해 변수가 될 전망
 -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는 30일 하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고 일축하는 가운데 “법적인 틀하에서 카탈루냐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⁶⁶⁾

62) 출처: 스페인 통계청, http://www.ine.es/en/prensa/cntr0215_en.pdf, 2015.08.27.

63) 출처: 주 스페인 대사관, 총리실, 카탈루냐 의회, 통계청

64) 출처: 통계청, 인구조사 보도자료(2015년 1월 1일 기준), http://www.ine.es/en/prensa/np917_en.pdf, 2015.10.01.

65) 출처: 통계청, GDP 데이터(2014년 기준), http://www.ine.es/en/daco/daco42/cre00/b2010/c15m_cre_en.xlsx, 2015.10.01.

66) 출처: 스페인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lang/en/presidente/news/Paginas/2015/30092015-question-time.aspx>, 2015.10.01.

〈표 25〉 카탈루냐 지역 지방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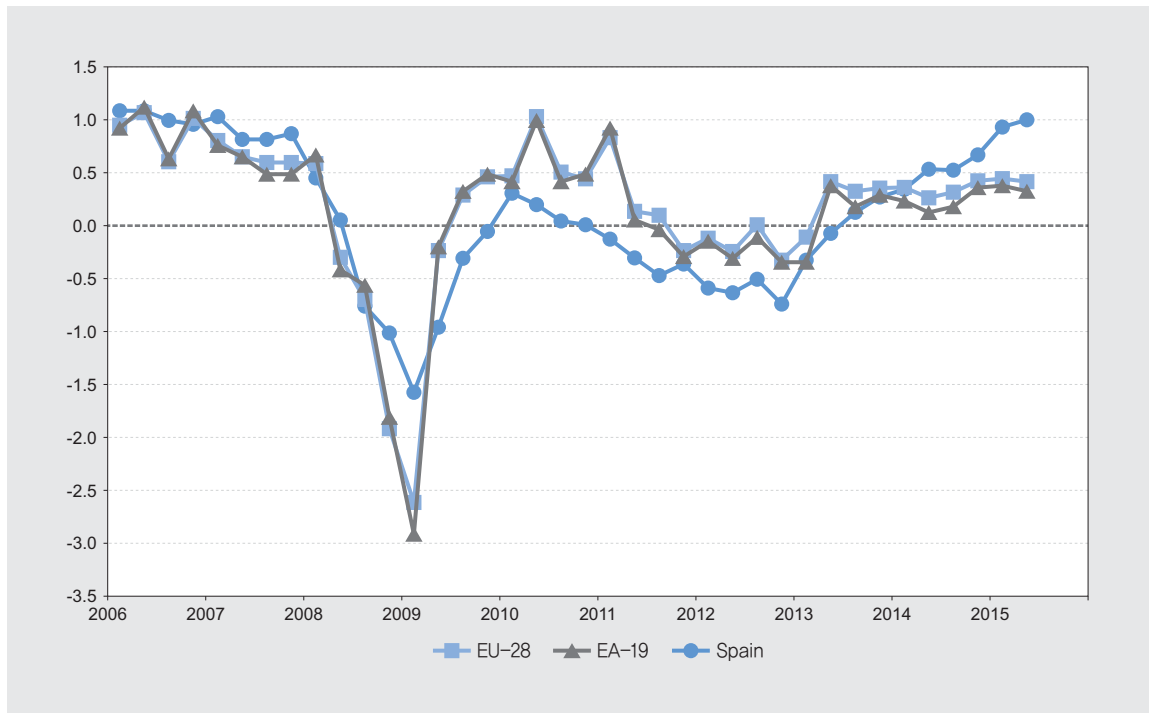
(단위: %, 개수)

주요 정당	득표율	획득 의석	독립 찬/반
Together for Yes (JxSí)	39.54	62	찬성
Ciudadanos (C's)	17.93	25	반대
Socialists' Party of Catalonia (PSC)	12.74	16	반대
Catalonia Yes We Can (CSQEP)	8.94	11	반대
People's Party of Catalonia (PP)	8.50	11	반대
Popular Unity Candidacy (CUP)	8.20	10	조건부 찬성
합계		135	

출처: 카탈루냐 지역 선거 결과 홈페이지, http://resultats.parlament2015.cat/09AU/DAU099999CM_L4.htm, 2015.10.01.

[그림 18]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단위: %)



주: chain-linked volume measures

출처: 스페인 통계청, Quarterly Spanish National Accounts 2015Q2, 2015.08.27.



- 내각, 2015-2018 여성농업인 지원 계획 승인 (2015.10.9.)⁶⁷⁾
 - 스페인 정부는 보건복지평등부, 농식품환경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2,310만유로의 예산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지원 계획을 승인
 - 고용 촉진 및 기업가정신 장려, 농림수산업에 대한 여성 참여 촉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농업인 반영, 직장·가사의 조정 및 공동책임, 농촌환경 개선 등 5개 방향의 82개 조치로 구성됨
 - 여성 직업훈련 촉진, 대출 지원, 농촌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장려, 보육 지원, 노인여성 진료 강화 등이 포함됨
 - 산타마리아(Soraya Saenz de Santamaria) 부총리는 “농촌지역의 여성은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의 핵심이며, 이들의 평등을 개선시키는 계획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 여성의 경우 670만명, 남성은 570만명이 해당되고 가구 수로는 약 9백만 가구가 지원을 받음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혹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대상자 14만명 포함
- 겨울철 연료비 제도는 1997년에 연금수령자의 연료 빈곤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100파운드~300파운드 가량의 비과세 겨울철 연료비를 연 1회 지급받음
 - 60세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2010년부터 여성의 주 연금(state pension)연령 변경으로 주 연금 혹은 기타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개인이 대상
 - 또한 특정 주간(qualifying week)에 영국 거주요건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영국

1. 기타

- 노동연금부, 작년 겨울(2014-15) 동안의 겨울철 연료비(Winter Fuel Payment) 지급 결과발표 (2015.9.23.)⁶⁸⁾
 - 작년 겨울에 영국 거주 연금수령자 중 1,249만명이 겨울철 연료비를 지급받았고, 총 21억파운드 소요

 미국

1. 예산·결산 등

- 미의회예산처(CBO), FY2016 예산 수정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2025) 발표 (2015.8.25.)⁶⁹⁾
 - (경제 전망) 2015년 상반기의 실질GDP는 약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를 시작으로 2016년에 3.1%까지 상승한 경기는 이후 몇 년간 견고한 성

67)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stros/referencias/Paginas/2015/refc20151009.aspx>, 2015.10.15.;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pr/Paginas/2015/101015afammer.aspx>, 2015.10.15.
 68) 영국 노동연금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of-pensioners-protected-with-winter-fuel-payments> 영국정부, <https://www.gov.uk/winter-fuel-payment/overview>
 69)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4th-congress-2015-2016/reports/50724-Update-OneColumn_1.pdf

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18년~2019년에는 개인소비지출, 기업 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에 힘입어 연평균 2.2%의 성장률 전망
- 실업률의 경우, 5.2%(2015년 4분기) → 5.0% (2017년 4분기)로 하락할 전망

- (재정전망)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재정적자는 2015년에도 지난 3월 전망규모(4,850억달러)보다 하향 조정된 4,260억달러로 전망(2007년 이후 최저 수준)
- (세출) 2015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7조달러로 GDP 대비 20.6% 전망
 - * 2015년 의무지출이 전년 대비 1,99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주요 보건지출 증가분이 총 의무지출 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
- (세입) 2015년 연방세입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3,3조달러로 GDP 대비 18.2% 전망
 - * 개인소득세(10%)와 법인세(8%) 및 급여세(payroll taxes: 4%)를 포함한 모든 세입항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6〉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비교

(단위: %)

경제전망	2015		2016		2017		2015~2019	
	1월 전망	수정	1월 전망	수정	1월 전망	수정	평균 성장률	
							1월전망	수정
실질GDP 성장률	2.9	2.0	2.9	3.1	2.5	3.7	2.5	2.4
CPI-U	1.5	0.7	2.3	2.3	2.3	2.3	2.2	2.0
실업률	5.5	5.4	5.4	5.1	5.3	5.0	5.4	5.1

주: 실업률(calendar year 기준)을 제외한 경제지표의 각 년도는 fiscal year 기준임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표 27〉 미국 재정전망(CBO 수정 vs MSR)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수정	17.5	18.2	18.9	18.6	18.3	18.1	18.1	18.0	18.1	18.1	18.2	18.3
	MSR		18.2	19.2	19.3	19.2	19.2	19.3	19.4	19.5	19.7	19.2	19.4
지출	수정	20.3	20.6	21.1	20.8	20.6	20.9	21.2	21.3	21.7	21.7	21.6	22.0
	MSR		20.8	21.5	21.5	21.6	21.7	21.9	22.0	22.1	22.2	22.3	22.4
재정적자	수정	2.8	2.4	2.2	2.1	2.2	2.8	3.1	3.3	3.7	3.6	3.4	3.7
	MSR		2.6	2.3	2.2	2.4	2.5	2.5	2.7	2.7	2.7	2.7	2.7
비정부분문 소유채무	수정	74.0	73.8	74.4	73.6	73.0	73.1	73.5	74.0	74.8	75.5	76.1	76.9
	MSR		75.3	75.3	74.9	74.6	74.6	74.6	74.6	74.6	74.6	74.6	74.6

출처: An Update to the Budget Outlook: 2015 to 2025, CBO, Aug. 2015.

Fiscal Year 2016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7.14.



■ 미 의회, 2015년 12월 11일을 예산적용시한으로 하는 1조 170억달러 규모(annual rate)의 FY2016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⁷⁰⁾ 가결(2015.9.30)⁷¹⁾

• 앞서, 지난 9.24일에 미 상원은 FY2016 잠정예산안을 발의하였으나 60표⁷²⁾(threshold level) 이상의 득표율에 못 미쳐 통과 실패하였으나 예산개시일 하루 앞두고 상·하원 모두 통과⁷³⁾

* 미국의 잠정예산: 회계연도 개시(매년 10월 1일) 전까지 정규예산(annual appropriations)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세출 법 수준으로 임시 예산을 편성

•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항목은 제외됨

• 마이크 엔지(Mike Enzi) 상원 예산위원장과 할로저스(Hal Rogers) 하원 세출위원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잠정예산 시한까지 FY2016 정규예산 작성을 위해 의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

■ 미 의회예산처(CBO), FY2015 잠정(Preliminary) 결산 재정보고서 발표(2015.10.7.)⁷⁴⁾

• FY2015(2014.10.1.~2015.9.30.) 총재정적자는 4,350억달러(GDP 대비 2.4%)로, 전년(FY) 대비 480억달러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최저수준이며,

세입·세출 각각 전년(FY) 대비 8%, 5% 증가

- (세입) 총 3조 2,490억달러로 전년 대비 2,290억달러 증가

* 세입 증가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1,538억달러)와 급여세⁷⁵⁾(1,068억달러)를 합한 규모는 전년 대비 총 1,150억달러 증가(6%)

- (세출) 총 3조 6,8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810억달러 증가

*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490억달러(16%), 350억달러(7%) 증가하였으며, 뒤를 이어 사회보장지출은 370억달러로 4% 증가(이 중 큰 폭의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법(ACA)에 의한 등록자 수 증가에 기인)

〈표 28〉 FY2015 잠정 결산

(단위: 십억달러)

구분	FY 2014 실적(A)	FY 2015 잠정(B)	증가(B-A)
재정수입	3,020	3,249	229
재정지출	3,504	3,685	181
재정적자	483	435	48

출처: CBO; Department of the Treasury. Based on the Monthly Treasury Statement for August 2015 and the Daily Treasury Statements for September 2015.

70) 우리나라의 준예산적인 Continuing Resolution(CR)은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당해 연도 CR에 특별한 제한조항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권한과 조건으로 진행됨(<https://www.fas.org/sgp/crs/misc/IN10148.pdf>)

71) <http://www.budget.senate.gov/republican/public/index.cfm/press-releases?ID=58076c84-1e78-441e-a217-5293782baab9>
<http://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4317>

72) 상원에서 (100석을 기준으로) 법안 또는 결의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토론종결을 위한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

73)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cochran-releases-short-term-bill-fund-government-through-dec-11>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cochran-statement-continuing-resolution>

74) <https://www.cbo.gov/publication/50878>

75) Payroll Taxes

2. 기타

■ 미 재무부, 제이콥 루(Jacob J. Lew) 재무장관 명의의 국가채무한도 증액요청 서한 미 하원의회에 발송(2015.9.10.)^{76) 77)}

• (현황) 지난 2014년 2월에 제정된 '채무한도 임시 연장법'⁷⁸⁾에 의해 기존 채무한도(17,212조달러)를 2015년 3월 15일까지 유예시킨 바 있음

- 이후, 법에 의해 채무한도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을 기존채무와 합산하여 국가채무한도액(18,113조원)을 재설정

*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채무구성은(비정부부문소유채무) 13,1조달러/(정부부문소유채무) 5,0조달러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전망) 현 채무한도액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10월 말 정도까지는 비상수단(extraordinary measures)으로 정부 운영은 가능하나, CBO 분석에 의하면, 11월 중순~12월 초 이후에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언급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학자금 분석 보고서 발표(2015.9.30.)⁷⁹⁾

• 학자금 대출규모는 5,160억달러(2007년) → 총 1,2조달러(2015년 3분기 기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가계채무(consumer debt)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기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학자금 대출자는 동기간 동안 2,830만명 → 4,080만명까지 증가하여 약 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별 대출규모는 18,000달러 → 30,000달러 수준까지 증가

- 안정화되고 있는 고용상태에도 불구하고 연체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⁸⁰⁾(income-driven repayment plans)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4명 중 1명은 학자금 연체자 또는 상환 포기자(in default) 등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

• 동 보고서는 대출심사기관의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상황에 따른 재량권한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안일한 대출심사에 대한 언론의 언급도 있음

76) <http://www.treasury.gov/connect/blog/Pages/Treasury-Sends-Debt-Limit-Letter-to-Members-of-Congress.aspx>

77)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4th-congress-2015-2016/reports/50739-FederalDebt.pdf>

78) The Temporary Debt Limit Extension Act (Public Law 113-83)1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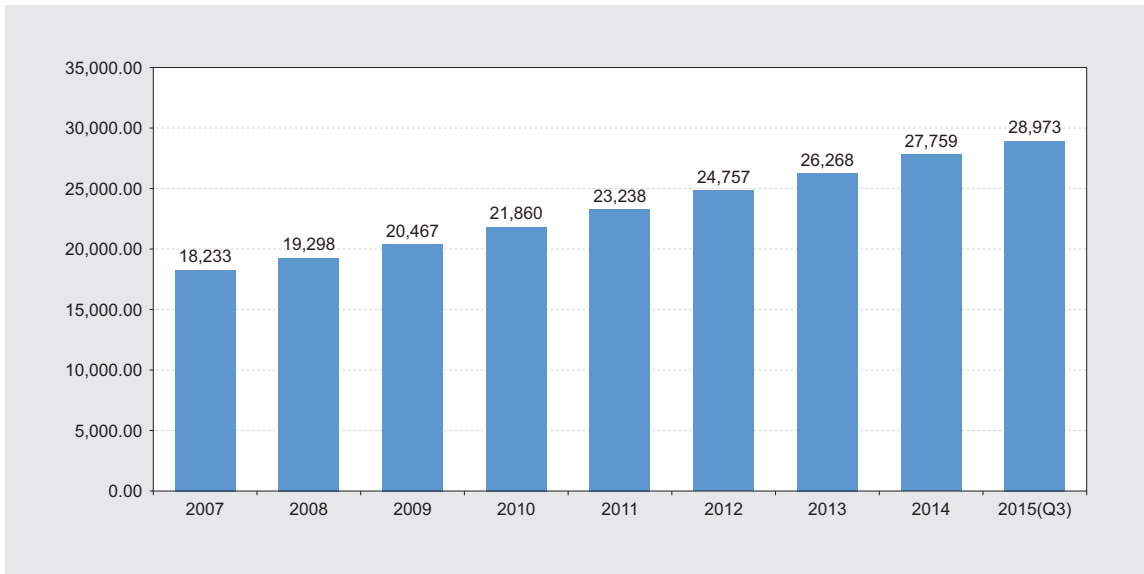
79) http://files.consumerfinance.gov/f/201509_cfpb_student-loan-servicing-report.pdf

80)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10%를 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20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부채는 탕감해 주는 연방정부 대출정책



[그림 19] 연방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규모

(단위: 달러)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정책흐름



- '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구성 및 운영
-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 주요 내용

‘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구성 및 운영

* 본 자료는 2015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구성 및 운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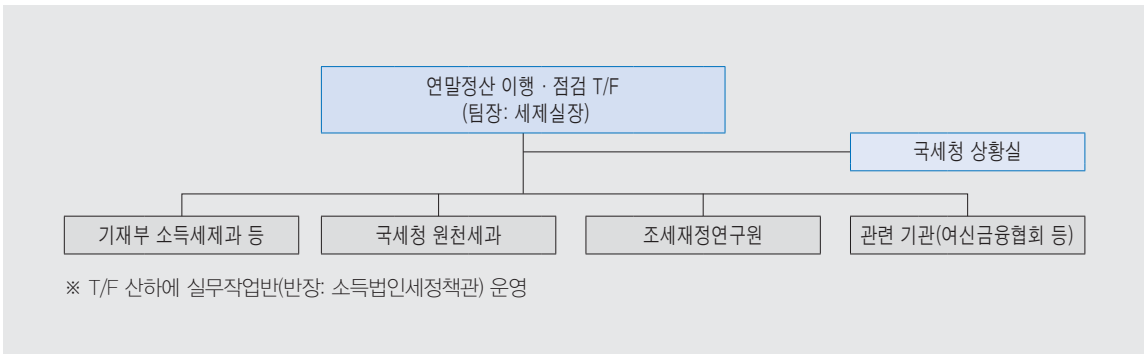
- ◇ ‘2016년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구성·운영 시작
- 연말정산 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스템 및 제도개선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

- 기획재정부는 12.18(금),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음
- 「연말정산 이행·점검 T/F」는 올해 추진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15.5월 「소득세법」 개정),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 상황

을 점검하고,

- *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및 연금세액공제율 인상(5,500만원 이하자 12→15%) 등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운영
- *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온라인 작성·제출이 가능함(15.11월부터 개시)

- T/F 팀장은 세제실장이 맡고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기관 참여
- 또한, T/F 산하에 실무작업반(반장: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두고, 국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



- 이날 회의에서는 T/F에서 앞으로 이행·점검할 과제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T/F 이행·점검사항

- ① 연말정산 보완대책(15.5월) 이행 및 점검
- ②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구축 및 간소화 서비스 개통('16. 1.15 예정)
 - 카드사의 신용카드 등 공제자료 사전 점검
 - 관련 법령 정비 등
- ③ 근로자 연말정산 상황 점검
- ④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 향후 T/F는 내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올해 보완된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임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 주요 내용

* 본 자료는 2015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에서 발표한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 주요 내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6년 예산안이 12.3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Delta 0.2$ 조원, 총지출은 $\Delta 0.3$ 조원 감소되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3.5조원 증액

경제활력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발직불금+371억원 등) ■ 가뭄피해 대책(+0.1조원) 및 SOC 확충(+0.4조원) ■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서민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 영유아 보육료 6% 인상 등(+1,448억원), 보육교사 수당(+269억원) ■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 확대
문화·안전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243억원) ■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8일, 잠정)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재정계획'을 상정·의결
 -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

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

I. 소득 분위별 동향

1. 총수입 및 총지출

- ① 총수입 및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감소
 - 총수입은 정부안(391.5조원) 대비 $\Delta 0.2$ 조원 감소한 391.2조원
 -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Delta 0.2$ 조원, 세외수입 $\Delta 0.04$ 조원 감소
 - 총지출은 정부안(386.7조원) 대비 $\Delta 0.3$ 조원 감소한 386.4조원
 - 당초 정부안보다 $\Delta 3.8$ 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5조원을 증액하여 총 $\Delta 0.3$ 조원 감소
- ②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재정수지는 $\Delta 36.9$ 조원(GDP 대비 $\Delta 2.3\%$)으로 0.1조원 개선
 - 국가채무는 644.9조원(GDP 대비 40.1%)으로 0.3조원 감소

2. 재정건전성

(단위: 조원, %, %p)

	'15년		'1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C-B)	C-A ¹⁾	%
■ 총 수입	382.4	377.7	391.5	391.2	△0.24	8.9	2.3
■ 총 지출	375.4	384.7	386.7	386.4	△0.3	11.0	2.9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33.4 (△2.1)	△46.5 (△3.0)	△37.0 (△2.3)	△36.9 (△2.3)	0.1 -		
■ 국가채무 (GDP 대비, %)	569.9 (35.7)	595.1 ²⁾ (38.5)	645.2 (40.1)	644.9 (40.1)	△0.3 -		

주: 1) '15년 본예산 대비

2) '14년 결산(주택채+지방채+지방교육채 6.2조원), 주택채 물량 확대 등을 포함한 전망치

II.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① 가뭄피해 대책 및 지역 SOC 확충

- **(가뭄 대비)**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
 - 긴급용수공급 및 하천수 활용을 위한 도수로 설치로 내년 봄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 한발대비용수개발: ('15) 125 → ('16안) 125 → ('16최종) 425억원
 -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15) 175 → ('16안) 166 → ('16최종) 893억원
 - 가뭄피해가 큰 지역의 댐 도수로 및 분기 관로 설치 지원
 - * 보령댐 도수로 건설: ('15) 예비비 94 → ('16최종) 234억원
- **(SOC 투자)**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0.4조원 확대
 - * 보성-임성리 철도: ('15) 52 → ('16안) 250 → ('16최종) 500억원
 - 서해선: ('15) 400 → ('16안) 1,837 → ('16최종) 2,337억원
 - 인천지하철 2호선: ('15) 1,802 → ('16안) 1,343 → ('16최종) 1,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 ('15) 140 → ('16안) 449 → ('16최종) 599억원

② 한-중FTA 대책 및 농촌 활성화

- **(FTA 대응)**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16~'25년 간 약 1.6조원)으로 농어가 소득안정 뒷받침
 -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전품목 40만원/ha으로 일원화
 - * (현행) 한미FTA 품목 40만원/ha, 기타 25만원/ha → (개선) 전품목 40만원/ha
 - * ('15) 1,060 → ('16안) 1,060 → ('16최종) 1,431억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
 - 23개 농어업 시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로 인하
 - * 농업 16개, 수산 3개, 임업 4개 자금
- **(농촌 활력)** 새로운 인력·자본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회복
 - '마을하수도 정비' 지원 확대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 ('15) 2,347 → ('16안) 3,008 → ('16최종) 3,032억원
 - 기술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 청년 농업인의 조 기 정착 지원

* ('15) → ('16안) 5(20개소) → ('16최종) 10억원(40개소)

3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동력 창출)** 창의·융합 기반 조성 및 신기술 개발 지원
 - 3D프린팅 및 무인이동체 등 신기술 보급 및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달탐사선 설계 등 우주 기술 지원 강화
 - * 3D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 ('15) 70 → ('16안) 32 → ('16최종) 82억원
 - *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15) → ('16안) 60 → ('16최종) 150억원
 - * 달 탐사: ('15) → ('16안) 100 → ('16최종) 200억원
 - 출연연구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융합연구 확대(+50억원)
 -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신규 162억원),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및 창업지원공간(오픈랩) 제공으로 정부데이터의 관리·활용 확대
 -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오픈랩: ('15) 199 → ('16안) 191 → ('16최종) 217억원
- **(산업경쟁력 강화)** 해운·조선업 투자 확대 및 서비스업 활성화
 - 해운보증기금 출자규모를 확대(+200억원)하고 ICT융합 인프라 구축 지원(신규 +67억원)
 - * 산은·수은 출자(해운보증기금): ('15) 500 → ('16안) 200 → ('16최종) 400억원
 -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60억원), 의료통역 등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110명)

4 일자리·교육과 전통시장 지원

- **(고용·교육)**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00억원 확대
 - * ('15) 196 → ('16안) 144 → ('16최종) 244억원

- 고등교육 기회균등 실현 및 대학교육 혁신추진을 위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지원 강화
 - * ('15) 22.7 → ('16안) 35.2 → ('16최종) 40.2억원
- 인문학 진흥을 위해 대학인문역량 강화(CORE) 지원 확대
 - * ('15) → ('16안) 344 → ('16최종) 600억원
- **(전통 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행사 개최
 -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차환경 개선 지원 확대
 - * ('15) 891 → ('16안) 801 → ('16최종) 1,001억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0 →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
 - * 온누리상품권 발행수수료: ('15) 280 → ('16안) 280 → ('16최종) 372억원
 -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15) → ('16안) 10 → ('16최종) 40억원

2 서민생활 안정

1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 **(어르신)**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한 돌봄·의료 지원 강화
 - 여름·겨울철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301억원)
 - 저소득층 노인의 눈수술(백내장 등) 지원 확대 및 광역치매센터 2개소 추가 지원
 - * 눈수술 비용 지원: ('15) 19 → ('16안) 13억원 → ('16최종) 17억원
 - * 광역치매센터 설치: ('15) 11.5 → ('16안) 11.3 → ('16최종) 22.6억원
- **(장애인)** 일자리와 자립,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확충
 - 직업재활시설(4개소)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센터(1개소) 추가 신축으로 취업·자립 지원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15) 371 → ('16안) 323 → ('16 최종) 345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5) 36.6 → ('16안) 34.8 → ('16최종) 37.2억원

- 돌봄서비스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발달장애 인지원센터' 지원

* ('15) 40 → ('16안) 55 → ('16최종) 95억원

•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 및 생계비 부담 경감

- 도시가스 미공급 郡 지역에 LPG 배관망 신규 지원(120억원), 서민층 LPG 금속배관 교체 지원으로 연료비 경감 및 안전 강화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5) 139.9 → ('16안) 127.5 → ('16 최종) 177.5억원

- 노후공공임대주택(15년 이상)의 안전시설 개 보수 등 지원 확대

* ('15) 331 → ('16안) 190 → ('16최종) 310억원

-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월 소요액의 100% 지원(기저귀 월 6.4만원, 분유 8.6만원)

* ('15) 50 → ('16안) 100 → ('16최종) 200억원

-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만원 추가 인상

* ('15) 1,377(443) → ('16안) 1,416(453) → ('16최종) 1,428억 원(458만원/월)

• (보훈 등) 사회적 예우 및 소득 안정 지원

-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 수당을 각 2만원 인상(+638억원),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예산 10% 추가 증액(+1억원)

* 참전명예수당: ('15) 18 → ('16안) 18 → ('16최종) 20만원
무공명예수당: ('15) 24~26 → ('16안) 24~26 → ('16최종) 26~28만원

- 지방 보호회관 신축 및 개보수 ('16안 20 → 최종 40억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확대

* ('15) 29.1 → ('16안) 38.6 → ('16최종) 41.7억원

② 보육·교육, 주거,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개선

• (육아) 보육서비스는 개선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은 완화

-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 대비 6% 증액(+1,442억원)하고 장애아 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

* ('15) 30,494 → ('16안) 29,618 → ('16최종) 31,066억원

* 보육료 인상추이: ('09)3% → ('11)3% → ('15)3% → ('16) 6%

- 보육교사 근무수당 3만원 인상(17 → 20만원/월) 및 교사겸직 원장수당(7.5만원/월)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확충

* 보육교사 근무수당: ('15) 1,522 → ('16안) 1,522 → ('16최종) 1,791억원

* 교사겸직 원장수당: ('15) 105 → ('16안) - → ('16최종) 105억원

- 지역사회에 보육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4개소)하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6,100원/h → 6,500원/h)

* 육아종합지원센터: ('15) 47.9 → ('16안) 72.7 → ('16최종) 112.7억원

* 아이돌보미: ('15) 787 → ('16안) 787 → ('16최종) 828억원

• (교육) 짬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0.3조원 지원

• (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 확대 → 2.3만호 우선 공급(+1,491억원)

* 뉴스테이 공급규모: ('15) 1.2 → ('16안) 1.5 → ('16최종) 2.3만호

※ '16년 중 수급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추진

- **(의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지역거점병원 통합공시시스템 개발 지원(+2.4억원)
* ('15) 21.5 → ('16안) 24.3 → ('16최종) 26.7억원

3 문화와 안전 투자 확대

1 관광 콘텐츠 및 전통문화 등 문화적 역량 강화

- **(콘텐츠)** 관광·예술·체육 콘텐츠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이 기억하는 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건립(+38억원),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 지원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5) - → ('16안) - → ('16최종) 70억원
 - 게임산업을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증설 등 관광레저 기반 구축
* 게임산업 권역별 기반지원: ('15) 70 → ('16안) 130 → ('16최종) 150억원
* 크루즈 전용 부두: ('15) 23 → ('16안) 75 → ('16최종) 125억원
- **(전통 문화)** 주요 문화재 야간개장 프로그램 신설(+30억원)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도 확대(+50억원)

2 테러 대응능력 강화

-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 지원 등에 243억원 추가 지원 ('16안 2,437 → '16최종 2,680억원)

대테러 예산 확대 주요 내역

- ① 대테러 작전수행을 위한 군·경찰 장비구입 49억원
- ②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비축물자·장비구입 등 58억원
- ③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감시정 노후교체 48억원
- ④ 원자력안전을 위한 장비 및 교육훈련 10억원
- ⑤ 해외공관 테러대비 및 재외국민보호 12억원
- ⑥ 테러 발생시 환자치료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 59억원

3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생활안전·치안 강화)**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0개소 추가 확대
* ('15) 38.4(12개소) → ('16안) 38.4(12개소) → ('16최종) 66.0억원(22개소)
 - 대형재난 대비 해경·소방 특수구조대 추가 신설 및 장비 확충
* 해경: ('15) - → ('16안) - → ('16최종) 34.2억원(서해, 동해)
소방: ('15) - → ('16안) - → ('16최종) 43.6억원(호남, 충청·강원권)
 -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 및 DNA DB시스템 고도화(+5억원), 보이 스피싱 단속 10억원 신규 지원
*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 ('15) 82 → ('16안) 58 → ('16최종) 68억원
 - 경찰서·지구대 등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치안서비스 증진(41개소, +409억원)
 -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확대(경찰 파견 인력 2 → 6명)

- **(식품 안전)** 식품의약 안전 예산 확대
 - 3대 기초식품(떡볶이, 순대, 계란) 시설개선자금 및 HACCP 컨설팅 지원(+36억원)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강화(+5억원)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단속 강화(+3억원)
- **(노후 상하수도)** 노후화된 지방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 확대
 -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싱크홀 등 재난 예방
 - * 하수관거 정비: ('16안) 7,839 → ('16최종) 7,909억원
 - *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 목적예비비 500억원 반영
 - 지방의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체계 수립
 - * 연구용역 10억원 및 2개소 시범사업 시행

③ 군 경쟁력 강화 및 통일 준비

- **(국방력 강화)** 병 추가입영 및 장비 확충으로 방위력 개선
 -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병 1만명 추가입영 지원(급식, 피복비 등 +635억원) 및 징병검사장비 확충
 - * 징병검사장비: ('15) 4.4 → ('16안) 4.1 → ('16최종) 7.5억원
 -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3차 양산사업 착수비 확대 및 신형화생방 정찰차 신규 확보(+28억원)
 - * 한국형 기동헬기(3차): ('15) - → ('16안) 94 → ('16최종) 594억원
- **(통일 준비)**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탈북주민 지원 확대
 - 통일교육 우수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신설로 통일공감대 확산(+18억원)
 - 탈북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거점이자 남북 주민 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구축 지원(+100억원)

III.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2.8일(잠정)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15예산	'16예산		증 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15 대비 (C-A)	증가율
◇ 총 지출	375.4	386.7	386.4	△0.3	11.0	2.9
1. 보건·복지·고용	115.7	122.9	123.4	0.5	7.7	6.7
2. 교육(교부금 제외)	52.9 (13.5)	53.2 (11.9)	53.2 (12.0)	0.02 (0.07)	0.3 (△1.5)	0.5 (△11.3)
3. 문화·체육·관광	6.1	6.6	6.6	0.1	0.5	8.3
4. 환경	6.8	6.8	6.9	0.02	0.1	0.7
5. R&D	18.9	18.9	19.1	0.2	0.2	1.1
6. 산업·중소·에너지	16.4	16.1	16.3	0.2	△0.2	△1.0
7. SOC	24.8	23.3	23.7	0.4	△1.1	△4.5
8. 농림·수산·식품	19.3	19.3	19.4	0.1	0.1	0.5
9. 국방	37.5	39.0	38.8	△0.2	1.3	3.6
10. 외교·통일	4.5	4.7	4.7	0.01	0.2	4.1
11. 공공질서·안전	16.9	17.5	17.5	0.04	0.6	3.3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58.0 (23.1)	60.9 (24.7)	59.5 (23.4)	△1.4 (△1.3)	1.5 (0.2)	2.6 (1.1)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공기업에 자율·책임 줘 경쟁력 높여야”

미래전략학회 학술회의...메가 FTA 대비책 강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보다 ‘책임 경영’과 ‘자율성 부여’ 등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열린 한국미래전략학회 학술회의에서 “지금까지 공기업이 공공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각국에 권고했다”며 “우리나라도 공기업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정부가 국영기업에 보조금 등 비상업적인 지원을 할 경우 협정 당사국에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메가 FTA 시대에 공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5-12-18〉

기업가 정신 고양, 지역혁신기관 통폐합부터 시작해야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15개국에서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Global Entrepreneurship Week)’ 기념 포럼과 행사가 지난달 중순 펼쳐졌다. 이 행사의 목적은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대중에게 확산하는 데 있다.

이런 행사가 한국 사회에 내재된 잠재적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거나 가라앉은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한국 경제에는 매우 중요하고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지향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경제사회를 의미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고 기존 개념이 진화한 형태다. UN은 ‘창조경제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를 2008년에 발간했는데 당시 창조경제는 문화예술 분야의 독창성을 지역경제를 위해 성장동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패러다임을 전(全) 산업, 전체 국가경제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의 왕성한 발현에 있다. 기업가 정신은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돼 왔지만 그 요체는 '새로운 이윤 기회를 적절한 방법으로 실현하는 기업가의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도처에서 모든 경제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현될 때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도전적인 혁신 성향을 높여야 하고 이윤 기회의 실현에 사용할 새로운 지식을 활발히 축적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약해지는 도전적 혁신 성향

최근 한국 경제에 내재된 기업가 정신은 추세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심각한 저성장 기조와 그 추이를 같이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불굴의 도전정신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창의성으로 요약되는 '정주영식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업가정신연구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 전체의 기업가적 활동지수는 2001년 이후 추세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단계가 혁신주도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14% 초중반 수준이던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급격히 하락해 2013년 7%를 밑돌고, 혁신주도형 국가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의 평균 기업가 정신 지수는 2010년 저점(5.6%)을 나타낸 뒤 2014년 말 현재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웃도는 8.54%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 13.81%, 영국 10.66%, 캐나다 13.04%, 싱가포르 10.96% 등 주요 국가에서 관측되는 추이도 그렇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 추이와는 크게 다르다. 다른 국가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정받는 기업가 정신이 추세적으로 회복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비슷한 지역혁신기관 기능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조세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창업을 촉진하고자 할 때,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보다는 혁신 성향과 잠재 가능성에 투자하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의 재정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 단기성과주의 정책은 금물

한 예로 각 지역의 혁신 성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지역 혁신기관들의 기능 조정 및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시적으로 해당 지역의 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수요자들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혁신 관련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혁신 수요자와 지원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실상 지역혁신기관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이 그랬듯이, 창조경제의 과실을 현 정부에서 맛보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단기성과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그 과실은 차기 또는 그 이후 정부에서 맺도록 하겠다는 긴 호흡으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2015-12-06〉

재정포럼

2015년 12월호 통권 제23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12월 15일 발행 / 제19권 제12호(통권 제23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